법무부

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마를 수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ORRECTIONS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교정 논문
한국형 중간 처우의 성과와 과제: 출소자 재복역률을 중심으로

교정 리포트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헤어진 파트너 대상 스토킹을 중심으로

교정 백과
필리핀 교정기관 방문

06
Vol.577. 2024. JUNE

법무부 교정본부

Contents

VOL.577. 2024. JUNE

COVER STORY

6월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달인가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달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달입니다. 이를 통해 애국심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월간 〈교정〉도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룬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겠습니다.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4년 6월 17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옆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Corrections PLACE 교정 플레이스

04 교정 이모저모 Ⅰ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08 교정 이모저모 Ⅱ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토크 콘서트 진행

10 교정 이모저모 Ⅲ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이 순직교도관 충혼탑 참배 행사 개최

12 역사와 오늘
교정시설이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
서울남부구치소

18 교정의 공간
세심한 관리와 노력으로 완공되어가는 밝은 미래
서울남부구치소 시설과

24 외부 칼럼
깊이 있는 통찰의 세계: 철학

Corrections ARCHIVE 교정 아카이브

28 교정 포커스
전근대 한국행형사(1)
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62 교정 논문 Ⅰ
한국형 중간 처우의 성과와 과제:
출소자 재복역률을 중심으로
최소연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교정관

74 교정 논문 Ⅱ
마약류 중독자의 바닥 경험 강도에 따른 변화 단계 차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류사범을 중심으로(하)
최경찬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 교위

88 교정 리포트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헤어진 파트너 대상 스토킹을 중심으로
김성희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116 칼럼
아니 이런 변이 있나
강민정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교도

120 교정 백과
필리핀 교정기관 방문
정원윤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 교감

132 교정 NEWS

145 모범 공무원

146 독자마당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등 총 18명 수상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지난 5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요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이 개최했다. 이 시상식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의 교정교화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성황리에 개최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30일(목)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박민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헌신과 봉사의 영웅들을 위한 영예의 순간

이날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사단법인 제로캠프 등 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현호 교감은 31년 4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문맹 수용자들을 위해 자비로 학습 교재를 구입한 후 개인 시간을 이용해 지도하는 등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교정교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독거노인 돌봄, 휠체어 기증 등을 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

그 외 교정공무원으로는 의정부교도소 최문호 교감, 통영구치소 이재심 교감(이상 근정상), 김천소년교도소 강병훈 교감, 전주교도소 권오덕 교감(이상 성실상), 청주교도소 김병국 교감, 순천교도소 박희옥 직업훈련교사 전문경력관(이상 창의상), 거창구치소 우태완 교감(수범상), 서울남부교도소 윤민호 교위(교화상)가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교정위원으로는 2005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농원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로 김장김치를 담가 불우수용자 가족에게 나누며 수용자 가족관계회복에 헌신해 온 수원구치소 최선덕 교정위원이 「봉사상」을 받았으며, 그 외 경북북부제1교도소 권오갑 교정위원, 청주교도소 정정옥 교정위원, 공주교도소 오인식 교정위원(이상 봉사상), 서울동부구치소 안명애 교정위원(박애상), 광주교도소 김성석 교정위원(자비상), 밀양구치소 한영해 교정위원(자애상), 대구구치소 박만호 교정위원(장려상)이 수상했다.

한편, 사단법인 제로캠프(이사장 최불암)는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뮤지컬 및 악기교육, 인성교육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소년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방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교정발전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영예로운 교정대상 수상자 및 그 가족들을 축하하고, 공정하고 따뜻한 교정·교화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교정행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교정행정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사회 전체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국가보훈부 승격 1주년 기념으로 현충일 방영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토크 콘서트 진행

현충일을 맞아 JTBC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방송하며 제복근무자와 함께하는 특별 공연과 토크 콘서트를 선보였다. 프로그램은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며 다양한 보훈 실천 사례와 공연을 통해 국민들에 깊은 여운과 감동을 전달했다.

제복근무자와 함께하는 보훈의 날 특별 공원

JTBC가 6월 6일 오전 11시 현충일을 맞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21일 오후 5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국가보훈부 승격 1주년을 기념하는 토크 콘서트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제복근무자(교정본부,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를 스페셜 청중으로 초청했다.

보훈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 보기 위해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자녀인 방송인 박경림이 사회를 맡았다. 또한, 뜻 깊은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가수 이보람, 정엽, 라포엠 유채훈 등의 무대와 국립국악관현악단 가야금 수석 문양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정효민 교수의 콜라보 공연이 펼쳐졌다. 그리고 교정본부·경찰청·소방청로 구성된 제복근무자들의 특별 공연이 이어졌다.

이번 공연에서 교정본부는 김예실 교위 등 8명이 교도관 특별공연팀으로 무대에 올라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변집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곡으로 선보이며, 국민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했다.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며

지난해 8월, 70여 년 만에 영주귀국한 101세 독립유공자 오성규 애국지사와 지난 4월 26일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에서 화제가 된 유가족의 근황도 들을 수 있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보훈 실천 사례들도 소개됐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기까지의 역사, 명예로운 보훈 가족, 린튼가의 데이비드 린튼 교수와 공병삼 소방관의 이야기,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추진하는 ‘가득찬 보훈밥상’ 운동 등 다양한 보훈 실천 경험담을 공유했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토크 콘서트에서 “보훈은 국가의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한 희망을 만드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라며, “행사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상 속에서 보훈을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충 시설 관련 뮤직비디오 가사를 직접 쓰고 랩을 부른 ‘수니와 칠공주’ 할머니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할머니들이 경로당에서 호국의 의미를 랩으로 표현한 것처럼 일상 공간에서 실천하는 문화로서의 보훈을 위해 현충 시설을 더욱 사랑받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제막식 이후 거행된 올해 첫 현충 행사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이
순직교도관 충혼탑 참배 행사 개최

지난 6월 5일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송영삼 교정동우회회장, 교정공무원 등 50명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남부교정시설 입구에 세워진 순직교도관 충혼탑을 참배했다. 충혼탑은 6·25전쟁 당시 목숨을 바쳐 교정시설을 지킨 호국영령의 영현을 모신 탑인 만큼 더욱 의미가 깊었다.

현충일 전야의 엄숙한 참배식

현충일 전날 6월 5일 오후 2시 순직교도관 충혼탑 참배 행사를 거행했다. 호국보훈의 달 및 현충일을 기념하여 순직 선배 교도관을 기억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해 서울남부교정시설에서 진행했던 이번 행사는 신용해 교정본부장, 송영삼 교정동우회회장, 최제영 서울지방교정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하게 거행됐다.

① 입장 ② 국기에 대한 경례 ③ 헌화 및 분향 ④ 묵념 ⑤ 퇴장 순으로 진행된 참배는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직원 복장은 정복, 예장, 정모 등으로 통일하여 4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참배 이후에는 환담,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순직교도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이번 행사에 참석한 교정공무원들은 참배를 통해 선배들에게 헌화를 하고 분향을 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서울남부구치소 지용선 교위는 "순직교도관 충혼탑은 작년에 제막식을 한 이후에 올해 처음으로 현충 행사를 하게 되었다"라며, "선배님들의 그런 헌신을 받들어서 국민의 안전과 시설 방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후배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충혼탑 참배 후에는 행사장 우측에 별도 장소에서 10분 동안 전·현직 교도관이 한자리에 모인 환담 시간이 마련됐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교정동우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전·현직 교도관이 활발히 소통하며 교정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직교도관 충혼탑은 규모 높이 4m, 면적은 28평방미터로 한국 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167명의 순직교도관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고 위훈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6월에 건립된 탑이다.

교정시설이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는 현대적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와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글 박도근 **사진** 홍승진

과거와 현재의 만남, 교정의 미래를 향한 여정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서울남부구치소는 언뜻 보기에 짧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시작은 대단히 길다. 과거 영등포구치소로 1969년에 개청한 이후 2011년 5월 기관명을 개칭하고 현재의 자리로 같은 해 10월 현재로 위치로 자리를 신축 이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서울남부구치소는 깔끔하면서도 현대식 시설을 자랑한다. 유일하게 영등포구치소에 옮겨온 비석만이 이곳의 오래된 역사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함께하는 밝은 矯正, 새 千年 새 希望"이 새겨진 이 비석은 서울남부구치소가 걸어온 긴 여정을 상기시키며, 변함없이 이어져 온 교정의 정신을 상징한다. 현대적 시설과 과거의 유산이 공존하는 이곳은 지금 새로운 교정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다.

그 시작은 시설 입구에 있는 교정공직자 충혼탑에서 엿볼 수 있다. 6·25 전쟁에서 순직한 교도관 167명을 기억하기 위해 지난해 건립한 이 추모탑은 높이 4m, 면적 28㎡이며, 탑신은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 복귀와 미래 희망을 열어주는 '열쇠',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표현하는 '칼', '바위처럼 곧고 단단한 교도관'을 형상화한 것으로 과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끊임없는 노력과 희망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체복무요원을 위한 새로운 생활관 건립

새로운 변화는 서울남부구치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감지됐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규정을 두지 않았던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대체복무요원이란 병종을 신설하게 됐고, 이는 입영 거부자들의 대안이 되면서 이들이 복무하며 합숙할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구치소는 기존 직원 주차장이 있던 부지에 대체복무 생활관을 건설하고 있다. 부지 면적은 229,191㎡에 달하며, 연면적은 2,985㎡ 수준으로, 2024년 5월 현재, 공정률은 이미 75%일 정도로 건설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이에 서울남부구치소는 오는 9월부터 대체복무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비군사적 성격의 보조 업무만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정공무원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교정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돕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대체복무 생활관 신축 공사

는 서울남부구치소가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다.

수형자와 직원, 함께하는 긍정적 변화

긍정적인 변화는 내부에서도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우선 수형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자매결연 상담을 통한 '희망의 사과나무 행사'가 있다. 이 행사는 상담이나 고충을 교정위원이 수형자로부터 듣고 멘토링을 제공하며, 심리적으로 위기를 겪는 수용자는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한 집중 케어로 닫힌 마음을 열게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다.

또한, 직원 처우 개선이 이뤄지는 것도 서울남부구치소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직원들이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실, 탕비 및 PC 사용실, 운전원 휴게공간 등 소내 곳곳을 개선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의 업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조직 내 분위기를 편안하게 조성하여 더 나은 업무 성과를 이루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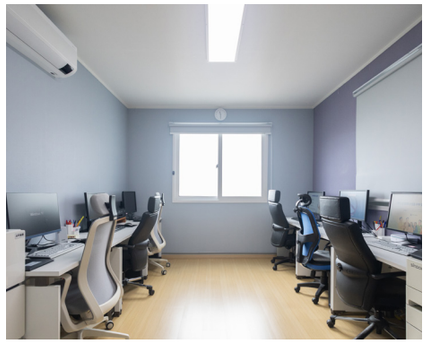

지역사회와 만들어가는 밝은 미래

서울남부구치소는 내부에서부터 쌓아온 내실을 발판으로 삼아 지역사회에 유의미한 영향을 이끌어내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법무부 남부보라미 어린이집 위탁 운영이다. 이 어린이집은 구치소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녀를 위한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는 체육관 및 테니스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테니스장의 경우 구치소·교도소 직원 동호회 외에도 외부 테니스 동호회 5개와 함께 사용할 만큼 호응이 좋은 편이다. 이러한 노력은 서울남부구치소가 지역사회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독거노인들에게는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위문물품 전달 및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처럼 서울남부구치소는 수형자와 직원들을 위해 프로그램과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다 해도 말이다. 이것이 서울남부구치소가 만들어 갈 모든 변곡점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세심한 관리와 노력으로 완공되어가는 밝은 미래

서울남부구치소 시설과

서울남부구치소 시설과는 작년 충혼탑 건립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현재에도 대체복무 생활관 등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력과 세심함이 뒷받침된 이러한 공사는 직원과 수형자들의 희망과 행복을 이끌어내고 있다.

글 박도근 **사진** 홍승진

구치소 공사를 아우르는 어벤져스 팀

지난해 완공된 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순직한 교도관 167인을 기리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독창적 디자인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기능적인 특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구치소·교도소 내 모든 공사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지도, 감독, 점검 등까지 서울남부구치소 시설과의 세심한 노력과 헌신이 반영됐기에 가능했다.

시설과는 이렇듯 소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굵직한 공사 사업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건축 및 공업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 13명(시설사무관, 시설주사, 공업주사, 교위 2명, 공업주사보 3명, 교사, 시설서기, 공업서기, 시설관리 공무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대체복무 생활관과 정문출입통제시스템과 청사 옥상 방수 공사 등이 있으며, 이들의 노력과 전문성으로 모든 공사는 현재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정도로 공사에 있어서만큼은 특출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과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들의 특별함에 빛을 더해주는 것은 시설과가 따로 분리돼 있는 것이다. 이는 시설과의 일원으로 나수빈 교사가 막중한 책임 의식과 함께 자부심이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다.

"수도권 대형 구치소라 인원이 많아요. 그만큼 시설물 고장의 빈도가 높은 편인데요.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100억 대 대규모 공사를 설계부터 입찰, 계약, 착공, 준공 등 모든 부분에서 저희 시설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점은 자랑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치소 내 환경 혁신을 위한 노력

그렇다면 시설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 나수빈 교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몇 가지를 언급했다.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어야겠죠. 수용시설 및 직원 사용 시설 개보수, 확충 등 모두 사람이 사용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강조한 것이 세심함이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위해서는 작업이 늦어지더라도 요청 사항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며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것. 이는 최상의 결과물을 얻기 위한 시설과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 기념일 날 충혼탑에 장관님이 오셔서 참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수도권 대표 교정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거기에, 보안과 직원교육실 환경개선공사를 통해 탕비실을 만들었는데요. 그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 직원분들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설과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사는 결국 모두 사람을 위함이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만족하고 편안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구치소를 그렇게 더 편안하고 편리한 공간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시설과가 나아가야 할 길

더 나은 구치소를 만들기 위해 수용 거실과 사무 청사 옥상 방수 작업 등에 많은 힘을 쏟으며,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2023년 말에 예산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한 공사들을 완료하는 것이 그중 하나이다. 이러한 공사는 구치소 시설의 개선과 현대화를 위해 중요한 것들인데 새로운 과장님이 부임하시면서 더뎠던 공사 작업이 수월해졌다는 것이 나수빈 교사의 이야기다.

"대체복무 생활관 증축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사 기간 내 준공하는 것과 마감까지 깔끔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급해도 최대한 안전하게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주요 목표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힘들게 한 작업인 만큼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하자보수를 통해 직원 및 수용자 모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에 편리함까지 추구하려는 노력, 어쩌면 너무 세심한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겠다. 한 가지도 얻기 힘든 것이기에 두 가지 모두를 얻으려면 몇 배의 노력을 더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설과 직원들은 이 모든 것들을 거뜬히 해낼 것이 분명하다. 어떤 역경에도 직원과 수용자가 모두 이곳에서 희망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시설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이다.

Interview 시설과 **이윤교** 과장

직원복지와 시설유지관리 재난 안전을 우리가 책임집니다!

"우리 과에서는 시설유지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복지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등을 통한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안정된 수용자 관리를 위한 수용동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를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붕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자 시설별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직원 및 수용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 직원들은 각자 맡은 직무를 성실하고 충실히 이행하면서 동료 간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나의 일같이 도우며 늘 가족처럼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설과 파이팅!"

깊이 있는 통찰의 세계: 철학

많은 사람은 철학을 먹고 사는 데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세계의 엘리트들은 철학을 중요한 학문으로 여긴다. 역설적이게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철학만한 학문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철학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자.

글 박경연 문화칼럼리스트

세계 리더들의 선택, 왜 그들은 철학을 우선순위에 두는가?

철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학문이다. 이에 유럽은 엘리트 양성을 담당해 온 교육 기관에서 오래전부터 철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가르쳐 왔다. 이는 무수히 많은 엘리트를 배출하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PPE(철학·정치학·경제학 융합 과정)에서 철학을 세 학문 중 가장 필두에 세운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프랑스 또한 철학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나라 중 하나다. 프랑스는 정규 고등학교 과정인 리세(lycée)에서 이과와 문과를 불문하고 철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학 입학에 필요한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Baccalauréat)에서 철학 시험을 진행한다.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아스펜 연구소는 엘리트 경영자 교육 기관으로 명성 높은 곳인데 이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급을 받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간부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등을 배우고 있다.

한국에서는 쓸모없는 학문으로 치부되기 일쑤인 '철학'을 왜 세계의 리더는 우선순위로 두고 배우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 시카고 대학교 총장이었던 로버트 허친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양이 없는 전문가야말로 우리의 문명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이다."

변증법, 다양한 사고의 밑거름

그렇다면 철학은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제공할까? 철학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깊이 통찰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눈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물음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직시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철학의 '변증법'이다. 변증법은 주장 A와 그에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주장 B가 있을 때, 어느 쪽도 부정하지 않고 통합하여 새로운 주장 C로 발전해 가는 사고 과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다.

한 예로, 전 세계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보이는 핀란드의 교육 제도를 들 수 있다. 핀란드는 고정된 학년별 커리큘럼을 없애고 교과별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 시스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변증법을 통해 보면, 이 시스템은 오래된 교육 방식의 재해석일 수도 있다. 실제로, 유사한 교육 제도로 '서당식 교육'이 있었다. 물론, 이 교육법을 그대로 현대에 적용한다면 퇴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변증법을 활용하여, 오래된 시스템에 발전적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사고 방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당연한 것에 반론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 ——— 철학을 통해 '비판적 사고'의 핵심을 배울 수 있다. 철학의 역사는 모두, 지금껏 세상에서 상식으로 인식되거나 당연하다고 여겨진 일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철학이 리더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 리더에게도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판적 사고를 기업에서는 '고잉컨선(Going Concern)'이라고 한다.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처럼 기업도 계속 변화해 나간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현실에 잘 맞지 않음으로 도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환경이나 상황에 맞춰 새로운 업무방식을 받아들이는 일보다 오래된 스타일의 업무방식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끝내는 것이 더 어렵기에 수많은 기업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용된 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사고가 현실에 맞지 않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분명 지금껏 철학자들이 해온 일이다. 물론, 철학이 규명해 온 문제는 기업이 직면한 문제들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철학을 배움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자기 행동과 판단을 규정해 온 암묵적인 전체를 의식적으로 비판하고 고찰하는 지적 태도의 관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비판적 사고와 혁신 촉진 ——— 철학은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혁신은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상식을 의심하고 재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의심하는 태도는 비현실적이며, 일상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왜 신호등의 진행 신호는 초록색이고 정지 신호는 빨간색일까?" 같은 질문을 끝없이 제기한다면 생활은 엉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상식을 의심하라'는 일반적인 조언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철학의 진정한 역할이 드러난다. 철학은 단순히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의심해볼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안목을 길러준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캘리그래피의 아름다움을 이해했기 때문에 '컴퓨터 폰트는 왜 이렇게 안 예쁠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었다. 체 게바라는 플라톤의 이상 국가 개념을 알고 있었기에 '세계는 왜 이다지도 비참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철학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심해 볼 만한 것을 찾아내고, 그 의심을 통해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과거의 교훈, 미래를 향한 지혜 ——— 마지막으로 철학을 배우는 이유는 과거에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고뇌하고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안타깝게도 인류의 비극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초래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유로 과거 수많은 철학자는 동시대의 비극을 마주할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글로 남겼다. 이유는 간단하다. 당시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세계적인 비극의 장본인들은 아돌프 히틀러도 폴 포트도 아니었다. 그들을 리더로 따르기로 선택했던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에 의해 세계사가 크게 요동쳤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철학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배워야만 한다. 특히, 실무자로 불리는 사람은 개인의 체험을 통해 얻은 편협한 지식을 세상이라 착각하는 일이 많다. 문제는 오늘날 세계는 이렇게 자신만의 세계상을 품은 사람들로 인해 갖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지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실무자는 대부분 실패한 경제학자의 노예다"라며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는 철학이 필요하느냐? 불필요하느냐?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철학의 빈곤한 현주소이다. 이는 획일화된 사회, 바뀌지 않는 사람과 기업, 되풀이되는 역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달라져야 한다. 더 높고 새로운 미래로 빠르게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철학을 우리 삶의 일부로 깊이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전근대 한국행형사(1)

금용명
전 안동교도소장, 교도소연구소 소장

목차

제1편 상고사(상고시대부터 삼국통일시대까지)
제2편 중고사(고려시대)
제3편 근세사(조선시대)
제4편 근대전기(구한국정부시대)

제1편 상고사(상고시대부터 삼국통일시대까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감옥 설비가 나타난 이른 것이 언제 무렵이었는가에 대해 한반도에서 출판된 역사책 상으로는 이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부여족이 생활하고 있었던 지방 지금의 만주(滿洲), 장춘(長春), 길림(吉林) 지방[1]에서는 '형벌은 엄격하고 긴급하게 실행한다. 주벌(誅罰)[2]을 당한 자가 있으면 집안사람을 모두 몰입(沒入)[3]하여 노비로 삼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 훔친 물건의 12배를 갚도록 하며, 남녀가 간음하면 모두 죽이고, 투기(妬忌)하는 부인을 더욱 엄하게 다스려 죽인 뒤에 산 위에 시체를 버린다.'[4], '형벌은 엄격하고 긴급하게 실행한다.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집안사람을 모두 몰입하여 노비로 삼는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훔친 물건의 12배를 갚도록 한다. 남녀가 간음하거나 부인이 질투하면 모두 죽인다. 특히 질투하는 것을 미워하여, 죽인 뒤에는 시체를 나라의 남쪽 산에 버려 썩게 한다.'[5]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형률(刑律)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에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형시설에 해당하는 감옥도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은(殷)의 정월[6]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나라에서 대회를 열고, 연일 음식을 먹고 노래와 춤을 추었는데 이름하여 영고(迎鼓)라 하였다. 이때에는 옥(獄)을 열어 죄수를 석방시켰다.'[7]라고 하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반면에서 보더라도 죄수를 구금하는 장소가 있었던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사방이 2,000리이고 호구(戶口)[8]가 8만이며 그곳 백성들은 정착생활을 하였고 궁실, 창고, 감옥이 있다.'[9] , '원책(圓柵)[10]을 성(城)으로 삼고 궁실, 창고, 감옥이 있다.'[11]라고 하는 것과 같은 기록도 있어, 보다 더 감옥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부여족에 대해서

---

1) 지금의 만주(滿洲), 장춘(長春), 길림(吉林) 지방
2) (역자주) 주벌(誅罰) 죄인을 꾸짖어 벌을 줌
3) (역자주) 몰입(沒入)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을 노비로 삼음
4) 『후한서 동이전(後漢書 東夷傳)』
5) 『삼국지(三國志)』
6) (역자주) 은력(殷曆) 중국 고대의 상나라에서 사용됐다는 역법 중 하나. 태음태양력이며 365일과 1/4일을 1회귀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7) 『삼국지(三國志) 부여전(扶餘傳)』
8) (역자주) 호구(戶口) 집의 수와 식구의 수
9) 삼국지(三國志) 부여전(扶餘傳)』
10) (역자주) 둥근 성책
11) 『후한서』 동이전(東夷傳) 중의 부여국(夫餘國)의 조(條)

는 그 종족이 아직 한반도에 나타나기 이전부터 감옥 설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여와는 다른 민족인 고구려족이 있었던 지방에서는 '형법은 모반하고 반역한 자는 먼저 태워 죽인 뒤에 머리를 베고 그 집의 재산을 몰수하며, 도둑질한 자는 10여 배를 징수한다. 만약 가난해서 갚을 수 없고 공채(公債)나 사채(私債)[12]를 진 사람들은 모두 자식을 평가하여 노비로 삼는 것으로 빚을 갚도록 한다.'[13] '반역한 자는 기둥에 묶어서 불태우고 베며, 집안의 재산을 몰수한다. 도둑질을 하면 10배로 변상하게 한다. 형벌을 사용는 것이 이미 준엄하여 이를 범하는 자가 드물다.'[14], 가난해서 변상할 수 없는 자와 공채(公債)나 사채(私債)를 지기를 즐긴 자들은 모두 자녀를 평가하여 노비로 삼는 것으로 빚을 갚도록 한다.[15], '법은 모반한 자가 있으면 대중을 모아 횃불을 들게 하여 다투어 불태워 몸 전체를 문드러지게 한 뒤에 머리를 베며, 가족은 다 적몰한다. 성(城)을 지키다가 적에게 항복하거나 전쟁에 임하여 패배하거나 살인을 하고 겁탈을 행한 자는 참수(斬首)한다.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로 변상하도록 하고, 소나 말을 죽인 자는 종신토록 노비로 삼는다. 대체로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준엄하여 위반하는 이가 드물다.'[16], '법은 법조문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백성을 단속했기 때문에 범하거나 어기는 자가 드물다. 여러 개의 횃불로 몸을 지지고서 참수(斬首)하며 집안의 재산을 몰수한다. 전쟁에서 항복하거나 패하며 살인을 하거나 겁탈을 한 자는 참수(斬首)한다. 도둑질한 자는 10배로 변상하게 한다. 소나 말을 죽인 자는 종신토록 노비로 삼는다.'[17], '감옥이 없고,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제가(諸加)들이 평의(評議)하여(중죄를 저지른 자는) 죽인다. 처와 자식은 몰입하여 노비로 삼는다.'[18], '나라에 감옥이 없고,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제가(諸加)들이 평의(評議)하여 죽인다. 처자는 몰입한다.'[19], '나라에 감옥이 없고,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제가(諸加)들이 평의(評議)한다. 중죄를 저지른 자는 죽인다. 처와 자식은 몰입한다.'[20], '감옥이 없고,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제가(諸加)들이 평의(評議)하여 죽인다.'[21]라고 하여, 범죄에 대해 형을 적용하는 것은 단지 준엄하지만 이러한 죄인을 구금하거나 또는 행형을 하기 위한 감옥 설비에 대해서는 부여와는 반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대체로 당시 고구려 지방의 사정은 행정사무가 간단하게 시행되었고 범죄에 대해서도 소위 그 자리에서 결정하여 처리하는 주의로 임하여, 죽여야 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여서 끝내고, 또는 죽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징구하거나 또는 노비로 강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의 결말을 내리며, 결국 구금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감옥 설비는 있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부여에 존재하였다고 하는 감옥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물론 알 수 없지만 다만 생긴 모양에 대해 원형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것은『위지(魏誌)』에서 '부여에서는 성(城)을 만드는 것은 모두 원형으로 하고 감옥과 비슷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부여의 성이 원형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마치 감옥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일컬어진 점으로부터 이를 반대 해석으로 고찰하면 감옥의 형태는 성과 유사하게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여의 감옥 형태는 원형이었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여기에서 비교 대상 올려진 감옥은 부여의 것이 아니라 당시 중국의 감옥이 채택된 것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국 감옥은『주례(周禮)』

12) (역자주) 사채(私債) 개인이 사사로이 진 빚
13)『주서 이역전(周書異域傳) 고구려조』
14)『수서(隋書)』고구려조
15)『북사(北史)』고구려조

16)『구당서(舊唐書)』고구려조
17)『당서(唐書)』고구려조
18)『후한서』동이전(東夷傳) 고구려조
19)『양서(梁書)』고구려조
20) 남사(南史)』고구려조
21)『후한서 동이전(後漢書 東夷傳)』고구려조

에도 '대사구(大司寇)가 환토(圜土)[22]로 파민(罷民)[23]을 모아 교화한다.[24] 무릇 사람을 해친 자는 환토에 가두고 직사(職事)를 시행하여 명형(明刑)으로 수치심을 가지게 한다. 그들 중 잘못을 고친 자는 중국으로 되돌리되 3년 동안 사람 축에 끼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 중 잘못을 고치지 못한 자는 환토에서 끌어내어 죽인다.' 또 '노(奴)가 된 자로서 남자는 죄례(罪隷)[25]에 들여서 환토(圜土)에 가두고 교화하며 (수감) 연수가 차면 놓아준다.' 또 '환토는 옥성(獄城)이다. 감옥에는 반드시 담을 두르는 것이 규례이다.'라고 실려있는 것과 같이 이미 주(周)나라 시대부터 원형였고, 그것이 멀리 내려와 후세에까지도 본보기가 되는 표준이 되었던 것은 맞다. 현재 삼국사기 중에서 '670년(신라 문무왕 10년) 춘정월 당나라 고종(高宗)[26]은 허흠(許欽)이 나라에 돌아가는 것을 허가하였으나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양도(良圖)[27]는 결국 둥근 옥 당나라 옥(獄)[28]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에 의해 보더라도 당나라 시대의 감옥이 둥근 옥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감옥이 원형였기 때문에 위지(魏誌)의 저자는 이를 비교 대상으로 선택하여 이렇게 말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로써 직접적으로 부여의 감옥이 원형이었다고 추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시 부여의 감옥은 어떠한 모양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지만 아울러 한반도 내 북부지방과 같이 비교적 중국의 문화가 들어오기 쉬운 곳에서의 감옥은 필시 원형을 채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먼 후세에 한반도 내 각지에 원형의 감옥을 만들기에 이른 기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편 한반도 남부 즉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의 삼한[29]지방 감옥은 어떠하였을지와 관련하여 변한에서는 명백히 알 수 없지만 진한과 마한에서는 감옥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위지(魏誌)』에 기록된 진한의 풍속 중에 진한은 '옥을 만드는 데에 나무를 옆으로 쌓아 이를 만들어 마치 감옥(牢獄)과 유사한 것으로'

22) (역자주) 환토(圜土) 감옥
23) (역자주) 파민(罷民) 일정한 주소나 직업이 없는 사람
24) (역자주) 환토(圜土)로……교화하고: 환토는 흙으로 쌓은 감옥의 담장이고, 피민(罷民)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타락하여 전전하는 백성을 말한 것으로, 이들을 환토 안에 모아 놓고 노역을 시키며 교화하는 것이다.
25) (역자주) 죄례(罪隷): 관부(官府)에 몰수되어 종이 되는 것을 말한다. 추관(秋官)에 소속된 벼슬로 죄인들의 복역을 맡는다.
26) 당나라 왕
27) (역자주) 당시 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역사에 기록을 남긴 당시의 신라장수
28) 당나라 옥(獄)
29) (역자주) 삼한(三韓) 삼국시대 이전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던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을 통칭하는 말로, 청동기 시대에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성립하였던 진국에 기원을 둔 것이다. 이후 마한의 백제국(伯濟國)이 백제로, 진한의 사로국(斯盧國)이 신라로, 변한의 구야국(狗邪國)이 가야가 되었다는 설이 일반적이다.

라고 하고, 부여의 성책이 둥글어서 감옥과 유사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필법으로 쓰여져 있고, 즉 주택의 비교 대상에 감옥을 가지고 온 점에서 생각하면 당시 그곳에는 이미 감옥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이유이다. 마한에서는 풍속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지방에서 군(郡)[30]에 가까운 여러 국가는 사소한 예의범절에 관한 풍속을 알고 있어도 먼 곳은 단지 죄수와 노비의 모습과 같고'라고 기록하여, 국가 가운데 미개지방인 민족집단의 상태를 죄수 집단과 유사하다라고 형용하고 있는 점에서 보면 당시 마한에서도 이미 죄수의 집단, 즉 감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반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좋은 이유이다. 그리고 양자 모두 그 상태 등에 대해서는 물론 이를 알 수 없다.

삼국정립 시대 이후의 신라, 고구려, 백제의 감옥에 대해서는 삼국 모두 국가 초기부터 역대 왕은 잦은 기회에 빈번하게 사전(赦典)[31]을 베풀어 전국적으로 또는 서울 또는 한 지방에 한해 죄수를 해방한 사실이 실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보더라도 삼국 모두 감옥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구나 서울과 지방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다는 것도 추측할 수 있다. 지금 예를 들어 4, 5가지 예를 열거해 보면 신라에서는 '서기 71

30) 한반도가 아닌 중국의 군현
31) (역자주) 사전(赦典) 은전

년(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 15년)에 가뭄이 들어 서울과 지방의 죄수의 죄상을 살펴 사형에 처할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풀어주었다.', '296년(기림이사금(基臨尼師今) 13년)에 왕이 병이 나서 오랫동안 낫지 않자 서울과 지방 옥에 갇힌 죄수를 사면하였다.', '488년(소지마립간(炤智麻立干) 10년)에 일선군(一善郡)에 행차하면서 지나온 주군(州郡)의 옥에 갇힌 죄수 중에서 사형에 처할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풀어주었다.', '770년(혜공왕(惠恭王) 6년)에 왕이 서경(西京)에 행차하면서 지나온 주현(州縣)의 옥에 갇힌 죄수를 곡사(曲赦)[32]하였다.', 886년(헌강왕(憲康王) 12년)에 왕이 병(病)에 걸려 옥에 갇힌 죄수를 풀어주었다.' 등과 같이, 또 그 외에도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고 은전을 베풀 때의 하교에 '(전략) 단지 영어(囹圄) 속에서는 읍고(泣辜)[33]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가쇄(枷鎖)[34]의 괴로움을 받는 자가 경신(更新)[35]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이 일을 생각하면 잠자리와 먹는 것이 편안하지 못하니, 마땅히 사면을 하여 669년(문무왕 9년) 2월 21일 어둑어둑할 무렵 이전에 오역(五逆)[36]의 사죄(死罪) 이하로서 지금 구금되어 있는 자는 죄의 크고 작음을 논하지 말고 모두 석방하라 등

32) (역자주) 곡사(曲赦, 사면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면하는 것
33) (역자주) 읍고(泣辜 죄수를 불쌍히 여김
34) (역자주) 가쇄(枷鎖) 옥에서 죄인에게 사용한 기구
35) (역자주) 경신(更新 정치를 고쳐 새롭게 함
36) (역자주) 오역(五逆) 임금·부·모·조부·조모를 죽이는 것

등.'이라고 하였다. 왕은 다시 또 삼국통일의 대업을 성취하여 한반도를 평화롭게 하여 장차 목숨이 끝나지 않도록 하는 때에 임하여 지나간 업적을 자랑하여 내린 유조(遺詔)[37] 가운데 '영어(囹圄)는 풀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말로써 감옥이 비어 잡초가 무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이 또는 진성여왕이 거인(巨仁)[38]을 수금한 때의 사실에 대해 역사서에 '시정(施政)을 비방하여 길에 내거는 자가 있어 대야주(大耶州)의 은거자 거인(巨仁)의 소행이라고 고하는 자가 있었다. 임금이 명하여 거인을 경옥(京獄)에 구속하게 하여 장차 형벌하려고 하자, 거인이 분(憤)하여 감옥 벽에 쓰기를 "우공(于公)[39]이 통곡하자 3년 동안 가뭄이 들고, 추연(鄒衍)[40]이 슬픔을 머금으니 5월에 서리가 내렸네. 지금 나의 깊은 근심은 옛일과 같은데, 하늘은 말없이 창창할 뿐이로다."[41]하였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며 우박이 내리니, 임금이 두려워하여 거인을 석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신라에서는 감옥을 설치한 것은 이로써 추측하기 어렵지 아니하다. 또 고구려에서도 '서기 25년(유리명왕 23년) 태자를 세우고 나라에 대사를 하였다.', '신대왕 2년 봄 정월, 왕명으로 과인이 태어나고 조상에 송구스럽다. 본 군(君)은 덕이 있지 아니하니 마땅히 은혜를 받들어 멀리 이르러야 하고, 백성과 함께 스스로 새롭게 하여 나라에 사면을 하라 등등.', '372년(소수림왕 2년) 매우 더울 때 왕은 죄수 누계(縲繫)[42]의 고통을 생각하여 평결을 신속하게 하여 오래 지체됨이 없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등과 같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면으로부터 충분히 감옥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또 백제에서도 여러 차례 옥수를 사면한 사실이 있었던 외에 서기 29년(다루왕 2년)에 '여러 고을에 계칙(戒飭)하여 말하기를 "비록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곧바로 결단하지 말고 모두 서울의 옥(獄)으로 이감하여 범죄 사실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살핀 뒤에 윤허를 받고 재가를 청하기를 다섯 번 거치고서(사형을) 아뢰어 결정하라."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영(令)을 내린 것과 같이, 260년(고이왕 27년)에 관제를 정하여 형옥의 일을 관장하는 조정좌평(朝

37) (역자주) 유조(遺詔) 임금의 유언
38) (역자주) 거인(巨仁) 통일신라 말기의 인물. 유학자로 대야주(大耶州)에 은거하고 있었다. 888년 신라의 정치를 비난하는 벽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도성의 감옥에 갇혀 처형 위기에 놓였다.
39) (역자주) 우공(于公): 한(漢) 나라 때 동해(東海) 사람으로 옥사(獄事)를 잘 다스렸음. 군현(郡縣)의 결조(決曹)와 옥사(獄事)가 되어 옥사를 공평하게 판결하였음. 동해의 효부(孝婦)가 태수(太守)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므로 우공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통곡을 했는데, 그로부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뒤에 효부의 무덤에 제사를 지냈더니 비가 내렸다 한다.
40) (역자주) 추연(鄒衍): 전국 시대(戰國時代) 제(齊) 나라 사람인데, 연(燕) 나라 소왕(昭王)이 갈석궁(碣石宮)을 건축하고 그를 스승으로 삼았었음. 소왕이 죽고 혜왕(惠王)이 위에 올라 참소를 믿고 그를 하옥(下獄)시켰는데, 그가 억울함을 하늘에 호소하자 5월에 서리가 내렸다 한다.
41) 于公痛哭三年旱, 鄒衍含悲五月霜, 令我幽愁還似古, 皇天無語但蒼蒼
42) (역자주) 누계(縲繫) 옥중에 구속된 죄수

廷佐平)이라 불리는 관서를 설치한 것과 같이, 또 655년(의자왕 15년)에 왕이 음주와 잔치와 풍류를 즐겨 조정이 문란하게 되는 것에 개탄하여 온 힘을 다해 간청한 좌평 성충(成忠)[43]을 잡아 옥[44]에 가두게 한 것과 같은 등의 일이 있었던 것으로부터 생각해 보더라도 수도와 지방에 옥이 분포되어 있었던 것은 이를 추측할 수 있고, 삼국 모두 감옥의 설비가 있었던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바이지만 그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문헌의 징표가 없어 전혀 이를 알 수 없다. 다만 형식에 대해서는 신라에 있어서는 수도인 경주에는 지금 옥터 일부가 남아 있어 그에 의해 작지만 원형식이 채용되어 있었던 것만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옥 내부 상태 등에 대해서도 물론 이를 알 수 있는 사유가 없으나 당시 사전(赦典)을 베풀어 죄수를 해방한 것이 실로 빈번하였고 특히 큰 가뭄 등에는 반드시 이를 실시하여 가벼운 죄는 모두 이를 사면하고 때로는 사죄가 무거운 자라도 이를 용서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이는 당시 감옥의 구조와 내부의 제반 설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고 불완전하였기 때문으로 특히 매우 심한 더위와 큰 가뭄 시 등에는 심한 더위로 죽는 자가 나오기조차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보다 더 사면을 빈번하게 하기에 이르렀던 것 같다. 이 점으로부터 추측하면 당시 감옥 내의 수금 상태 일부분은 이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울러 은전이 빈번하게 행해진 것은 삼국 모두 역대 국왕이 죄수의 일을 걱정한 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중요한 일로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천변지이(天變地異)[45], 가뭄, 장마 그 밖의 재앙과 액운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면을 실시하였으며 하나는 이로써 하늘의 뜻에 답하고, 또 하나는 이로써 휼수(恤囚)[46]의 뜻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신라 성덕왕 시대와 같은 때는 그 한 대 동안에 십 수회에 걸친 은사를 시행한 적이 있었고, 역사책에도 '당시에 농사가 흉년이 들고 재이(災異)가 자주 나타나면 번번이 사면을 시행하여 거의 그냥 지나가는 해가 없었다.'라고 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와 같은 것은 필경 역대 국왕이 죄수를 불쌍히 여기는 지극한 정성과 선정(善政) 구현의 정책에서 나온 것으로 반드시 감옥의 불비와 불완전에서 나오는 바의 여러 가지 나쁜 현상을 해결한다고 하는 취지만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서기 90년(신라 파사왕 11년)에는 염찰(廉察)을 위해 10인을 각 주군(州郡)에 나누어 파견하여 관리를 감찰하도록 하고 직무에 힘쓰지 아니하고 (중략) 형옥(刑獄)을 신중하게 다스리지 않는 자를 벌한 적이 있었다. 또 270년(미추왕 9년)에는 군신을 남당(南堂)[47]에 모아서 친히 정형(政刑)의 득실(得失)을 묻고, 관리 5인을 파견하여 백성의 병고(疾苦)를 돌보도록 한 적도 있었다. 이와 같은 지방순찰을 실시한 때는 반드시 지방 옥도 시찰하도록 하였고, 오늘날 소위 순열(巡閱)과 유사한 것을 실시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고에는 기술한 바와 같이 감옥의 설비는 있었으나 그것은 일반 관아(官衙)와 같이 관제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체포, 감금, 심문 및 과형(科刑)의 권한을 가지는 관아의 부속물에 해당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감옥에는 하나의 관아로서 고유의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어(囹圄)라고 하거나 또는 감옥이라고 칭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관할하는 관아는 백제에서는 고이왕 때에 제정한 조정좌평(朝廷佐平)[48]이고, 신라에서는 651년(진덕왕 5년)에 사법기관으로 제정한 좌이방부와 667년(문무왕 7년)에 사법기관 확

43) (역자주) 성충(成忠) 백제의 좌평으로서 의자왕에게 국운이 위태로워짐을 간언하다 투옥된 관리. 충신.
44) 당시 수도 충남 부여에 있는 옥
45) (역자주) 천변지이(天變地異) 하늘에 생기는 변고와 땅에서 일어나는 이변
46) (역자주) 휼수(恤囚) 감옥에 갇힌 죄수의 가련하고 딱한 처지를 돌보아 구제하는 정책
47) (역자주) 남당(南堂) 삼국시대의 관청
48) (역자주) 백제의 6좌평 가운데 하나로서 형옥관계(刑獄關係)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장을 위해 증설한 우이방부였다. 그리고 좌, 우이방부는 신라의 태봉시대[49]에 이르러서 이를 의형대(義刑臺)로 바꾸었다.

백제에는 금고형이 존재하였다. 『당서(唐書)』 백제의 조 중에 '법은, 반역을 한 자는 주벌(誅伐)하고 그 집의 재산을 몰수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노비 셋을 보내어 속죄하게 한다. 아전(衙前)이 뇌물을 받거나 도둑질하면 3배로 변상하게 하고 종신토록 금고(禁錮)한다.'라고 하는 문장 가운데 '고(錮)'라고 하는 것은, 262년(고이왕 29년)에 제정된 영(令)에 '무릇 벼슬아치로 재물을 받거나 도둑질을 한 자는 3배의 금액을 징수하고 종신금고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것이다. 아마도 백제에서 처음으로 금고제가 정해졌다. 금고제에 대해서는 이를 감옥에서 집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따라서 본 제도가 존재한 사실로부터 감옥 존재의 하나의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자도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형명인 금고와는 크게 취지를 달리하고, 단순히 당해 죄수의 거소를 한정하여 함부로 출입을 금지한 것이며, 마치 일본의 구 막부시대의 폐문(閉門)과 유사한 것으로 감옥에서는 아니다.

제2편 중고사(고려시대)

고려시대 감옥은 초기에 있어서 태봉(泰封)의 제도에 의해 두어진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의형대(義刑臺)의 관할이었지만 그 후 당의 제도를 모방하여 백정(百政)의 개혁을 실시하고 형무기관으로 전옥서(典獄署)라고 하는 관아를 창설하였다. 이것이 감옥이 독립된 하나의 관청으로 존재를 보게 된 기원이다. 또 의형대는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명칭 변경이 있었으며 형관(刑官), 상서(尙書), 형부, 전법사(典法司), 형조, 헌부(憲府), 형부, 이부(吏部) 등의 이름을 고치어 고려 말엽에 이르러 형조라 하였다. 그리고 전옥서는 언제나 관할 관청이었던 것은 변함이 없었다.

전옥서는 수도의 중앙 옥으로 관제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죄수를 관장하는 곳이라고 한다. 감옥은 각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전옥서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전과 다름없이 사법권을 겸장(兼掌)하는 지방관 소속의 감옥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49) (역자주) 태봉시대(泰封시대) 태봉(泰封)은 후삼국을 이루던 나라로, 901년에 궁예가 송악을 도읍 삼아 건국하였다. 초창기에는 고구려를 잇는다는 뜻으로 국호를 고려라고 했으나 이후 철원으로 천도하여 국호를 마진, 태봉으로 바꾸었다.

수도에는 전옥서 외에 순금사옥(巡禁司獄)이라 불리는 감옥이 존재하였다. 이것은 전옥서와 같이 관제에 따라 두어진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 초기에 금위친병(禁衛親兵)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내에 설치된 옥으로 처음에는 궁궐 안 군령을 위반 자를 여기에 구금하였으나 중기에 이르러 조신(朝臣)으로서 임금의 뜻에 거역하거나 그르친 자도 직수(直囚)하였다. 그 무렵부터 사대부의 고하를 막론하고 범죄를 한 때에는 모두 대옥(臺獄)[50]에 수금하였기 때문에 이 옥은 조옥(詔獄)[51]이 되었다. 그래서 고려조 말엽에 이르러서는 벼슬아치의 옥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왕도(王都)[52]의 보통 범죄자를 수용하는 감옥은 전옥서 하나뿐이었지만 960년(광종 11년)에 노예법의 개정을 기도하면서 노비를 안험(按驗)[53]하고 그 옳고 그름을 변별하는 것으로 한 바, 노비지(奴婢志)를 얻어 고귀를 능역(凌轢)하여 다투고 주인을 구함(搆陷)[54]하였기 때문에 사회질서가 완전히 분란하기에 이르러 왕은 질서를

50) (역자주) 대옥(臺獄) 어사대(御史臺)의 옥을 말한다.
51) (역자주) 금부옥(禁府獄)은 왕옥(王獄) 또는 조옥(詔獄)이라고도 한다. 의금부 관할로 사형죄인과 같은 중죄인을 잡아다가 국문하거나, 관인(官人)이나 양반 계급 범죄자를 감금하던 곳이었다.
52) (역자주) 왕도(王都) 왕궁이 있는 도시
53) (역자주) 안험(按驗) 잘 살펴서 증거를 세움
54) (역자주) 구함(搆陷) 터무니 없는 말로 남을 꾀어 죄에 빠지게 함

회복하는 수단으로 형옥(刑獄)을 엄하게 한 결과, 감옥은 그 때문에 왕람(汪溢)[55]하게 되어 전옥서만으로는 수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임시로 감옥을 증설하고 이를 '가옥(假獄)'이라고 불렀다. 가옥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종왕(景宗王) 때에 폐지하여 끝났다.

전옥서는 995년(성종 14년)에 이르러 이름을 바꾸어 대리사(大理事)로 불렀으며, 평사(評事)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형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문종왕 때에 이르러 다시 고쳐 전옥서라 칭하고 령(令)[56] 1인, 승(丞)[57] 2인과 그 외에 아전으로 사(史) 3인, 기관(記官) 3인을 두었다. 1308년(충렬왕 34년)에 이르러 형조가 언부(讞部)로 개칭되었을 때 전옥서[58]는 헌부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감옥은 다시 독립관청으로서의 존재를 상실하게 되었다. 충선왕 때에 이르러 령(令)과 승(丞)을 없애는 한편 대리사라는 명칭까지도 관제상에서 삭제되고 말았으나, 1362년(공민왕 11년)에 대리사를 부활하고 다시 영(令)[59]만을 두었다.

55) (역자주) 왕람(汪溢) 흘러 넘침
56) 정8품
57) 정9품
58) 그때에는 대리사라고 불렀다.
59) 종8품, 종9품

이와 같이 전옥서는 대리사로 개명되거나 또는 다른 관청에 병합되어 일시 폐지된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명의(名義) 상에 그쳤고, 감옥의 존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그 무렵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감옥은 시옥(市獄)이라 일컬었던 것 같다. 신우(辛禑)시대에 위사(衛士)의 정원을 정할 때 궁문(宮門), 능(陵), 사원(寺院)의 숙위장교를 합하여 377, 군(軍) 111, 고서(庫署) 각 소의 장교는 315, 군(軍) 131으로 정하고, 시옥(市獄) 여러 곳의 점검장교(宿衛將校)는 126, 군(軍) 347로 정한 것에 의해 보더라도 각 도읍(都邑)에 설치되어 있는 감옥은 이를 시옥(市獄)이라고 불렀고 경계와 수위는 군사의 임무에 속해 있었던 것 같다.

고려시대에는 감옥이 새롭게 만들어 진 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역사상으로 보이는 것은 고려사 제강(提綱)에 1106년(숙종왕 11년) 11월 안옥(犴獄)을 새롭게 하였다고 하는 기술이 하나만 있고, 더구나 그 위치, 구조, 형태 등에 대해서는 문헌상 아무런 표현하는 것이 없어 완전히 불명확하다. 그렇지만 틀림없이 서울의 감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그 형식에 대해서는 말할 것까지도 없이 예로부터 중국을 모방한 원형식을 채용해 온 적도 있고, 당시 당에서도 원옥(圓獄)이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원형식을 채용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 초기부터 같은 위치였는지 여부는 판명되지 아니하지만 예종왕 무렵에는 남쪽 거리라고 하는 네거리에 있는 법사(형부)와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예종왕 즉위 해에 사면을 실시하였고 그 때문에 영어(囹圄)의 빔을 고하였고, 글을 청해 '옥공(獄空)' 두 글자를 써서 법사(法司) 남쪽 거리에 게시하였다고 한 적도 있었으며, 또 1113년(예종 8년) 왕륜사(王輪寺)[60]에 행차했다가 환궁하여 형부 남쪽 길에 이르자 죄수가 왕의 수레를 우러러보며 만세를 제창하였다고 한 적도 있어서 형부와 같은 남쪽 길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추측하였다.

그리고 구조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다만 그 규모는 매우 낮고 작은 집의 협소한 것 같았으며, 따라서 무리한 수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이 생각된다. 당시 은전을 베푼 것이 너무나도 빈번하였던 것은 이미 신라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한층 심해졌다. 그 원인은 옥사에 죄수가 가득차서 그 범람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죄수의 건강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더구나 그 때문에 죄수로 하여 구금의 고통으로 원망과 탄식의 신음 소리를 그대로 두는

60) (역자주) 왕륜사(王輪寺) 고려 태조가 건립한 개경 10찰(開京十刹) 중의 하나로 국가의 기원 법회와 도량[道場]이 자주 개최되었다.

것은 천지의 온화한 분위기를 해치고 사계절의 불순(不順)을 초래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은전을 베풀어 수금의 어려움의 타개를 도모하려고 하여 당장 사면을 실시하였다. 사면 후 잠시 지나면 또 원래와 같이 죄수가 옥에 가득차게 되기에 이르는 것이 거의 예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은전을 빈번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따라서 결국 구금 설비의 불비와 불완전한 것에 귀착하는 이유이다. 1355년(공민왕 4년) 사헌부가 상소한 한 구절에서 '전옥(典獄)은 죄인이 모인 곳이므로 여기(厲氣)[61]가 답답하게 오염되어 병이 나기 쉬운데, 죄가 아니면서 죽으니, 몹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등등'이라는 말에 따라 보더라도 그 말의 뜻의 외에 설비의 불비, 수금 상태의 참담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여 헤아릴 수 있다.

사면이 빈번하게 행해진 결과로는 소위 사면을 함으로 한 것에 대한 폐단을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즉 사면을 실시하여 죄수 전부를 석방하면 그때는 감옥 안에 갇힌 한 사람의 죄수[62]도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관련 업무를 하는 관청은 이를 어진 정치를 하는 왕의 덕의 징표라고 하여 경축하는 것을 예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61) (역자주)여기(厲氣) 무서운 돌림병을 옮기는 기운

62) 獄裏隻影

사면 후 형부로부터 옥이 비었다는 뜻을 아뢰면 재상은 즉시 들어가서 왕에게 아뢰었다. 1105년(숙종 10년) 11월 안옥(犴獄)을 새롭게 경영하여 대사를 시행하고 죄인을 모두 석방하였을 때도 어사대는 '옥공(獄空)'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써서 큰 길거리에 내걸고 이로써 성조(盛朝) 형조(刑措)[63]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재상은 또한 입궐하여 하례를 표하였으나, 어떤 유식자가 있어 이를 비방하고 나무랐다. 그것은 재상으로 하여 거짓을 품고 아첨을 바치고 나이 어린 군주를 인도하여 교만한 마음을 열게하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이와 같은 일은 완전히 왕에게 권하여 세상 사람을 기만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예는 그 밖에도 얼마든지 있다. 또 이러한 일도 있었다. 즉 1280년(충렬왕 6년) 왕이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사(大赦)를 시행하였을 때 승선(承宣) 홍자번(洪子藩)[64]이 '해마다 사(赦)가 있고, 사(赦)는 하여간 수많이 하면 범죄자가 늘어 무리가 되므로, 구전(口傳)[65]하여 죄수를 석방해서는 안된다.'라고 임금에게 아뢴 바, 왕은 이를 듣고 따랐다고 한다. 이는 사(赦)가 빈번하였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지 아니하여 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악영향을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일반에게 사전(赦典)을 알리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은사가 빈번하게 계속된 결과 이와 같은 폐해도 발생하기에 이르렀지만, 때때로 모든 죄수의 석방으로 옥사의 밑바닥 먼지를 떨어낼 수 있었고, 구금의 어려움과 죄수의 건강에 미치는 바의 해로운 영향이 감소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점에서는 은전은 또한 옥을 다스리는 데 커다란 편익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018년(현종 9년)에 막 가을걷이를 하려고 하는 때에 비황(飛蝗)[66]이 해를 끼치기에 이르러 필경 형정(刑政)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서울과 지방의 죄수 가운데 유형(流刑) 이하의 자에 대해서는 속히 보방(保放)[67]하여 출옥시키도록 명하였다. 입보(立保) [68]출옥의 예는 여기서 최초로 보여진다.

63) (역자주) 형조(刑措) 형조 불용(刑措不用)의 준말로, 형벌은 설정하되 적용치 아니하는 것. 곧 천하가 잘 다스려져 죄를 짓는 사람이 없다는 뜻임.

64) (역자주) 홍자번(洪子藩, 1237~1306) 원나라 간섭기 권문세족

65) (역자주) 구전(口傳) 말로 전함

66) (역자주) 황(蝗)이란 한자는 떼지어 이주하며 농작물을 갉아먹는 메뚜기류를 가리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풀무치를 황충이라고 하였다. 날아서 이주하기 때문에 비황(飛蝗)이라고도 부른다.

67) (역자주) 보방(保放)은 대개 도형(徒刑)이하의 죄수나 판결을 기다리며 옥에 갇혀있는 자를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보방은 농사철에 가뭄이 심한 때, 날씨가 덥거나 추운 때, 죄인이 병들었을 때 등에 실시되었다.

68) (역자주) 입보(立保) 보증인을 세움

1199년(신종왕 3년) 진주의 향리 정방의[69]라고 하는 자가 반역을 꾀하였다. 이에 앞서 정의방은 죄로 옥에 감금된 바, 그의 동생 창대(昌大)가 옥에 돌입하여 가쇄(枷鎖)를 벗기고 탈출시켰으며 불령(不逞)의 무리를 소집하여 주(州)와 리(里)를 누비고 다니고 원수인 자를 죽여 그 수가 6천 4백여 명에 달하였으나 다음해 토벌되었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옥내에 돌입하여 죄수를 탈취하고 또한 탈옥 후에 난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과 같이 계호사고는 실로 지금까지 한번도 있지 않았던 사건에 속한다.

1112년(예종왕 8년)에 왕륜사에 행차하고 환궁하여 형부 남쪽 큰길에 이르자 죄수는 왕의 가마를 향해 일동이 소리를 질러 만세를 창한 바, 왕은 가까운 신하에게 명하여 옥에 술을 하사하고, 가벼운 죄는 석방하도록 하였다. 왕이 죄수에게 술을 하사하는 것은 물론 휼수의 뜻으로 한 것일 것이지만 전에도 후에도 그다지 듣지 못하였다.

1136년(인종왕 14년)의 판결에 '부양할 사람이 없는 죄수는 도관(徒官)이 장속전(贓贖錢)을 지급하여 음식을 마련하라.'라고 하고, 즉 죄수 중에 양식이 없는 때는 관급하고 그 비용은 장속전(贓贖錢)으로 내주는 것으로 정하였다. 옥에 있는 자의 음식과 의복은 가족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또는 본인에게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이전부터의 예이지만 본인에게도 자력이 없고 달리 부양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굶어서 스스로 죽는 수밖에 길이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위와 같은 관청에서 지급의 길이 열렸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번번이 이와 같은 영(令)이 발해진 바로부터 보면 인종왕의 판결도 빈문서에 속한 것처럼 생각된다.

원종왕 시대 원래 군대는 일본 코안노에끼(弘安の役)[70]로 원(元)나라 군(軍)이 패하였기 때문에 원나라 세조는 일시 정동행(征東行)을 그만두었지만, 후에 이르러 다시 원한을 갚기를 원하여, 고려에 명하여 전함을 수리하도록 하고 또 죄인으로 하여 해전(水戰)을 익히게 하였으며, 다시 정동행성(征東行省)[71]을 두고 고려왕으로 하여 이를 살피도록 하였다고 하지만, 그 실적이 어떠하였을까는 전혀 알 수 없다. 죄인을 군사에 이용한 것은 그 수년 후에도 있었다. 즉 1284년(충렬왕 10년)에 왜구를 막기 위해 여러 도(道)에 유형수로 하여 배를 타고 왜구를 사로잡아오는 자에게는 죄를 사해준다는 취지의 영(令)을 발한 적도 있었다. 이것은 원종왕 때에 죄수에게 해전을 익히도록 한 예를 본 딴 것일 것이다.

1391년(공양왕 3년)에 오랜 비로 인하여 서울의 죄수 150명을 석방한 일이 있었다. 이것은 당시 서울에 있었던 죄수 전부였는지 또는 그 대부분이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결국 석방이 필요한 만큼의 수를 석방하였을 것이다. 또 비 때문에 죄수를 해방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바가 있지만 덮개의 설비가 없는 것 같은 장소에 구금해 둔 죄수가 오랜 비가 오는 때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해방한 것은 아닐까, 어쨌든 비상해방이었기 때문에 이조판서 조온(趙溫)을 그곳으로 파견하여 죄수 안치(安置)를 석방한 적이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상해방이었다.

1392년(공양왕 4년) 헌사(憲司)의 상소인 '감옥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나쁜 기운이 빠르게 전염되고 질병이 생기기 쉬워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니, 매우 딱합니다. 바라건대 의관(醫官) 한 사람을 6개월마다 서로 교대하여 전적으로 감옥을 맡게 하여 매일 병든 죄수의 증세를 살피고 약을 조제해 치료하게 하시어 재앙을 대비하소서.'에 따라 전옥서에 의관을 배치하고 형조는 정좌랑(正佐郎)으로 하여 옥관 의관의 근태를 고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고려 초기에 적용된 형률은 이를 상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생각건대 예로부터 내려오는 형벌을 답습하고 전례에 따라 이를 적용하면서 다소의 증감을 더하여 시대의 요구에 따르도록 한 것이 지나지 아니한 것 같다. 그런데 당의 제도 문물을 모방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부터 형정에도 혁신을 재촉하여 마침내 성종왕 때에 이르러 당률(唐律)을 모체로 하고 그 당시 사정에 맞는 것을 참작하고 번거로운 것을 삭제하고 문서로 하여 성립된 소위 고려 형법을 제정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때까지의 형벌의 종류

---

69) (역자주) 정방의(鄭方義, ?~1201) 진주(晋州) 출신의 향리로 1200년 진주의 공사(公私) 노예가 중심이 되어 주(州)의 관리들의 강압적인 수탈과 억압에 대항하여 난을 일으켰다.

70) (역자주) 1281년 원나라의 일본 2차 침입

71) (역자주) 정동행성(征東行省) 정동행성은 본래 일본을 원정하기 위한 전방사령부로서 설치된 임시적 기구였다. 그러나 일본 원정에 실패하고서도 세조 쿠빌라이는 원정을 단념치 않고 정동행성을 존치하였으며 세조의 사후에 일본 원정이 사실상 포기된 뒤에도 고려 말까지 남아있었다.

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의 참형(斬刑)과 그 후 언제부터인지 실시되어 온 유형, 장형 및 벌동(罰銅) 등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도 법제상 근거를 가지는 것은 없었지만 고려 형법에는 형벌을 태, 장, 도, 유 및 사의 5종으로 정하였다. 이를 재래의 형벌과 비교하면 새롭게 태형 및 도형을 두었고, 유형은 이수제(里數制)에 의해 그리고 배역(配役)을 부가하였으며, 사형은 참(斬)과 교(絞)의 2종으로 하고, 또한 장으로 절산환형(折算換刑)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동(銅)으로서 하는 수속(收贖)[72]제도를 인정하고, 사형 이외의 각 형에는 각각 죄의 경중 등에 따라 가감(加減)할 수 있도록 형량에 범위를 정하는 등 현저하게 특색을 가졌으며 형제상 실로 하나의 신기원을 긋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실제 형정은 면목을 일신하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하였던 것 같다. 고려 형법 실시 후 상황과 성과 등에 대해서는 역사상 아무런 볼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전혀 판명되지 아니하지만 멀리 내려와 신우 원년에 '(전략) 법률에 정해진 이외의 형벌을 사용하지 말라. 도역(徒役)에는 정해진 연한이 있으니, 이미 그 연한이 만료된 자는 석방할 것이요, 금고(禁錮)하거나 천인(賤人)으로 만드는 일이 있으면 또한 철저하게 조사하여 아뢰라.'와 같은 하교가 있었으며 그 반면에서 살펴보면 당시 율(律) 외의 형, 즉 형법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형이 남용되는 것과 같은 폐해가 생겨나고 있었던 사실, 즉 이를 예를 들면 1364년(공민왕 13년) 찬성사(贊成事)[73] 김용(金鏞)이 반역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사형에 처했을 때와 같이 신체를 지해(支解)[74]하여 각 도에 돌리고, 머리는 서울에 전하여 시장에 효(梟)하였다고 하는 것과 같은 종류가 있었고 이와 것과 같은 것은 열거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존재하였다. 또 도형의 만기 석방에 해당하는 자를 노예로 몰입하여 두고 있었던 사실 등도 있었다. 또 유형도 이수제(里數制)로 바꾸었다고 하지만 실제는 종전과 같이 모두 지정된 지방에 유배하고 있었다. 고려형법지의 서문에도 '(전략) 그런데 그것을 폐하거나 금망(禁網)[75]이 펼치지 아니하고 형을 완화하고 수 차례 사면하여, 간흉(姦兇)한 무리는 법을 벗어나고(脫漏) 제멋대로 하는 것도 말리지 아니하여 말세에 이르러서는 그 폐해가 극에 달하였다. 그래서 원나라의 『의형이람(儀刑易覽)』[76]과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을 섞어 사용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또 『지정조격(至正條格)』[77]과 『언행사실(言行事實)』을 함께 채택하여 책으로 하는 자도 있었으며, 이러한 시대의 폐해를 구제하는데 공을 세웠다고 하지만 대강이 이미 무너져 나라의 기운이 이미 기우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등등'이라고 기술하고 있을 정도로 절각(折角)의 형법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실로 도법(徒法)에 속해 있는 것과 같았다. 따라서 행형 면에도 아무런 면목을 개선한 점은 없었다.

제3편 근세사(조선시대)

제1절 감옥관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조 즉위 시 하교 중에 의장(儀章)과 법제(法制)는 첫번째로 고려시대의 것에 따른다는 취지의 선언을 한 것에 근거하여 제반 시설은 대체로 고려조의 유제를 답습하였기 때문에 형무(刑務)기관도 역시 종전이 전옥서의 명칭으로 이를 두고, 그 직원으로 영(令) 2인과 승(丞) 2인을 두었는 것으로 하였으나 1414년(태종 14년) 영(令)을 승(丞)으로, 승을 부승(副丞)으로 변경하고, 이어서 제조(堤調) 1인, 주부(主簿) 1인, 봉사(奉事) 1인, 참봉(參奉) 1인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1703년(숙

72) 역자주) 수속(收贖) 죄인의 속전(贖錢)을 거두던 일

73) (역자주) 찬성사(贊成事) 고려 후기 첨의부(僉議府, 都僉議使司)의 정2품 관직

74) (역자주) 지해(支解) 팔과 다리를 찢어내는 형벌

75) (역자주) 금망(禁網) 법

76) (역자주) 『의형이람(議刑易覽)』: 원(元)나라가 『지정조격(至正條格)』과 『대원통제(大元通制)』를 편찬한 뒤에 전국의 서리(胥吏)가 알기 쉽도록 중국의 속어(俗語)로 다시 만든 법률서이다.

77) (역자주) 『지정조격(至正條格)』: 원(元)나라 순제(順帝) 지정(至正) 6년(1346, 충목왕2)에 반포한 법전으로,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고려 때에는 이를 형법(刑法)의 근간으로 삼았으며 이문(吏文)을 학습하는 교재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종 29년)에 위 정원에 대해 일부 증감을 하였다. 다시 1743년(영조 19년)에 봉사(奉事)를 폐지하고 참봉 2인, 이속(吏屬), 서사(書史) 4인, 쇄장(鎖匠) 5인, 군사(軍士) 10인을 증가 배치하는 대개정을 가하였다. 나중에 1866년(고종 3년) 「육전조례(六典條例)」를 제정 반포하면서 그중에 전옥서의 관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전옥서 감옥의 죄수를 관장한다. 제조(提調) 2인[78], 주부(主簿) 1인[79], 참봉(參奉) 2인[80], 이서(吏胥)[81], 도예(徒隸)[82] 전옥서의 지위는 경국대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종6품 아문(衙門)이라 일컫는 정도로 아주 하급 관청에 속해져 있었으나 육전조례에 의해 보면 제조(提調)라 칭하는 고급관을 두었고, 예로 정3품의 형조 참의가 겸임하면서 감옥사무를 통치하게 되어 있었으며 아울러 형조 관할하에 있는 하나의 부속 관아에 해당하는 것은 고려시대와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형조는 소위 6조의 하나에 속하고 사법행정의 감독기관으로 법률, 상언(詳讞), 사송(詞訟) 외에 노예의 행정을 관장하였으며 그중에 상복(詳覆), 고율(考律), 장금(掌禁), 장례(掌隷)의 4사를 두고 형옥, 금령(禁令)의 일은 장금사로 하여 주관하도록 하였다. 또 위 4사는 다시 이를 상(詳) 1방, 상(詳) 2방, 고(考) 1방(一房), 고(考) 2방, 금(禁) 1방, 예(隷) 1방, 예(隷) 2방, 형방(刑房)의 9방(九房)으로 나누어 사무를 분장하고, 금(禁) 1 및 금(禁) 2에게는 형옥, 금령의 사무를, 형방에는 금란(禁亂), 죄수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형조 관할의 소위 율학청(律學廳), 전옥서(典獄署), 장예원(掌隷院), 보민사(保民司), 좌우 포청(捕廳) 및 우순청(右巡廳) 등 6사가 있었고 그중에 우포청(右捕廳)인 관청은 모두 조선 초기에 창설된 것으로 포도청이라고도 불리었다. 그리고 좌우(左右)의 양청을 두었고 각각 옥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官)과 민(民) 모두 일반적으로 이를 좌옥(左獄) 또는 우옥(右獄)이라 칭하였다. 포도청이 옥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포도청의 직무가 도적을 사로잡고 시간을 나누어 야간 순찰을 관장하는 바 즉 경찰권을 행사한 결과로 범죄를 체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로 생겨난 것이며, 당연히 감옥은 아니다. 이와 같이 감옥으로서 관제상 인정된 것은 형조에 속한 전옥서 하나만이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전옥서에 대립하여 또 하나의 감옥이 존재하고 있었다. 금

78) 1인은 형조 참의(정3품)가 겸임, 1인은 형방 승지가 겸임
79) 종6품. 인신(印信)을 관장함
80) 종9품, 1원은 조례(皂隷, 하인)와 극위(棘圍, 科場)를 관장하고, 1원은 가유(枷杻, 刑具)와 족쇄(足鎖)를 관장함
81) 서생 6인, 상무서리 1인
82) 사령 10인, 오작 1인, 군사 10인 ○행형쇄장(行刑鎖匠)은 사형수 가운데 자원한 자를 입계하여 차정함

부옥(禁府獄)이라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고려시대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소위 순금사(巡禁司)라 불리었던 것의 후신으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재판기관에 해당하는 의금부 소속 옥사로 설치된 것이다. 이와 같은 감옥은 사실상 두 종류를 두고 있었지만 두 종류를 둔 것은 이를 변칙이라고 인정한 것 같다. 영조왕 때 우의정 유척기(兪拓基)[83]의 계문(啟文) 중에 '송(宋)나라 조옥(詔獄)의 법을 보건대, 한나라에 본래 두 가지 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금부옥(禁府獄)과 전옥(典獄)의 두 개가 있는 것은 이는 비록 귀천(貴賤)을 분별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옛 법에는 어긋나는 바가 있다. 등등'이라고 말한 것에 의해서 생각하면 관제상에서 전옥서 하나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크게 이유가 있었다.

관제상 근거를 가지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상 감옥으로는 앞에 기술한 전옥 외에 포도청옥과 금부옥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또한 그 외에도 옥사를 가진 관청이 있었다. 그것은 직수아문(直囚衙門)이라 불리는 것으로 즉 형조 및 의금부 외에 병조, 사간원,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종부사(宗簿司), 비변사, 포도청 등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직수[84]의 제사는 각 그 권한에 따른 범인의 체포, 처분의 직권을 가지고 있었

83) (역자주) 유척기(兪拓基, 1691~1767) 조선 후기에, 이조참의, 호조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84) (역자주) 직수(直囚) 조선 시대에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범인을 잡아 가둠

기 때문에 옥사를 설치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었다. 또 왕궁 내에도 옥의 설비가 있었다. 한북사옥(漢北寺獄)[85] 내 수사옥(需司獄)[86]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한북사옥은 옛날 궁궐 안뜰의 와린평(臥麟坪)에 설치되었고 구조는 토담집이었다. 궁중의 유죄자를 구금하는 것도 궁부(宮府)는 하나로서 죄인은 모두 유사(有司)에서 죄를 심리하여 처단해야 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폐지하였다.[87]
내수사옥[88]도 역시 궁중의 죄인을 수금하였지만 1711년(숙종 37년) 하교(下敎)에서 '내수사의 옥은 한북사옥(漢北寺獄)과 같이 유래가 오래되어 비록 마음이 늘 편안하지는 아니하니 지금부터 내사옥은 이를 중지하라.'라고 명령하여 폐지되었다.

조선시대 말엽에 이르러 서소문옥(西小門獄)이라고 불리는 비교적 규모가 큰 감옥이 1개소가 증설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문헌상 근거를 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증설 이유와 또 이를 폐지한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전혀 불명하지만 생각건대 이것은 대원군 집권 무렵에 많은 천주교도를 검거하여 투옥 처형하였고 그 때문에 옥사가 비좁아서 증설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옥서의 분금장(分禁場)이 아니라 포도청의 부속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옥은 천주교도의 검거가 중지되어 죄수가 줄었기 때문에 자연히 폐옥이 되었던 것 같다.
이상은 중앙 즉 서울의 감옥에 대한 것이지만 각 지방에서도 감사(監司) 및 수령 즉 나중에는 관찰사, 부윤, 군수와 같은 지방관도 6조(曹)의 축도(縮圖)에 해당하는 6방(房)을 두고, 그중에 형방에서는 재판, 금령, 죄수, 감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직수의 각 관아와 마찬가지로 옥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옥사의 설비가 없는 곳은 없다고 할 정도로 보급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에 산재한 옥사는 지방 관헌 부속의 것이었기 때문에 관제에 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정해진 명칭도 없었으나 통상 도옥(道獄), 부옥(府獄), 군옥(郡獄) 등이라 불리었다.

제2절 감옥 설비

조선시대의 옥사의 양식, 구조 및 그 밖의 모양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문헌에 불충분하여 상세하게 할 수 없지만 다만 양식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의 건조(建造)를 추정할 수 있는 울산 및 안주(安州)의 옥이 있고 그 유적으로부터 관찰하면 원형이었다고 하고, 또 최근까지 그 현재 형태대로 남아 있는 공주의 옥이 훌륭하게 원형이었던 것과 조선시대 말에 이르러 건축된 전옥서 내의 옥사가 그 개축 직전까지는 둥근 담장으로 둘러쌓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인 점과 육전조례 중에서도 '전옥서에 남옥과 여옥을 두고 동서로 나누어 설치하며 둘레는 높은 담장으로 한다. 등등'이라고 하여,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면 옥사를 둘러싸고 있는 담은 원형으로 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었던 것 같이 생각된다. 특히 직수의 각 사가 가지는 옥사와 또는 지방에 있는 옥사 등에는 보통의 건물로 이에 충당한 것도 적지 아니하기 때문에 옥사는 모두 한 마디로 둥근 형태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1426년(세종 8년)에 안옥도(犴獄圖)를 만들어 이것을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고, 동시에 아래와 같이 '크고 작은 형벌을 매우 신중하게 적용해야 것이다. 비록 태(笞) 1대나 장(杖) 1대처럼 작은 형벌이라도 모두 조정에서 정한 율문에 따라서 할 것이지 절대로 함부로 행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를 교령(敎令)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나라 안에 반포하고 관청 벽에 게시하여 항상 경계하고 살피게 하라. 안옥(犴獄)[89]의 경우에는 도면으로 그려서 서울과 지방에 보여서 도면에 따라 안옥을 짓되 추울 때와 더울 때에

85) 북사옥(北寺獄)이라 불렀다.
86) 내사옥(內司獄)이라 불렀다.
87) 폐지한 때는 판명되지 아니한다.
88) 내수사(內需司)는 궁궐 안에서 사용하는 쌀, 포 및 물건, 노비의 일을 관장하였다.
89) (역자주) 안옥(犴獄) 감옥

따라 달리 거처하게 하며, 죄수를 구휼하는 일을 엄격하게 완비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재앙에 걸려 야위거나 병든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교(敎)를 내린 일이 있지만, 안옥도(犴獄圖)에 대한 것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이를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안옥도(犴獄圖)는 전옥서와 같이 독립하여 설치된 감옥에 대한 영구(營構)[90]의 표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각 관아가 가지고 있었던 옥사의 전체에 대해 안옥도(犴獄圖)에 따라 건축하도록 한 것일 것이다. 1432년(세종 14년) 하교에 '각 관아에서 더러 감옥을 만들지 않고 경내의 죄인들을 다른 관아로 옮겨 가둠으로써 왕왕 죄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91] 데 매우 곤란한 폐단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미 만든 감옥도 매우 좁아서 죄수들이 대거 모여서 늘 춥거나 더운 계절이 되면 병이 발생하여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 지금부터는 감옥이 없는 각 관아에는 감옥을 새로 짓고, 좁은 감옥은 고쳐 넓히며, 남자 죄수와 여자 죄수 및 죄가 가벼운 죄수가 거처하는 곳을 구별하며,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하여 "죄수를 불쌍히 여기고 신중하게 형벌을 행하는 어진 마음"을 널리 시행하도록 하라.'라고 한 것에 의해 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옥서는 무엇보다 당해 도면에 따라 건축된 것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추관지(秋官志)[92]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전옥서는 본서 서린방(瑞麟坊)[93]에 있고, 동서남의 세 방향은 여가(閭家)[94]이고, 북쪽은 길이다.

청사 3칸 반[95], 방 1칸, 서리장방 2칸, 청 1칸

사령청 3칸, 상직방 1칸, 군사직방 1칸.

남옥 동쪽 3칸, 서쪽 3칸, 북쪽 3칸

여옥 남쪽 2칸, 서쪽 3칸

옥문 1칸, 대문 2칸, 협문 1칸, 홍살문 1칸

90) (역자주) 영구(營構) 건축물을 짓다.

91) 양옥(養獄): 감옥의 죄수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보양(保養)하는 일이다.

92) (역자주) 추관지(秋官志) 1781년(정조 5) 형조좌랑 박일원이 형정·재판에 관해 참고할 목적으로 국 초 이래의 각종 법례·판례·관례를 모아 5편의 『추관지』를 사찬(私撰)하였으며, 정조의 명에 따라 이듬해 의금부에 관한 사례도 첨가했다.

93) 종로감옥(역자주: 현재의 영풍문고 자리)이 있는 곳

94) (역자주) 여가(閭家) 여염집

95) 간(間)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적 단위로 평(坪)이라고 하고 다. 따라서 1칸은 8.4척방, 즉 면적 64평방척에 해당하고, 1평7합8작이다. 또 홍살문이란 궁전, 관아, 능, 묘 등의 전방에 세워진 붉은 칠을 한 문으로 새집 모양으로 상부에 가로로 걸친 2개의 옆으로 걸친 나무에는 십수 개의 화살대를 세운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옥사는 남옥, 여옥을 합쳐 14칸으로 따라서 수용면적은 불과 25평에 지나지 아니할 정도로 협소하였다. 또한 모양은 둥근 형태였는지 여부는 판명되지 아니하지만 문에 옥문과 대문이 있었고, 대문에는 표식이 마련된 관청의 문 즉 정문이지만, 옥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내에서 소위 행형 구역과 비행형 구역을 구별하는 담장이 있고 그 담장에 설치된 행형 구역으로 통하는 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면 옥사에 대해서는 다른 건물과 동떨어지게 하기 위해 이를 둘러싼 담장을 설치하고 있었다고 추측되는 동시에 그 담장은 틀림없이 원형이었던 것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왜냐하면 감옥을 둥근 형태로 한 것은 옛날부터 자연히 관례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육전조례(六典條例)[96]의 규정[97] 및 종로 감옥에는 개축 직전까지 둥근 담장을 설치한 것 등의 점에서 생각하면 이와 같이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형에는 2종류가 있고 그 하나는 감옥 전체의 바깥을 원형으로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옥의 구내에 다시 감방 구역 또는 행형 구역을 구획하기 위해 안쪽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안쪽 담장만을 둥근형태로 한 것이다. 그리고 전옥서는 후자에 속하는 것이었다.

96) (역자주) 육전조례(六典條例) 1867년 육조 각 관아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행정법규와 사례를 편집한 법제서

97) 즉 남옥, 여옥은 동서로 나누어 설치하고, 그것을 둘러싼 환(圜)은 높은 담장으로 한는, 옥사설비상 준칙적 규정

전옥서는 처음 종로 부근인 서린방(瑞麟坊)에 설치되어 그 이후 수백 년의 오랫동안 위치 변경을 시행한 적도 없이 그대로 근세에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세종왕이 반포한 안옥도 등에 따라 다소의 증감과 개수는 있었지만 대체로 옛날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여 온 것이었다.[98] 그것이 조선시대 말엽에 이르러 서정개혁을 실시하였을 때 옥사와 부속건물만은 근본적으로 개축되었으며 그 때문에 거의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릴 정도로 일변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개축 이전의 옥사는 어떠하였을까라고 하는 데, 구조는 보통 가옥과 거의 같은 모양이었으나 설비의 만듦에 이르러서는 매우 협소하였고 또 상판도 깔려있지 아니할 정도로 거친 것으로 매우 비위생적인 것 같았다. 또 그 위치도 지형이 밑이 낮았으며 뒤쪽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고 홍수 시에는 침수의 불행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이와 같아서 역대 국왕은 옥사 개수를 명하는 영을 내리기에 이른 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세종왕 때 안옥도를 반포하여 안옥의 건축 표준을 제시한 것과 같이 1519년(중종 14년)에 형조판서 김정(金淨)[99]을 불러 묻기를 '요즘들어 죄수가 사망하는 일이 아주 많다고 하니 내가 몹시 측은하게 여긴다. 무슨 까닭으로 여기에 이르렀는가.'라고 하자 김정이 이에 답하여 아뢰기를 '영어(囹圄)가 좁아서 공기가 막히고 통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이에 증설(增設)하여 넓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자도 있으나, 신은 사구(司寇)[100]의 직에 있어 이상적인 형정을 이루지 못하고 옥을 증설하기를 청한다면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사방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여 그래도 왕은 듣지 아니하고 명하여 옥사의 증축을 실시하도록 하였다고 것과 같이, 1707년(숙종 33년)에 우의정 이이명(李頤命)[101]은 '전옥(典獄)은 지세가 낮아서 홍수 때 죄수가 습한 곳에 거처하게 되어 병이 생김을 피할 수 없어서 예전부터 판자를 깔아놓은 여러칸 외에 만약 선공감(繕工監)[102]에 있는 깔판자 4, 50입(立)을 인수받는다면 모두 깔 수 있으니 정성을 다해 깔아야 하고, 이는 휼수의 길로 공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각 아문에도 명하여 시행하도록 함이 어떠할지요.'라고 한 것에 대해 왕은 즉시 윤허를 내린 것과 같은 것은 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존속해 온 전옥서도 청일전쟁 후 조선이 독립하기에 이른 무렵에 개축되어 완전히 옛 모습조차 존재하지 않기에 이르렀으나 개축 직전 전옥서 설비의 모양이 당시 이곳의 서리(書吏)로 근무하고 있었던 김태석(金泰錫)[103]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그때 그가 그려서 보여준 바에 따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구 전옥서〉

즉 구내에 다시 둥근 담장을 설치하였고 그 내부에는 옥사만을 두었으며, 청사 등과 같은 건물은 모두 둥근 담장 밖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리고 당해 그림에 남옥만이 그려져 있고 여옥(女獄)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약도(略圖)이기 때문에 그리면서 빠뜨려진 것에 연유한 것으로, 남녀 양옥(兩獄)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틀림없던 것 같다. 또 옥사에는 겨울 거처[104]와 여름 거처[105]의 설비를 두었고, 또한 바깥쪽 담과 안쪽 둥근 담과 이중 담장(圍障)으로 하고, 또한 여러 개의 출입문(墻門)을 설치하여 수용구역을 엄중하게 분계 폐쇄하였으며 옥사에 가

98) 다만, 청사의 동목(桐木)에 '동치(同治)'라고 하는 청나라 연호로 동상(棟上)을 한 연월일을 기재한 것은 최근 당해 감옥을 헐 때에 그 당시에 신축하였던 것 같다.

99) (역자주) 김정(金淨) 조선 전기 학자로 이조정랑, 순창군수,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100) (역자주) 사구(司寇) 주대(周代)의 법을 맡은 사람으로 조선조의 형조판서가 이에 상응함

101) (역자주) 이이명(李頤命 1658. 2. 2.~ 1722. 6. 13.) 조선 후기의 왕족 출신 문신·정치인·학자로 노론 4대신의 한사람이다.

102) (역자주) 선공감(繕工監) 고려·조선시대 토목과 영선(營繕)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서

103) 1934년 87세로 서거하였다.

104) 온돌식 감방

105) 판자식 감방

까이 압뢰(押牢)숙직소[106]의 설비를 두었다. 감방은 대혼거식이었다. 그리고 각 방에는 육전조례에 따라 빙지목(憑支木)[107]을 설치하고, 바닥에는 판자를 깔았다. 또 판자문[108]을 설치하고 큰 자물쇠를 채우고, 판자문에는 물과 불, 음식, 더위에 숲의 공기가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 판자벽에 구멍(穴)을 내어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옥사의 구조를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오랫동안 몇 차례의 변천을 거쳐 점차 여기에 이른 것인 것은 논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금부옥은 의금부 구내에 병설되어 있었다. 의금부는 후년의 상소재판소가 된 평리원(平理院)[109] 건물이 그것으로 오늘날 종로경찰서의 위치가 그 부지였다. 의금부 및 옥사의 배치는 대체로 아래 겨냥도와 같았다.

〈의금부 및 금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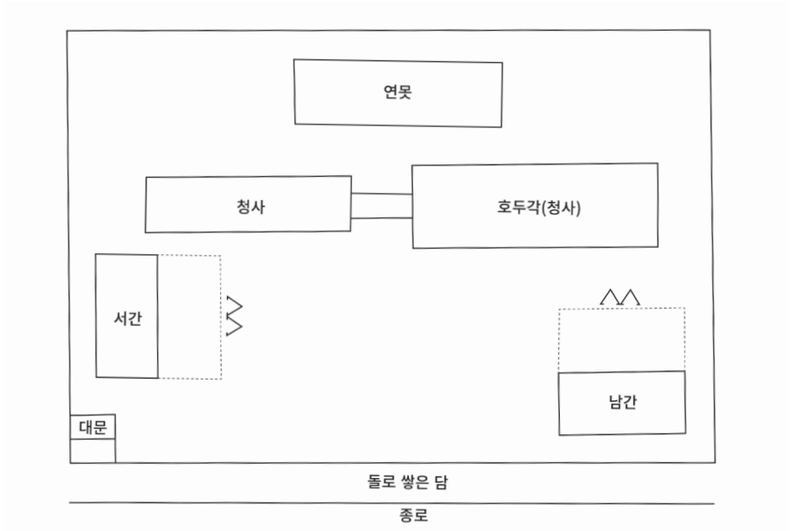

즉 옥사로는 남간(南間)[110]과 서간(西間)이 2동을 설치하고 외부로부터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각 간의 전면에는 돌로 쌓은 담을 만들고 그 내부를 정원으로 하였다. 또 옥사는 온돌식으로 사방의 안쪽은 판자벽, 외측은 흙벽으로 하고 전면에만 높은 창을 붙이고,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남, 서의 양 감방의 용적은 확실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매우 비좁았던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1701년(숙종 27년) 5월 하순 교문 가운데 '금오(金吾)[111]의 죄수가 80여 명으로 많아서 영어(囹圄)가 비좁아 한데서 거처하는 자가 많게는 1년, 2년에 이르러 기한이 없고, 우울(幽欝)한 기운이 위로 하늘의 화기(和氣)를 범하여 재앙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환궁하던 길에 금오문(金吾門) 밖을 지날 때 친히 출두하여 죄수를 걱정하여 막힌 것을 트게하여 화합으로 이끄는 땅으로 하고자 본원으로 거행하도록 하고, 위 사단(社壇)에 나아갔다가 의금부 호두각(虎頭閣)에 들러 친문하고 (중략) 중한 자는 그대로 가두고 가벼운 자는 원배(遠配)하거나 혹은 도배(徒配)하여 옥으로부터 나가는 자가 45인이었다. 등등'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보더라도 설비가 협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도청옥은 좌우 양옥 모두 각 포도청이 구내에 병설되어 있었고 좌포도청은 종로의 동쪽방향 파자교(把子橋) 동북[112]에 있었고, 우포도청은 혜정교(惠政橋)[113]에 있었다. 그리고 좌옥의 설비는 대체로 아래 그림과 같았던 것 같다.

〈좌포도청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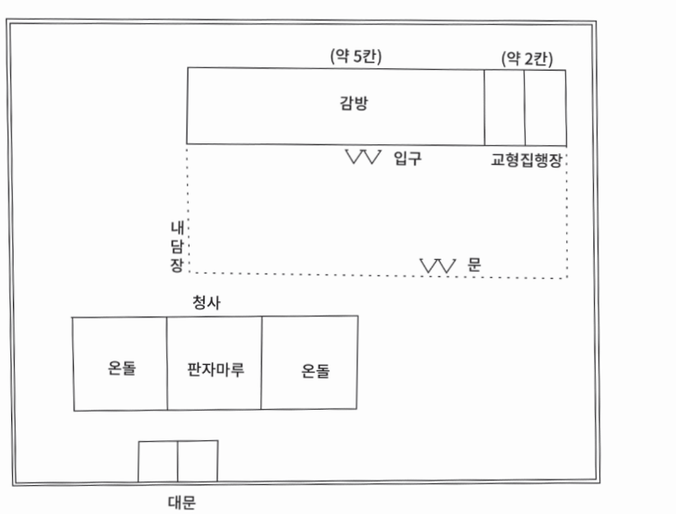

106) 간수 거처
107) 방 밖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설비로 견잔(堅棧)과 같은 것이다. (역자주) 빙지목(憑支木) 말목
108) 출입구의 문이다.
109) (역자주) 평리원(平理院) 1899년 5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존치되었던 최고법원
110) 간(間)이란 감방이다.
111) 의금부
112) 대륙극장 인근의 종로소방서가 있는 장소
113) 광화문우편국이 있는 장소

〈좌포도청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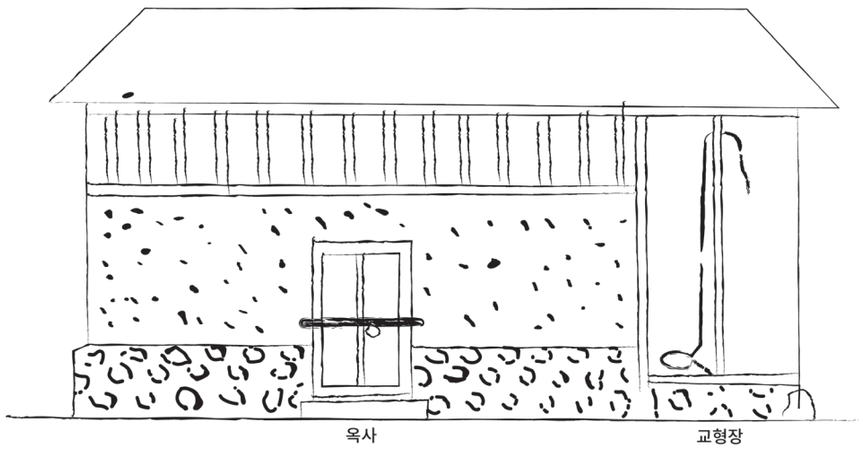

옥사로는 다섯 칸 정도 면적의 감방과 이에 인접하여 교형(絞刑)집행장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우옥(右獄)에 대해서는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원형의 돌담벽이었다고 하는 사람과 좌옥(左獄)과 같이 사각형의 돌담벽이었다고 하는 사람의 두 가지 설이 있다. 과연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지금까지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옥사에 대해서는 전부 판자 바닥이었고, 벽 안쪽은 사면은 판자벽, 바깥쪽은 흙벽이었다. 또한 앞면에는 높은 창을 설치하고, 옥문은 판자문으로 하였으며 이를 닫는 횡목(橫木)을 끼우고 그 위에 자물쇠를 채웠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대체로 좌옥(左獄)과 같은 구조였던 것 같다. 프랑스 선교사 리델(Felix Clair Ridel)[114]의 『경성유수기(京城幽囚記)』에 따르면 교형장(絞刑場)도 역시 동일한 구조로 감방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으며, 이점까지 좌옥(左獄)과 유사하였다. 또한 위 유수기 중에 우옥(右獄)에서 독거방으로부터 혼거방으로 옮겨졌다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이 옥의 감방에는 독거방과 혼거방의 두 종류가 있었던 것같으며 이 점만은 좌옥(左獄)과 달랐던 것같다. 또 감방 구조에 관해서는 작은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밤이 되면 닫혀졌으며,

114) (역자주) 펠릭스 클레르 리델(Felix Clair Ridel.1830~1884) 파리 외방전교회(外邦傳敎會) 소속으로 1861년(철종 12) 조선에 입국하여 베르뇌 주교 이하 11명의 신부와 함께 천주교 선교에 힘썼다. 1866년 정월 들어서부터 대원군이 병인사옥(丙寅邪獄)을 일으켜 9명의 프랑스 신부와 8,000여 명의 조선인 신도를 죽게 하자, 박해를 피해 조선인 신도 11명과 함께 5월 8일 황해를 건너 중국으로 피신하였다. 1870년 6월 조선 교구 제6대 교구장에 임명되었으며 1877년 2명의 신부와 함께 입국했다가 체포되었다. 그 뒤 일본으로 건너가 요코하마(橫浜)에서 『한불문전(韓佛文典)』의 편찬을 감수했으며, 『서울에서의 옥중기』를 남겼다.

또한 격자(格子)가 딸린 높은 창이 있어서 바람도 달그림자도 통과하였고, 견고한 벽에는 환목(丸木)[115]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고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좌옥(左獄)의 옥사와 같았던 것 같다.

서소문옥(西小門獄)은 일시적인 원인으로 갑자기 죄수가 증가했을 때 임시수용시설로 예전 나라의 창고였던 건물로 편의상 이에 충당한 것이지만, 나중에 이것을 개축하여 반영구적 설비를 하고 서소문옥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서소문 내[116]에 있었다. 당해 감옥은 상당히 큰 규모였다. 즉 남감(男監)과 여감(女監)을 구별하였고, 남감(男監)은 21실이 있었으며 1실의 넓이는 약 3간(間)으로 20인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넉넉하게 400인 이상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은 데다가 목욕탕의 설비까지도 있었다. 그리고 건물의 종류와 배치 등은 대략 아래 그림의 겨냥도과 같았다.

〈서소문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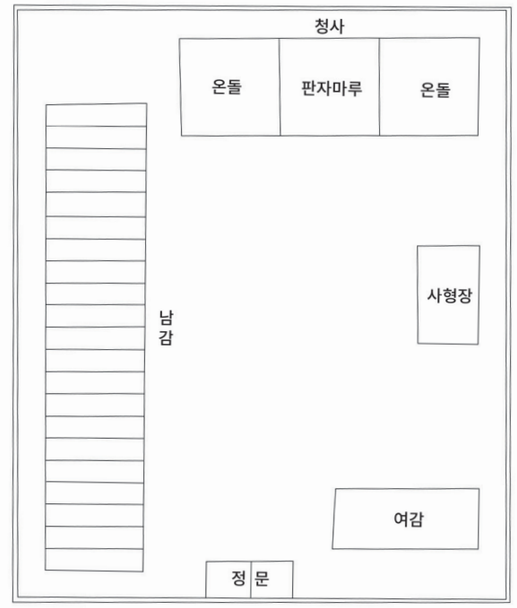

115) (역자주) 환목(丸木) 통나무
116) 현 법무국 및 내무국장 관사에 존재하였다.

그리고 구조는 포도청옥의 구조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다만, 다른 점은 옥사의 전면에 돌로 쌓은 담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두지 아니한 것이다. 그 때문에 감옥의 정문을 들어가면 옥사 내에 수용되어 있는 자를 목격할 수 있었고, 따라서 외부와의 교통의 격리는 매우 불충분하였다고 한다.

이어서 공주에 남아있는 원형옥은 군옥(郡獄)이라 칭하고 군수의 관리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규모가 작은 것이었다. 이 원형옥은 인가와 멀리 떨어진 공주읍 외의 논과 들의 한가운데 위치하였고 아래와 같이 직경은 15칸 정도, 외벽의 두께는 3척 정도, 높이는 1장 정도로 율석(栗石)[117]으로 쌓아올리고 상단은 기와지붕으로 한 이어진 담이었고, 하나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문 앞에는 간수소를 두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옥사는 매우 거칠게 건축되었으나 근년에 개축된 것 같고, 예전의 구조에는 완전히 그 예를 볼 수 없는 투통(透通)[118]하는 견잔식(堅棧式)[119]으로 만들어졌다. 방은 2실로 10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원형옥은 1914년 1월 근대식 공주감옥이 건축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그 당시 공주 감옥의 분금장(分禁場)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재방자는 2,30명 정도 있었고 주간에만 활짝 열어두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약 10정 정도 떨어진 읍내에 있는 본감(本監)으로부터 파견된 1인의 간수가 담 밖에서 보초를 서서 계호하고 있었다.

〈공주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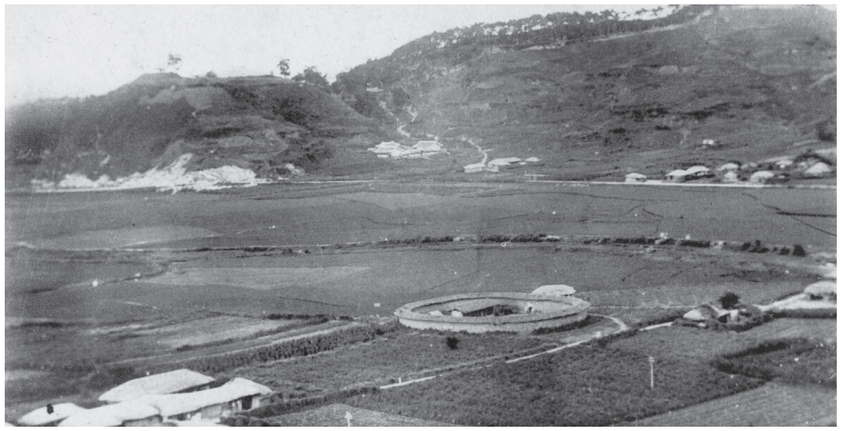

117) (역자주) 율석(栗石) 도로, 석축 따위의 기초 공사나 지반을 굳히는 데 쓰려고 자갈보다 약간 굵게 깨뜨린 돌
118) (역자주) 투통(透通) 속이 훤히 보임
119) (역자주) 견잔식(堅棧式) 단단한 판자식

감옥 설비는 수도의 전옥서, 금부옥, 포도청옥만은 불완전하지만 구금기관에 해당하는 형체를 구비하고 있었지만 그밖의 직수의 각 관아가 가지고 있는 구류간(감방)과 지방 수령이 관리하는 옥과 같은 곳은 거의 하나의 옥사로 하여 특별한 건축양식에 의한 것은 아니고 단지 인간을 감금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곳간으로도 모자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실제로 융희(隆熙)[120]의 새로운 정치의 실시 전까지 경성내 여러곳에 잔존한 폐해(廢廨)된 2, 3곳에 대해 그 구내의 한 구석에 옛날의 구류간이었다고 불리는 곳의 퇴폐(頹廢)되어 있는 구 옥사의 유적을 시찰하였다. 많은 곳이 채광, 통풍이 불충분한 음참(陰慘)한 낮고 작은 집으로 직감적으로 이것은 연탄보관실보다도 심하다고 생각되었던 적이 있었다. 다만 앞에 기술한 공주의 원형옥 하나가 있었을 뿐이었다.

120) (역자주) 융희(隆熙) 1907~1910년

한국형 중간 처우의 성과와 과제: 출소자 재복역률을 중심으로

최소연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교정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중간 처우 현황
Ⅲ. 재복역률을 통해 본 한국형 중간 처우의 성과와 과제
Ⅳ. 마치며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형법 제67조~제71조는 형벌의 종류와 집행 방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정기관에서는 형사사법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형벌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형법상 형벌의 정의는 기술적인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반면, 이념상 형벌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떻게 집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은 그간 형사정책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달리 정의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교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금 확보를 통한 사회 방위를 넘어 수형자가 출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데 있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및 「유럽교정시설규칙」에서 자유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금을 통한 응보주의 실현을 넘어 "그들이 석방된 후에 법을 지키면서 자활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고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불특정 상대에 대한 소위 '묻지 마 범죄' 또는 '이상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범죄 행위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그 이외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견 평범해 보이는 이웃이 어느 한순간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면 출소 후 안정적 사회 복귀를 통한 수형자의 재범 방지라는 교정의 목표 달성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출소자의 재범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국가의 범죄억제 및 형 집행에 관한 여러 형태의 비용을 초래한다.

결국 현재 교정기관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처우는 형기중 수형자에 대한 충실한 사회 복귀 준비 - 출소 후 재범 방지 - 사회 안전 확보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함이고, 이 과정에서 시설 내 처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사회적 처우[1]와 중간 처우[2]를 실시하고 있다.

교정본부는 지난 2009년 안양교도소 소망의 집을 시작으로 약 15년 동안 중간 처우를 실시해왔다. 아래에서는 소망의 집과 희망센터 출소자 재복역률을 통해 그간 중간 처우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형집행법 제77조(귀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사회적 처우)
2) 형집행법 제57조 4항(중간 처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중간 처우), 제117조(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Ⅱ. 우리나라 중간 처우 현황

1. 개 요

중간 처우란 형집행법 제57조 4항에 의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를 앞둔 수형자 중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지역사회 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처우를 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안양교도소 소망의 집 개관을 시작으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사회복귀지원지침)」(법무부예규 제1336호)에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내 처우에 기반한 중간 처우인 '사회적응훈련원' 및 '소망의 집'과 사회 내 처우에 기반한 '희망센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사회적응훈련원 : 중간 처우를 전담하는 독립된 교정시설(천안개방교도소)
- 소망의 집 : 교정시설 구외에 설치되어 중간 처우를 실시하는 전담시설 (안양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춘천교도소, 순천교도소, 창원교도소[3])
- 희망센터 : 지역사회 내에 설치되어 교도작업을 중심으로 중간 처우를 제공하는 전담시설(밀양구치소, 천안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참고로 형집행법령 및 관련 지침상 중간 처우, 사회적 처우, 개방 처우, 자치 처우는 개념상 엄격히 서로 배척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관점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리 사용된다.

형집행법령상 사회적 처우는 중간 처우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분류처우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1323호) 제54조의 자치 처우, 개방 처우는 수용자 처우 등급 중 개별 처우급의 구분기준이다. 실무상 개방 처우는 통상 학계에서 정의하는 협의의 개방 처우에 가깝다. 이 관점에서는 협의의 개방 처우에 형 집행법령상 귀휴, 외부 통근, 가족 만남의 시간, 사회 견학·사회봉사 등의 사회적 처우와 중간 처우까지 더하여 광의의 개방 처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계에서는 개방 처우를 시설 측면과 운영 측면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귀 지원 지침상 사회적응훈련원, 소망의 집, 희망센터는 시설 유형과 계호 정도에 따른 시설 측면의 구분이고, 귀휴 및 각종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외부 통근 등 사회적 처우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른 운용 측면으로 구분한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중간 처우는 이처럼 관리 목적에 따라, 또는 국가별 법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명칭이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나 기존의 폐쇄적 처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특히 외국의 사례를 검토할 때, 문언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그 본질적 내용을 살펴야 할 것이다.

2. 중간 처우 시설 유형별 대상자 선정 요건 및 처우

2024. 2. 8. 「형집행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72호) 제93조를 개정하여 중간 처우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였고, 이에 따라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1193호) 관련 규정이 개정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중간 처우 대상자 선정 기준(개정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3조)

구 분	기 존	개 정
소망의 집	① 형기 3년 이상 ② 범죄 횟수 2회 이하 ③ 중간 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① 형기 2년 이상 ② 범죄 횟수 3회 이하 ③ 중간 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4]
희망센터	① 형기 3년 이상 ② 범죄 횟수 2회 이하 ③ 중간 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9개월 미만	① 형기 2년 이상 ② 범죄 횟수 1회 이하 ③ 중간 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소망의 집과 희망센터에 입소하면 제1단계(시설 적응 단계)는 입소 2주 이내, 제2단계(사회 적응 단계)는 잔 형기 70~80%, 제3단계(사회복귀 준비 단계)는 잔 형기 20~30%로 구분하여 총 3단계로 처우를 달리한다.

소망의 집과 희망센터는 주말 귀휴 등 사회적 처우는 단계별로 유사하나 희망센터는 기업체 내 생활관에서 자율 출퇴근하며 개인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3) 시설 이전 관계로 현재는 미운영 중

4) 가석방 예정일까지의 기간 : 여성 소망의 집 2년 6개월 / 남성 소망의 집 1년 6개월 미만

〈표 2〉 중간 처우 대상자 선정 기준(개정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3조)

구 분	귀휴	사회견학·외부봉사	외부 가족 만남의 시간	컴퓨터(인터넷)	공중전화	스마트폰	체크카드 통장개설
소망의 집	○	○	×	○	○	×	×
희망센터	○	○	×	○	×	○	○

3. 시설 전경

◎ 청주여(교) 소망의 집

시설 전경

휴게실

식당

생활실

교육실

운동장

근무자실

컴퓨터실

샤워실

◎ 희망센터[5]

구 분	시설 전경	생활실	휴게실
밀양희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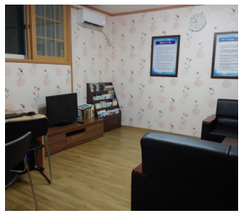
아산희망센터			
평택희망센터			

Ⅲ. 재복역률을 통해 본 한국형 중간 처우의 성과와 과제

1. 개 요

미국 국립교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에 따르면 재범률은 전통적으로 교정 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로 쓰여왔으나 측정하기 매우 어렵고 명백한 한계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론상 정량적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조사, 통제된 실험 또는 기타 학계에서 통용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량적 연구가 가능하려면 표본 규모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있거나, 혹은 대상을 일정한 기준으로 범주화하여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까지 소망의 집 출소 인원은 2009년 이후 총 747명, 희망센

5) [참고 1] 전국 희망센터 현황

터 출소 인원은 2013년 이후 총 282명으로 2013년 이후 총 출소 인원 534,270명 대비 약 0.2%에 불과하므로 정성적 연구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는 전담 직원이 상시로 상담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심층 인터뷰[6], 관찰, 사례 관리, 추적 조사 등 다양한 정성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출소 전후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 재복역률의 정의

형사사법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자체 통계를 관리한다. 「범죄통계」(경찰청), 「범죄분석」(대검찰청), 「교정통계연보」(법무부 교정본부) 등이 그것이다. 통계 목록을 보면 기관별로 재범률 또는 재복역률의 용어 정의가 다르며, 계산 산식도 서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범죄통계와 범죄분석에서는 재범률을 정의할 때 재범 종류를 동종재범 - 이종재범으로 구분하고 기간도 1개월 이내~3년 초과 범위에서 총 7개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교정통계연보에서는 재복역률을 정의할 때 재범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대신 출소사유별, 성별, 범수, 나이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기간도 3년 이내의 단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산식이 상이한 이유는 각 기관의 비전과 목표를 가능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범죄자 인구 통계적 특성을 기준으로 산정 방식을 정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다른 기관은 별론으로 하고 법무부의 경우 현재는 산식 상으로 재범률과 재복역률은 같다고 볼 수 있다.
법무연감(법무연수원)은 재범률을 3년 이내 재복역률이라고 정의하고, 교정통계연보(교정본부) 역시 재복역률을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자로서, 형기종료·가석방·사면·감호 기간 종료·가출소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중간 처우자 재복역률 현황

〈표 3〉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출소사유별 재복역 인원 및 재복역률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출소 사유별 재복역률은 형기종료자(28.1% ~ 33%), 가석방자(6% ~ 8.1%) 순이며, 전체적으로는 21.4% ~ 26.6% 범위를 보인다.

6) [참고 2] 밀양희망센터 출소자 수기

〈표 3〉 출소사유별 재복역 인원 현황(2014년~2022년) (단위 : 명)

조사 연도 (출소 연도)	출소 사유	계	형기 종료	가석방
2014 (2010)	출소 인원	25,066	16,956	8,082
	재복역 인원	5,547(22.1%)	4,895(28.9%)	651(8.1%)
2015 (2011)	출소 인원	23,045	15,895	7,129
	재복역 인원	4,936 (21.4%)	4,470 (28.1%)	458(6.4%)
2016 (2012)	출소 인원	22,028	15,179	6,500
	재복역 인원	5,465(24.8%)	4,958(32.7%)	482(7.4%)
2017 (2013)	출소 인원	22,121	15,889	6,201
	재복역 인원	5,471(24.7%)	5,057(31.8%)	406(6.5%)
2018 (2014)	출소 인원	22,484	16,799	5,394
	재복역 인원	5,780(25.7%)	5,389(32.1%)	363(6.7%)
2019 (2015)	출소 인원	24,356	18,269	5,507
	재복역 인원	6,486(26.6%)	6,024(33.0%)	404(7.3%)
2020 (2016)	출소 인원	27,917	20,229	7,157
	재복역 인원	7,039(25.2%)	6,495(32.1%)	489(6.8%)
2021 (2017)	출소 인원	30,702	22,062	8,275
	재복역 인원	7,551(24.6%)	7,004(31.7%)	495(6.0%)
2022 (2018)	출소 인원	29,469	20,740	8,693
	재복역 인원	7,004(23.8%)	6,362(30.7%)	630(7.3)

중간 처우자 재복역률은 3년 이하와 3년 초과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소망의 집은 2009년 이후 출소자 중 3년 이하 재복역률 평균은 4.3%로 3년 초과 재복역률 평균 4.7%와 0.4% 차이를 보인다.

〈표 4〉 연도별 재복역률(소망의 집)

출소 연도	합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출소 인원 (명)	747	26	89	79	53	61	45	45	49	53	48	51	24	54	50	20
3년 이하 재복역(명)	32	1	3	6	5	4	4	3	2	1	1	2	0	0	0	0
재복역률	4.3%	3.8%	3.4%	7.6%	9.4%	6.6%	8.9%	6.7%	4.1%	1.9%	2.1%	3.9%	-	-	-	-
3년 초과 재복역(명)	35	3	8	8	3	5	1	1	2	2	1	1	0	-	-	-
재복역률	4.7%	11.5%	9.0%	10.1%	5.7%	8.2%	2.2%	2.2%	4.1%	3.8%	2.1%	2.0%	-	-	-	-

〈그림 1〉출소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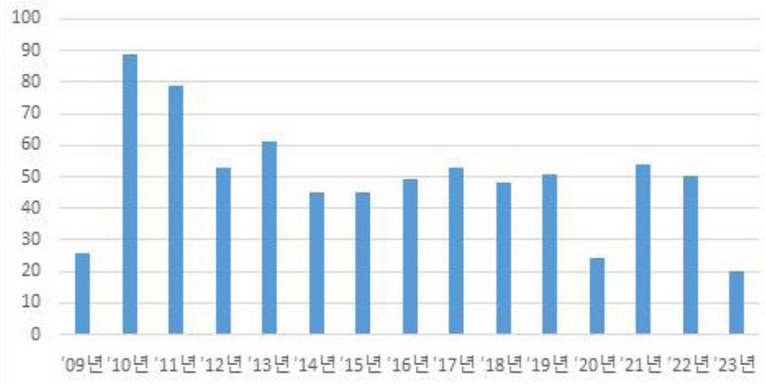

〈그림 2〉연도별 재복역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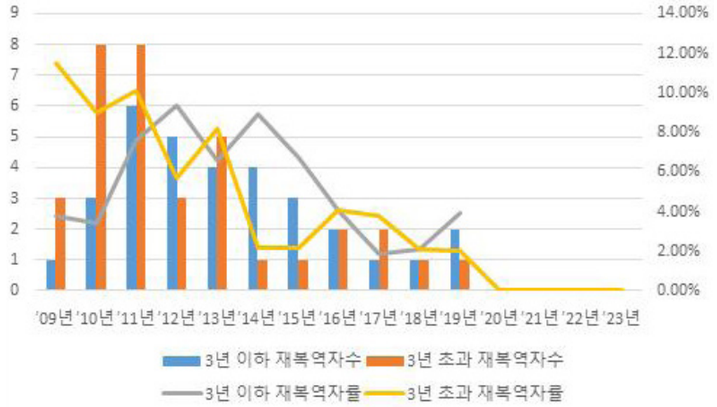

희망센터는 2013년 이후 출소자 중 3년 이하 재복역률 평균은 0.7%로 3년 초과 재복역률 평균 1.8%와 1.1% 차이를 보인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중간 처우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이 0.7% ~ 4.3%로 일반 형기 종료 출소자와 비교하여 약 28%가량 낮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사항이다. 또한, 미국의 재복역률이 37%(3년 이내), 70%(5년 이내, 2019년 기준)인 것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치이다.

미국의 재범률이 유럽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보다 높은 원인에 대한 연구[7]에 따르면, 가장 주요 원인으로 4~7배 높은 구속률을 들고 있고 이외에도 소년수 처분 기준의 엄격성과 소위 '닉슨의 마약과의 전쟁', 양형 기준이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어서 구속률과 재범률이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바로 도출할 것이 아니라 수형자 처우 방향에 관한 본질적인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응보주의에 기반하는 반면, 유럽은 수형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

즉, 유럽은 수형자들을 범죄자보다는 인간 그 자체로 보면서 시설 내에서도 최대한 "사회 밖"의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사회복귀 중심적 처우'를 시행하고 있고, 이것이 재범률이 낮은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노르웨이는 재범률이 20%(5년 이내, 2019년 기준)인데,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는 달리 형사 정책상 교정의 역량을 수형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집중하며, 더 나아가 교정시설 내 수형자 처우 향상과 더불어 자국의 전체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수형자 사회복귀에 적합하도록 구조화시키기 때문에 재범률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한다.

〈표 5〉 연도별 재복역률(소망의 집)

출소 연도	합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출소 인원	282	4	18	19	18	41	40	34	31	44	25	8
3년 이하 재복역(명)	2	0	0	0	0	1	0	0	0	1	0	0
재복역률	0.7%	-	-	-	-	2.4%	-	-	-	2.3%	-	-
3년 초과 재복역(명)	5	0	1	1	0	1	0	0	0	-	-	-
재복역률	1.8%	-	5.6%	5.3%	-	2.4%	5.0%	-	-	-	-	-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국가들의 법체계와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유럽과 유사한 교정 이념을 지향하고 있고, 법령에 중간 처우 시설을 두고 사회적응훈련원, 소망의 집,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희망센터는 현재 유일한 지역사회 내 처우로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중간 처우 시설이다.

물론 소망의 집과 희망센터는 다소 엄격한 요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중간 처우의 효과성을 재복역률이라는 한가지 요인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생각일 수 있다. 통계를 집계하는 시점이 다른 점도 하나의 한계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집과 희망센터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 희망센터 출소자 중 출소와 동시에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희망센터를 늘리고 중간 처우 대상자도 증원할 것임을 감안하면

7) Madalyn Hayden(2023), Recidivism Rates in the United States versus Europe, Western Michigan University

재범률과 교정 프로그램에 관한 미국의 연구[8] 중 수형자 개인의 변화에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 또는 사회 복귀에 관한 프로그램이 특정 기술훈련이나 교육 같은 실용적인 프로그램보다 효과성이 높다는 결론을 볼 때, 재복역률이 중간 처우의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 요인이라는 점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된다.

4. 향후 과제

사회복귀 지침에 따르면 중간 처우 운영기관은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보안과, 복지과 직원 적정명을 중간 처우 전담반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본부에서도 직업훈련과(협력업체 유치), 사회복귀과(대상자 교육, 처우), 분류심사과(대상자 지정 및 이송 신청), 교정기획과(기관 인원 조정), 보안과(대상자 이송) 등 여러 부서가 각 단계에서 관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원활한 중간 처우를 위해서는 운영기관 및 본부 공히 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력업체를 유치하는 것이다. 기업 경영 및 재정 안정성을 기본으로, 수형자 사회복귀라는 가치를 이해하고 기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을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부 직업훈련과는 2023. 12. 15. 법무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업무협약을 체결, 각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과 희망센터 유치 협의를 진행 중으로 머지않아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간 처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시설 운영을 담당할 교정기관이다. 시설과의 거리, 기관 규모와 같은 물리적 요건 못지않게 중간 처우 운영 경험, 담당 직원 및 부서장, 기관장의 의지와 같은 기관의 전반적인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본부 각 부서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개방 처우 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9]에서 제안된 내용 중 교정본부 내부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 즉 소망의 집 처우 확대, 희망센터 처우자 가석방 심사 탈락 시 본소 이송 문제 등은 그간 제도 개선을 통해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업연합회 등에서 중간 처우 협력업체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희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은 상대측에게 중간 처우의 비전과 목표를 이해시키고,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입법을 준비하는 등 장기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8) Christy A. Visher etc(2017), Evaluating the Long-Term Effects of Prisoner Reentry Services on Recidivism : What Types of Services Matter?, pages 136~165, Issue:1, Volume:34, Justice Quarterly

9) 권수진, 권창모, 오영근(2018),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8-AA-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아울러 중간 처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성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에 사회 시스템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일 것이다.

IV. 마치며

본 소고(小考)는 제한된 표본 수, 통계분석기법에 의하지 않은 직관적 서술과 같은 명백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복역률을 통해 중간 처우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그간 중간 처우의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와 제언이 있었으나 관련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올해 초 사회복귀 지원 지침이 개정되어 희망센터 취업 인원이 최대 50명까지 가능하며, 희망센터 신규 개관을 추진 중이므로 향후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는 경우 여기에 작업 종류, 작업 환경, 각종 처우, 외부인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포함하여 각각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법무연감(법무부)

2023 교정통계연보(법무부)

범죄분석(검찰청)

교도소연구소(2023), 재사회화를 위한 도전과 희망

이승호, 윤옥경, 금용명(2014),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II), 연구총서 14-CB-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권수진, 권창모, 오영근(2018), 개방처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8-AA-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권수진, 박성훈, 금용명, 라광현, 허 황(2023),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Ⅰ), 연구총서 23-B-1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일중(2011),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도서출판 해남

e-나라지표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https://www.data.go.kr/data/15015477/openapi.do)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

CCJS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https://www.kicj.re.kr/crimestats/portal/main/indexPage.do)

Matthew R. Durose, BJS Statistician(2017), Recidivism of State Prisoners(Collection Period 2012-2017),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s://bjs.ojp.gov/data-collection/recidivism-state-prisoners#0-0

Madalyn Hayden(2023), Recidivism Rates in the United States versus Europe, Western Michigan University

Christy A. Visher etc(2017), Evaluating the Long-Term Effects of Prisoner Reentry Services on Recidivism : What Types of Services Matter?, pages 136~165, Issue:1, Volume:34, Justice Quarterly

마약류 중독자의 바닥 경험 강도에 따른 변화 단계 차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류사범을 중심으로(하)

최경찬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 교위

목차

Ⅰ. 서론
Ⅱ. 연구과정
Ⅲ. 연구결과
Ⅳ. 논의 및 제언

Ⅲ. 연구결과

1. SOCRATES-D 척도의 요인분석

SOCRATES-D 척도를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요인이 추출되는지 확인하고 하위요인 점수의 패턴을 토대로 단계변화를 위한 군집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최대우도 분석과 직교회전을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진행했다. 특별히 요인수를 고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Miller와 Tonigan(199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3개의 요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요인별 해당 문항을 탐색한 결과, 신수경(2015), 김지윤 등(201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1번과 14번 문항은 '실천'요인에 더 가깝게 부하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인식'요인에 해당하는 부하량도 높으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 문항들이 실천적인 의미보다 변화에 대한 지각과 약물문제 인식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 같다는 이전 연구결과(신수경, 2015)에 따라 원척도와 동일하게 하위요인을 구분하였다.

<표 1> SOCRATES-D 척도의 요인분석(교정시설 수용자 표본)

문 항	성분		
	실천	인식	양가
18. 나는 약물을 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853	.157	.004
19. 이제는 정말 약물을 끊었으며,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한 치료에 열중하고 있다.	.845	.111	.042
9. 나는 이미 약물을 끊었으며, 지금은 약물을 다시 사용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793	-.062	-.004
4. 약물을 끊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 행동을 벌써 시작했다.	.771	.197	.020
5. 한때 나는 약물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단약을 실천하면서 약물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많이 변화하였다.	.729	.123	.070
13. 나는 약물을 끊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현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498	-.044	.024
8. 약물을 끊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천하고 있다.	.449	.025	.022
7. 나는 약물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024	.886	.169
15. 나에게 약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55	.822	.124
10. 나는 심각한 약물 문제를 갖고 있다.	-.002	.795	.293
17. 나는 약물 중독자이다.	-.131	.787	.303

12. 나의 약물 사용 행동은 많은 해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23	.653	.175
3. 약물 문제를 빨리 고치지 않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409	.580	.058
14. 예전의 약물 문제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한 도움을 받고 싶다.	.499	.468	.049
1. 나는 정말 약물 문제를 고치고 싶다.	.593	.453	.106
11. 내가 약물에 대한 조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	-.046	.511	.687
6. 나의 약물 행동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	.035	.113	.646
16. 내가 약물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	-.042	.386	.581
2. 나 자신이 약물중독자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다.	.145	.125	.541

주. SOCRATES-D=the 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 for Drug Dependents. 약물용 한국어판 변화준비도 단계 및 치료열망 척도.

2. 하위요인의 평균 및 수준

SOCRATES-D 척도의 하위요인에 따른 수감 중인 마약류사범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하위요인의 평균 점수를 환산하여 확인해본 결과, 전체적인 변화 동기 및 치료 열망의 정도는 중간 상에 해당되고, 인식은 중간 상, 양가감정은 중간 중, 실천은 높음 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알코올의존자를 대상으로 한 김지윤 등(2015)의 연구에서 인식(10), 양가감정(30), 실천(40)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모든 영역에서 마약류사범의 변화동기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SOCRATES-D 하위요인의 평균과 환산점수

구분	인원(N)	평균(SD)	환산점수(수준)
치료 열망 전체	206	62.93(15.4)	66(중간 상)
인식	206	27.61(8.3)	69(중간 상)
양가감정	206	10.53(3.9)	53(중간 중)
실천	206	24.80(8.3)	71(높음 하)

3. 주요 변인 간 상관

바닥 경험 강도와 변화단계와 치료 열망의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 바닥 경험 강도와 SOCRATES-D 척도의 전체 및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바닥 경험 강도는 변화단계 및 치료 열망 전체(r=.475), 실천(r=.352), 인식(r=.430), 양가감정(r=.208)과 유의한 관계성이 나타났다. SOCRATES-D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척도가 서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하위요인 중, 실천과 양가감정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r=.074).

〈표 3〉 바닥 경험 강도와 SOCRATES-D의 상관 행렬

변인	바닥 경험 강도	치료 열망 전체	실천	인식	양가감정
바닥 경험 강도	-	.475**	.352**	.430**	.208**
치료 열망 전체	.475**	-	.737**	.847**	.571**
실천	.352**	.737**	-	.329**	.074
인식	.430**	.847**	.329**	-	.515**
양가감정	.208**	.571**	.074	.515**	-

4. 군집분석을 통한 마약류사범의 변화단계 구분

군집분석을 위해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추천하는 2단계 절차를 통해 실시하였다(Aldenderfer & Blashfield, 1984; Hair & Black, 2000). 유사성 측정치로서 squared 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여 Ward(1963)의 위계적 군집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으며 프로파일의 상승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군집 내의 변량을 최소화, 군집 간 차이를 최대화하였다. Euclidean distance에 기초하여 가장 가까운 센트로이드에 사례를 할당하기 때문에(Schinka, 1994) 가장 해당 군집에 가장 적합하게 구성원을 분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K-menas 반복 분할 절차로 진행하였다.

SOCRATES 척도의 하위요인들의 점수 차이에 따른 변화단계는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이론적으로 4개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하위요인의 군집분석을 통해 4개 집단이 도출되었다. 각 하위집단의 표준화 점수의 평균 차이는 〈표 4〉, K-means 반복 분할 절차에 따른 군집 산포도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약물의 위험과 자신의 증상에 대한 인식이 낮고 양가감정 수준도 낮으며, 단약을 위한 실천을 하고 있지도 않아 전숙고단계로 명명하였다(N=22). 두 번째 집단은 양가감정이 상승하고 인식 수준도 전숙고단계보다 높았으나 행동실천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숙고단계로 명명하였다(N=48). 세 번째 집단은 부분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으나 양가감정이 상승하고 인식 수준도 높아져 있는 집단으로 준비 집단으로 명명하였다(N=56). 네 번째 집단은 인식 수준은 다소 낮아지고 양가감정은 해소되었으며 회복행동 실천은 가장 높은 집단으로 김지윤 등(2015)의 연구에서 나타난 실행 집단의 양상과 유사하며, 동일하게 실행 집단으로 명명하였다(N=80). 전숙고단계는 전체 표본중 10.7%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실행단계는 38.8%로 전체 변화단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4〉 SOCRATES-D 군집분석에 따른 집단의 특성

집단명	사례수	%	실천	인식	양가감정
전숙고단계	22	10.7	-1.269	-1.875	-1.319
숙고단계	48	23.3	-.916	-.007	.141
준비단계	56	27.2	.284	.721	.826
실행단계	80	38.8	.877	-.287	-.783

〈그림 1〉 SOCRATES-D 군집분석 결과 산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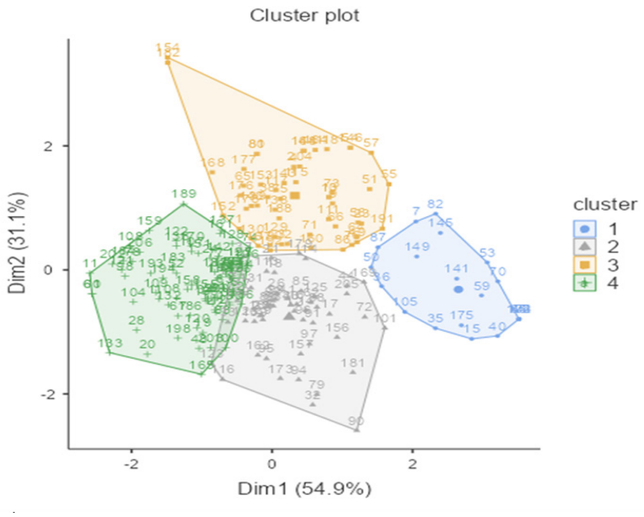

5. 변화단계에 따른 바닥 경험 강도의 차이

군집분석으로 도출한 4개 집단이 실제로 바닥 경험 강도의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산동질성검사에서 도출된 Levene 통계량은 2.394. 유의확률 .070으로 동질성은 확보되었다. 이후 분산분석 결과 F값이 11.472로 군집에 따른 바닥 경험 강도의 차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했다.

〈표 5〉 변화단계에 따른 바닥 경험 강도의 차이

구분	자유도(df)	제곱합(SS)	평균제곱(MS)	F	유의확률(P)
집단 간	3	2526.236	842.079	11.472	.001***
집단 내	202	14826.973	73.401		
전체	205	17353.209			

***p<.001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cheffe 사후검증 분석을 통해 각 군집간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전숙고단계는 평균 10.95, 숙고단계는 19.48, 준비단계는 22.90, 실행단계는 21.05로 전숙고단계가 가장 낮았으며 숙고단계, 실행단계, 준비단계 순으로 바닥 경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숙고단계집단은 다른 모든 세 단계 집단과 유의수준 p =.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 다음으로 숙고단계의 바닥 경험 강도가 19.48이었고, 실행단계는 21.05로 나타났으며, 준비단계의 바닥 경험 강도점수가 22.90으로 네 집단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숙고단계, 준비단계, 실행단계 간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집단 간 차이 사후검증

구분		바닥 경험 강도					
		N	M	SD	F	p	post-hoc
변화 단계	전숙고단계a	22	10.95	7.2	11.472	.001***	a<b=c=d
	숙고단계b	48	19.48	8.6			
	준비단계c	56	22.90	8.0			
	실행단계d	80	21.05	9.8			

***p<.001

사후검증을 통해 전체 집단 중 전숙고단계집단 만이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전숙고집단을 참조 범주로 정하여 변화단계(전숙고, 숙고, 준비, 실행)에 대해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 적합도는 χ2=38.06, p<.001로 나타나 종속변수와 투입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Pseudo R2은 .169(Cox 및 Snell), .182(Nagelkerke), .071(McFadden)으로 나타나 투입된 변수가 종속변수인 변화단계를 7.1%에서 18.2%

까지 설명했다. 전숙고단계 집단 대비 각 집단 가능성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 결과를 보면 숙고단계(B=.186, OR=1.204), 준비단계(B=.230, OR=1.258), 실행단계(B=.206, OR=1.229)로 바닥 경험 강도가 증가할수록 숙고단계가 될 가능성은 1.204배, 준비단계가 될 가능성은 1.258배, 실행단계가 될 가능성은 1.22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바닥 경험과 변화단계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β	SE	Wald χ2	p	OR	95% CI	
							Lower	Upper
변화단계	숙고단계	.186	.050	13.652	.000	1.204	1.091	1.328
	준비단계	.230	.050	21.215	.000	1.258	1.141	1.387
	실행단계	.206	.050	16.959	.000	1.229	1.114	1.356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금지된 물질을 사용한 결과 교정시설에 수감된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하여 SOCRATES-D척도의 하위요인의 특성에 따라 변화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바닥 경험 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색하였다. 세부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단계별 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사전과정으로 SOCRATES-D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이전 유사연구에서(김지윤 등. 2015; 신수경, 2015; Miller & Tonigan, 1996)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게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의 특성도 동일하여 위 연구들과 동일하게 '실천', '인식', '양가감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도출된 SOCRATES-D의 하위요인과 바닥 경험 강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SOCRATES-D는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가 바닥 경험 강도와 .208에서 .475에 이르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바닥 경험과 항복이 동기와 회복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전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김경진, 2020; Barnet, Kinsler, Trent, Joyner, & Clements, 2019; Orlowski, 2017). 보통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불일치는 절망적 경험이나, 낙담에 기반한 정서로 표현되는, 슬픔, 우울, 불쾌, 좌절 등을 야기하게 되고 이러한 불일치를 줄이려는 동기가 생성된다(Higgins, 1987). 이런 바닥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전과 다르게 판단하도록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며(이수정, 권준모, 이훈구, 1997), 바닥 경험이 클수록 자신의 기존의 불일치감이 크기에 바닥 경험이 부정적 정서의 양을 감소시키거나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의 동기를 활성화하게 된다는 점에서 동기 및 회복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경진, 2020).
셋째, 추출된 세 가지 요인점수를 표준화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총 4개의 변화단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전숙고단계'는 문제에 대한 인식도 낮고, 실천도 낮으며, 양가감정도 낮아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인식도가 낮고, 중독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혼란도 경험하지 않고 회복을 위한 실천도 하지 않는 집단으로 전체 표본의 10.7%를 차지했다. 각 단계별 비율은 실행단계 집단(38.8%)이 가장 높았고, 전숙고단계 집단(10.7%)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코올중독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전영민(2005)의 연구결과에서 전숙고단계가 10%대였다는 것과 실행단계 집단이 30%대라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전 연구의 표본이 자발적으로 입원한 치료 동기가 높은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자발적 수용자 집단의 변화단계 비율이 훨씬 더 낮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일 수 있다. 그러나 김지윤 등(2015)의 실천 점수보다 본 연구결과 점수가 2배 정도 높아 치료 열망 수준 역시 비수감자 집단에 비해 수용자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정시설에 장기간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는 일반인과 다양한 환경적, 개인적 영역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감 중인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에 정보 뿐만 아니라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공한다.
넷째, 구분된 변화단계 집단별로 바닥 경험 강도의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변화단계 집단 간의 바닥 경험 강도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1.472). 집단 간 차이를 세부적으로 파악

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숙고단계 집단의 바닥 경험 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다른 집단(숙고, 준비, 실행단계)은 바닥 경험 강도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전숙고단계 집단을 참조 범주로 설정하여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화가 전혀 시작되지 않은 전숙고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세 집단이 바닥 경험에 의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바닥 경험의 강도가 더 높은 변화 동기와 관계가 있음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이며, 자신이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약물로 인한 폐혜를 인정하게 되면 회복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강성례, 2017; 김정렬, 2008; Jainchill, Hawke, Leon, yagelka. 2000)와 같이 바닥 경험이 회복 행동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자조집단 방식의 중독 회복공동체를 대표하는 AA(Alcohoilcs Anonymous)나 NA(Narcotics Anonymous)에서 진행하는 12단계 프로그램 중 1단계에서 “나는 약물(알코올)에 무력하였으며 삶을 처리할 수 없음을 시인했다”(Alcoholics Anonymous World Services, 2001)라는 슬로건을 강조하는 것처럼 바닥 경험은 부정적 사건이지만 회복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에 정량적 근거를 보충한다는 의미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급증하고 있는 중독자와 마약류사범의 회복과 관련된 과정에 대해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Prochaska, Diclement, Norcross(1992)가 제시한 초이론적 모델은 중독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 변화의 개입과 이해를 위한 통합적 틀을 제공하고 중독 행동에서 변화과정을 5단계로 설명한다. 변화 동기와 행동 변화에 문제의식이 없다가(전숙고, precontemplation), 문제의식과 함께 변화에 대해 조금씩 생각하고(숙고, contemplation), 변화를 결심하며 계획하고 (준비, preparation), 변화를 행동(action)한다. 또한, 지속적 변화 유지(maintenance) 또는 재발(relapse)한다고 주장한다(Diclemente et al., 1991). 이와 같이 회복의 과정을 ‘각 단계에 따라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시적인 사건에 의한 급작스러운 변화나 각성이기보다는 단계적 과정’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김재환, 2019) 중독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치료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Prochaska 등(1992)이 제시한 5단계에서 유지단계를 제외한 전숙고단계, 숙고단계, 준비단계, 실행단계 4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그 비율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류 수용자의 치료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회복과 관련된 주요 변수로 단약동기 효능감, 인식, 회복 열망 등이 주된 연구 주제였지만 최근에는 재발율을 낮추고 장기적인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바닥 경험이나 항복 등의 변수도 거론되고 있다(김경진, 2020; Barnet, et al., 2019; Cunningham et al., 1994; Życińska, 2006). 특히 바닥 경험은 삶의 중대한 위기이자, 전환점이고 인식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McIntosh & Mckeganey, 2001) 중독 회복의 중요한 개념이지만 최근까지는 이 개념을 양적으로 측정하고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가 드물었다. 본 연구의 결과, 바닥 경험은 회복 동기와 관련된 모든 요인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회복 단계를 집단별로 구분해서 차이를 탐색한 결과에서도 본격적인 회복 행동이나, 동기, 인식 등이 없는 ‘전숙고단계’ 집단에서 바닥 경험 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중독 치료 영역에서 자주 언급되는 ‘바닥치기(Hitting Bottom)’ 개념은 “이제 변화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고통을 경험한 후에야 동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기화된 상태로 이동한다”(전영민, 2018)는 회복의 발달적 관점에서 바닥 경험이 변화의 시작 단계라는 기존 중독 전문가들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제한점들과 제언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본연구에서는 SORATES-D(약물용 변화준비도 단계 및 치료열망 척도) 하위척도 점수를 토대로 기존 연구의 분류 방식을 적용하여 각 마약류사범 수용자들의 변화단계를 구분하였다. 4개 집단을 도출하기 위해 군집분석이라는 절차를 사용하였으나, 실제로 SOCRATE-D는 ‘실천’, ‘인식’, ‘양가감정’이라는 세 가지 하위요인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Prochaska 등(1992)이 제시한 초이론적 모델에 의해 분류된 집단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위척도 점수의 양상에 따라 분류한 자료와 교차 검증하기 위한 다른 비교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변화단계 척도 중 URICA(University of

Rhode Island Change Assessment Scale)(Pantalon, Nich, Franckforter, & Carroll, 2002)는 중독자 변화단계를 전숙고단계, 숙고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로 결과가 나타나므로 집단 비교가 용이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를 병행 실시하거나 면담 자료 등을 추가하여 변화단계 구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독자의 바닥 경험 강도가 전숙고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낮았고 SOCRATES-D 전체 척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는 결과로 바닥 경험이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인과성을 일반화하거나 바닥 경험이 회복 과정의 선행 변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바닥 경험이 중독자의 회복 과정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다른 주요 변수와의 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표본은 마약류사범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특수한 대상이므로 결과를 일반 중독자 집단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향후 수용자 표본에 대한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회복에 관련된 주요 변인들과의 관계성과 경로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경진 (2020). 바닥 경험 정서, 도박폐해 인식 및 단도박 동기강도가 문제성도박자의 단도박 변화촉진활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성례 (2017). 치료공동체에 거주하는 남성 알코올의존자의 회복과정.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7(2), 267-276.

김정렬, (2008). 알코올의존 노숙인의 적응유연성, 성격장애 및 변화동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윤, 강지언, 임무영, 금명자. (2015). 변화동기단계에 따른 알콜 중독 심각도의 차이-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심리연구, 22(3), 429-440.

김재환. (2019). 메스암페타민 중독 남성의 회복 과정에 관한 생애사 연구: 양자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0(1), 43-81.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2022).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 서울: 대검찰청.

박주리, & 이주영. (2022). 상향비교가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 (FoMO)의 매개효과: 개방형 SNS 와 폐쇄형 SNS 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8(4), 289-315.

배임호, 이성규, 성혜연(2020). 치료감호 2호 처분의 치료효과 및 약물중독재활센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용역연구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처(2022). 하수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2021.4월~2022.5월) 결과,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석진, 도명애, & 이수진. (2019).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5(1), 1-22.

성경숙. (2021). 마약류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처우제도의 개선방안-미국의 약물치료법원 (Drug Treatment Court) 과 LEAD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51, 255-291.

송진희, 서종건, 권혜진, 김용석. (2017). 수감 중인 약물사용자의 약물재활교육 경험.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5(1): 5-35.

신성만, 김병진, 이도형, 박명준 (2015). 청소년용 인터넷 중독 변화동기 척도(SOCRATES-I)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4), 803-819.

이수정, 권준모, 이훈구 (1997). 정서의 자동처리기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997(1), 361-377.

전영민 (2005a). 알코올 의존자의 변화동기 평가: 변화단계척도(SOCRATES) 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207-223.

전영민. (2005b). 자발적으로 입원한 알코올 의존자의 변화동기 하위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311-326.

전영민. (2018). 도박중독 변화동기척도 (SOCRATES-G) 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2), 447-474.

전영민, 양수, 김경훈 (2012). 도박변화동기척도(KSOCRATES-G)의 요인구조. 2012년 한국중독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23-24, 5월 12일. 대전시: 충남대학교.

조민규, 김춘경. (2022). 대학생의 몰입상태, 도박중독 경향성, 자살위험성 간 구조적 관계: 트라우마 경험 수준에 따른 다집단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38(2), 311-335.

한국일보. (2022). "한국이 마약 '신흥시장'으로 여겨져.. '마약과의 전쟁' 시작해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0414500002600 에서 인출

■외국문헌

Alcoholics Anonymous World Services. 2001. Alcoholics Anonymous: The story of how many thousands of men and women have recovered from alcoholism, 4th ed, New York, NY: Author.

Aldenderfer, M. S., & Blashfidld, R. K. (1984). Cluster Analysis, Newbury Park, CA: Sage.

Barnet, J., Kinsler, R., Trent, A., Joyner, E., & Clements, A. (2019). Surrender to God Predicts Lower Levels of Substance Use Addiction. Digital Commons, East Tennessee State University.

Carey, S., Finigan, M. & Pukstas, K. (2008). Exploring the key components of drug courts: A comparative study of 18 adult drug courts on practices, outcomes and costs, Portland, OR: NPC Research.

Cunningham, J. A., Blomqvist, J., & Cordingley, J. (2007). Beliefs about drinking problems: Results from a general population telephone survey. Addictive Behaviors, 32(1), 166-169.

Dawson, S. A., Grant, B. F., Stinson, F. S., Chou, P. S., Huang, B., and Ruan, W. J. 2005. Recovery from DSM-IV alcohol dependent: United States, 2001-2002. Addiction, 100(3): 281-292.

Donovan, D. M., & Rogengren, D. B. (1999). Motivation for behavior change and treatment among substance abusers. In J. A. Tucker, D. M. Donovan, & G. A. Marlatt (Eds.). Changing Addictive behavior, bridging clinical and public health strategies, New York: Guilford Press.

DiClemente, C. C., & Prochaska, J. O. (1982). Self-change and therapy change of smoking behavior: A comparison of processes of change in cessation and maintenance. Addictive behaviors, 7(2), 133-142.

DiClemente, C. C., Prochaska, J. O., Fairhurst, S. K., Velicer, W. F., Velasquez, M. M., & Rossi, J. S. (1991). The process of smoking cessation: an analysis of precontemplation, contemplation, and preparation stages of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2), 295.

Evans, E., Longshore, D., Prendergast, M. & Urada, D. (2006). Evaluation of the substance abuse and crime prevention act: Client characteristics, treatment completion and re-offending three years after implementation,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3, 357-367.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Isenhart, C. E. (1994). Motivational subtypes in an inpatient sample of subtypes in and inpatient sample of substance abusers. Addictive Behaviors, 19(5), 463-475.

Jainchill, N., Hawke, J., De Leon, G., & yagelka J., (2000), Adolescents in Therapeutic Commnuties: One-Year Posttreatment Outcomes.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32(1): 81-94.

Kirouac, M., Frohe, T., & Witkiewitz, K. (2015). Toward the operationalization and examination of “hitting bottom” for problematic alcohol use: A literature review.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33(2), 312-327.

Klingemann, J. (2011). Lay and professional concepts of alcohol dependence in the process of recovery from addiction among treated and non-treated individualsin Poland: A qualitative study. Addiction Theory and Research, 19(3): 266-275.

Maisto, S. A., Chung, T. A., Cornelius, J. R., Martin, C. S. (2003). Factor structure of the SOCRATES in aclinical sample of adolescent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7, 98-107.

Marlatt, G. A., & Gordon, J. R. (1985). Relapse prevention. New York: Guilford Press.

McIntosh, J., & Mckeganey, N. (2001). Identity and Recovery from Dependent Drug Use: the addict’s perspective. Drugs: education, prevention and policy, 8(1), 47-59.

McConnaughy, E, A., DiClemente, C, C., Prochaska, J.O., & Velicer, W. F. (1989). Stages of change in psychotherapy: A follow-up report. Psychotherapy: Theary, nesearch and Practice, 26(4), 494-503.

McConnaughy, E. A., Prochaska, J. O., & Velicer, W. F. (1983). Stages of change in psychotherapy: Measurement and sample profile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 Practice, 20(3), 368-375.

McIntosh, J., & Mckeganey, N. (2001). Identity and Recovery from Dependent Drug Use: the addict’s perspective. Drugs: education, prevention and policy, 8(1), 47-59.

Miller, W. R., & Tonigan, J. S. (1997). Assessing drinkers' motivation for change: the 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 (SOCRATE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Miller, W. R., & Rollnick, S. (2002). Motivational interviewing: Preparing people for change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Orlowski, D. W. (2017). Exploring AA's Ideological Concept of" Hitting Bottom" as a Causal Mechanism(s) that Gives Rise to Self-Efficacy Sobriety, Doctoral dissertation, Northcentral University.

Pantalon, M. V., Nich, C,. Franckforter, T., & Carroll, K. M. (2002). The URICA as a measure of motivation to change among treatment-seeking individuals with concrurrent alcohol and cocaine problem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6(4), 299-307.

Prochaska, J. O., DiClemente, C. C., & Norcross, J. C. (1992). In search of the structure of change. In Self change (pp. 87-114). Springer, New York, NY.

Schinka, J. A. (1995). PAI Profiles in Alcohol Dependent Pati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5, 35-51.

Ward, J. (1963). Hierachical grouping to patimize an objective fun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8, 236-244.

Życińska, J. (2006). Cognitive components and health-related behaviors as predictors in the process of smoking cessation. Polish Psychological Bulletin.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헤어진 파트너 대상 스토킹을 중심으로

김성희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국문요약

본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의 특성과 헤어진 파트너를 상대로 살해 전 나타난 스토킹의 위험성을 탐색하여 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목적을 두었다. 이에 친밀한 파트너 살인에 대한 문헌고찰과 국내에서 2017년~2019년 발생한 1,333건의 살인사건 중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한 형사 1심 판결문 336건을 바탕으로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 중 심각한 위험 요소인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을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정신질환, 알코올 남용, 범행 발생 장소, 흉기 종류 및 살해 방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친밀한 파트너 살인은 전체 살인범죄의 33.4%를 차지하였고,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살해 전 스토킹이 있었던 범죄는 37.5%로 확인되었다. 범행 특성은,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 재범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남성이 스토킹이 없었을 경우는 배우자를, 스토킹이 있었던 경우는 전 연인을 가장 많이 살해한 특징을 보였다. 범행 동기는 대부분 정신질환이 없는 가해자들이 음주 상태에서 성적 질투로 인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가해자들은 비음주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가 많았다. 살해 장소 및 살해 방법은 공동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목이나 몸통을 칼로 찌르거나 목 졸라 살해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는 달리 스토킹에서 이어진 살인의 경우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에서 칼과 같은 흉기로 신체 여러 부위를 여러 번 찔러 살해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점 등을 기술하였다.

※ 주제어 : 살인, 친밀한 파트너 살인,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위험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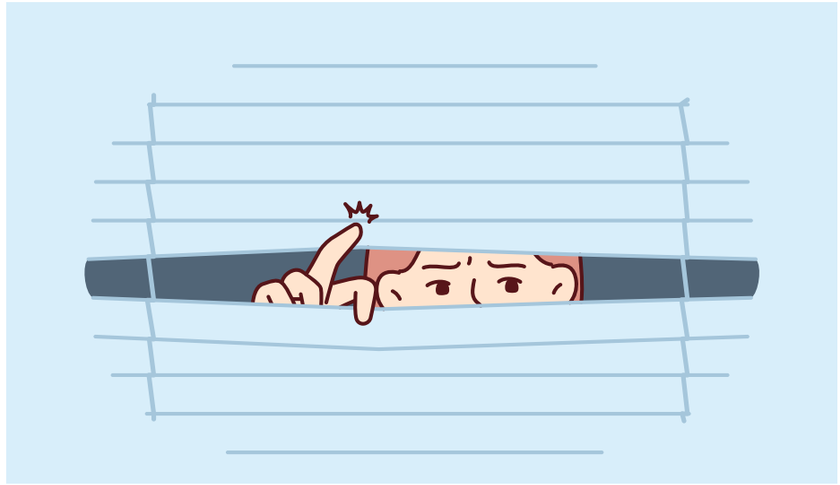

Ⅰ. 서론

지난 2018년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한 동거남이 피해자를 145회나 찔러 살해한 사건에 이어 최근 2021년 7월에도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 건물에서 20대 여성이 교제했던 남성의 폭행으로 사망[1]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 관계 남성으로부터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뻔한 여성은 지난 13년(2009~2021)간 총 2,298명으로, 1.4일마다 1명꼴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한국여성의전화, 2021).

통상적으로 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 관계란 성적인 교류가 있는 연인이나 배우자 등의 관계를 통칭하며, 친밀한 파트너 살인(Intimate Partner Homicide: IPH, 이하 IPH)이란 현재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과거에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배우자나 연인 간에 발생하는 살해를 말한다(백수진, 2011). 이러한 IPH범죄는 개인 간 폭력의 극단적인 형태로, 건강, 사회 복지, 형사 사법의 측면에서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인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LeSuer, 2020; Sabri et al., 2018). 실례로 전 세계적으로 살해된 여성 10명 중 3명(34%)이 친밀한 파트너에게 살해되었고 그중 아시아의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살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UNODC, 2019). 이에 따라 IPH범죄의 감소와 예방을 위한 연구도 꾸준히 발전해왔으며(Vatnar et al., 2019) 최근의 탐색 연구는 IPH범죄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Fraga et al., 2019; Spencer & Stith, 2020; Zhao, 2020). IPH범죄의 전반적인 위험요소로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질투, 정신질환, 알코올 및 약물남용(Spencer & Stith, 2020)과 무기 사용 및 살해 방법(Aldrige & Brown, 2003)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가해자의 전과(Matias et al., 2020), 피해자의 알코올 소비(Matias et al., 2020), 공동 주거지와 같은 범행 발생 장소(Matias et al., 2020)와 같은 개인적, 공간적 요소도 범행의 위험 요소로 확인되었다. 특히,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Postrelationship Stalking: PRS, 이하 PRS)은 IPH범죄의 심각한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다(Aldrige & Brown, 2003). 그러나 국외의 IPH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와 달리 국내의 경우 IPH범죄의 특성이나 위험요소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매년 사회적 이슈로 회자 되는 PRS가 있었던 IPH범죄의 특성과 관련된 실증연구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개된 제1심 형사 판결문을 토대로 IPH범죄로 확

인된 범죄 중 IPH범죄의 심각한 위험 요소인 PRS가 있었던 IPH범죄(PRS-IPH)와 PRS가 없었던 IPH범죄(NON PRS-IPH:NPRS-IPH, 이하 NPRS-IPH)의 특성과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IPH범죄의 예방과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친밀한 파트너 살인(IPH)의 정의

IPH범죄 관계 유형의 정의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Bell & Naugle, 2008; Catalano, 2006). 즉 '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 관계의 범주를 연인 사이로 한정할지, 동거 관계까지로 볼 것인지, 혹은 결혼한 부부까지 확장하여 볼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주장들이 혼재하고 있다(Tjaden, 2000). 통상적으로 친밀한 파트너 관계란, 정서적 유대감, 정기적인 접촉, 지속적인 신체적 접촉과 성적 행동, 부부로서의 정체성, 서로의 삶에 대한 친근함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Breiding, Basile, Smith, Black & Mahendra, 2015). 하지만 친밀한 파트너 관계는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으며 친밀한 파트너 관계 대상에 있어서도 학자마다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부부, 개인적인 접촉과 성적 행동을 지속하는 관계로,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관련된 연

1) 500건의 여성살해, 아무도 그 죽음을 막지 않았다(한겨레, 2021.12.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3938.html

구에서는 부부(사실혼 포함), 동거인(conjugal cohabitants), 전 배우자, 현재 연인(Gauthier & Bankston, 1997; Catalano, 2007) 관계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IPH범죄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현재 연인, 전 연인, 부부 및 전 배우자, 별거 중인 부부와 아울러 단순 성적 교류만 있는 섹스 파트너, 성적 관계와 애정이라는 친밀성이 존재하는 동성 부부나 동성 연인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Spitzberg & Cupach, 2007; Mize & Shackelford, 2008; Breiding, Basile, Smith, Black & Mahendra, 2015). 이처럼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분류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친밀한 파트너 관계란 성적인 교류가 있었거나 유지되고 있는 관계(김성희, 2021)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친밀한 파트너(Intimate Partner) 관계는 김성희(2021)의 분류와 같이 현재 배우자, 전 배우자, 현재 연인, 전 연인, 내연관계, 별거 중인 부부, 가출한 배우자(사실혼 포함) 관계로 한정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범죄를 친밀한 파트너 살인(Intimate Partner Homicide: IPH)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IPH범죄의 특성

살인의 위험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임상 경험과 질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요인을 설명하고자 했으나(Sonkin, Martin, & Walker, 1985; Hart, 1988) IPH범죄를 별도의 살인 유형으로 분리해 설명하지는 못했다(Ioannou & Hammond, 2015). IPH범죄는 본질적으로 가정과 개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Lacanaria & David, 2018; Weil, & Boira, 2016)로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Messner & Tardiff, 1985). 이러한 IPH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Campbell et al., 2007; Dawson et al., 2018)이나 피해자는 5%~8%에 그치고 있다(Frideel & Fox, 2019; Jack et al., 2018). 피해자의 경우 50% 이상의 여성이 이전 혹은 현재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었으며(Frideel & Fox, 2019; Jack et al., 2018; Petrosky et al., 2017) 이러한 피해자의 연령은 여성은 평균 30~40세, 남성은 40~50세로 확인되었다(Garcia, Soria & Hurwitz, 2007). 또한, 여성과 남성의 삶의 역정에 따른 다양한 살해 동기(Allen et al., 2020)에 의해 우발적(Reckdenwald, Szalewski, & Yohros, 2019)으로 총이나 칼, 또는 목을 졸라 살해하는 경우가 여타 살인 범죄에 비해 1.5배 가량 높았다(Carcach & James, 1996). 아울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IPH범죄는 반복적인 학대와 폭력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ompany & Soria, 2016; Jayasuriya, Wijewardena, & Axemo, 2011; Vatnar, Friestad, & Bjerkly, 2017). 이러한 IPH범죄의 특성 중 많은 선행연구에서 스토킹, 가해자의 전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정신질환,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범행 발생 장소, 흉기 및 살해 방법(교살)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인 IPH범죄의 위험 요소로 확인되었다(Aldridge & Browne, 2003; Belfrage & Rying, 2004; Campbell et al., 2003, Garcia et al., 2007; Johnson & Hotton, 2003; Stout, 1993; Wilson & Daly, 1993).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에 나타난 IPH범죄의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IPH범죄의 특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1) 스토킹(stalking)

전 세계적인 IPH범죄 피해자의 82%는 여성(UNODC, 2013)으로 IPH범죄 피해 여성 피해자의 76%, 살인미수 피해자의 85%가 살해당하기 전 파트너에게 스토킹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McFarlane et al.,1999). 특히,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Postrelationship Stalking, PRS)은 전 세계적인 공중 보건 문제(McEwan & Pathé, 2014; Mitchell & Vanya, 2009)로 매우 치명적(McFarlane et al., 1999)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PRS란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를 표적화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 괴로움,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이다(McEwan et al., 2017; Mullen, Pathé, & Purcell, 2009). PRS 스토커들의 특징은 범죄 경력이 있고, 알코올을 남용하며(Mohandie, et al., 2006),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James & Farnham, 2003)할 때 흉기를 사용하였다(Mohandie, et al., 2006). 더욱이 가장 다양한 스토킹 방법을 선보이며(Johnson & Kercher, 2009),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스토킹 행동의 빈도와 강도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특성을 나타냈다(Mohandie, et al., 2006). 이러한 PRS 피해의 심각성을 조사한 일부 연구에서는 최소 48%(Edwards, Dardis &

Gidycz, 2014)에서 최대75%(Langhinrichsen-Rohling, 2012)의 피해가 확인되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스토커와 피해자는 아는 관계가 90%로 이 중 58%는 연인 관계(김잔디, 2019)로, 전 연인 또는 배우자는 57.4%(한민경, 2021), 지인이나 전 연인 관계는 약 60%(한국여성정책원, 2022)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스토킹의 다양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조무용, 김정인, 2016) 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8083호: 약칭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5가지 스토킹 행위[2] 유형 중 어느 하나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도록 명문화하고 같은 해 10. 21 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다양한 스토킹의 객체 중 IPH범죄의 주요 위험 요소로 나타나고 있는 헤어진 관계 파트너에 대한 스토킹(PRS)을 스토킹으로 국한하여 연구하고 한다.

2)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선행연구에서는 IPH범죄 위험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Desta & Venema, 2020; Lynch et al., 2019). 먼저 IPH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Dawson et al., 2018; Moracco et al., 1998)이나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 여타 살인 범죄 가해자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Jordan, Clark, Pritchard & Charnigo, 2012). 반면, 가해자의 전과(Matias et al., 2020)나 피해자와의 관계 유형과 같은 위험요소(Graham et al., 2019; Spencer & Stith, 2020)가 IPH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Sebire, 2017). 즉, IPH범죄 가해자의 범죄경력과 범행과는 상관이 없다는 연구(Brewster, 2000; Meloy & David & Lovete, 2001)와 주요 위험 요소(Matias et al., 2020)라는 상반된 결과가 존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또한 기혼 남성보다 동거 남성이 10배 이상, 기혼 여성보다 동거 여성이 9배 이상 IPH범죄에 더 취약하다는 결과(Shackelford, 2001)와 동거나 연인 관계보다 기혼 부부관계가 범죄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도 존재한다(Sebire, 2017;

Sutton & Dawson, 2018). 또한, 이혼한 여성보다 별거 중인 여성(Elis et al., 2015; Sutton & Dawson, 2018)과 현재 연인 관계거나 전 연인 관계가 IPH범죄에 더 취약하다(Creamer, et al., 2021)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달리 국내의 경우 공통적으로 배우자 관계가 35.3%(이재영, 2018) ~ 81.2%(백수진, 2011)의 비율로 IPH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범행 동기

IPH범죄 가해자의 살해 동기는 여성과 남성의 삶의 역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Allen et al., 2020). 가장 보편적인 동기는 정서적인 문제(Thomas, Dichter & Matejkowski, 2011)로 질투(Jealousy), 특히 성적 질투(sexual jealousy)가 주요 범행동기로 확인되었다(Aldridge & Browne, 2003; Belfrage & Rying, 2004). Block과 Christakos(1995)는 동거(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남성 범죄자의 최대 19%,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 범죄자의 최대 20%의 범행 동기가 성적 질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배우자를 살해한 동기 중 외도, 성, 연애 문제로 인한 갈등이 45.2%나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Chimbos, 1998). 이러한 IPH범죄 가해자의 성적 질투에 대한 성별 차이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파트너가 분리 시도 시 살해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lock & Christakos, 1995). 즉 남성은 여성 파트너를 통제할 권리가 있고 그 통제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때 IPH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Johnson et al., 2019; Sabri et al., 2016). 반면, IPH범죄 가해 여성은 질투, 분리 욕구, 파트너의 통제 등의 일반적인 범행의 동기(Elisha, Idisis, Timor, & Addad

2) ① 접근,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물건 등(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제2조 1호)

2010)외 심각한 학대(Block & Christakos, 1995; Campbell, 1992)에 대한 자기방어 차원의 IPH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약 19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Felson & Messner, 1998). 또한, 국내외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가해자들의 정신건강 문제(Belfrage, & Rying, 2004; 백수진, 2011)도 IPH범죄의 범행동기로 확인되고 있다.

4) 정신질환

IPH범죄를 저지른 남성 범죄자 164명 중 95%가 적어도 하나의 정신질환을 진단(Belfrage & Rying, 2004)받았으며, 남성 범죄자의 상당수가 정신질환 병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Dobash, et al, 2004; Kivisto, 2015). 가장 많은 진단명은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와 우울증(Depressive Disorder)으로 나타났다(Belfrage, Rying, 2014). 반면, 국외의 선행연구에서는 IPH범죄자의 15%만 정신질환이 확인되거나(Eke, Hilton, Harris, Rice, & Houghton, 2011) 심각한 성격장애나 정신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Websdale,1999)는 상반된 결과도 존재한다. 국내의 경우 배우자나 전 배우자를 살해한 가해자의 25.7%, 현재 연인이나 전 연인을 살해한 가해자의 21.1%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5) 알코올 남용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알코올 남용은 살인의 주요 원인인 파악되고 있다(Blount et al., 1994; Browne, 1987). 그중 IPH범죄자의 알코올 및 약물남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Campbell et al., 2003; Campbell, 2004; Leth, 2009; Oam, Flynn, Shaw, Appleby, & Howard, 2013). IPH범죄 가해자의 70%는 살인 범행 전 알코올 혹은 약물을 남용(Campbell et al., 2007)하였고, 피해자 중 30%도 살해되기 전 알코올을 음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Banks, et al, 2008). 또 다른 연구인 핀란드에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836건의 살인사건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IPH범죄를 저지른 남성 범죄자의 알코올 남용과 살인 범행 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Kivivuori & Lehti, 2012). 일부 연구에서는 IPH범죄 가해자 알코올 남용보다 약물남용이 IPH 범행의 더 강력한 예측 인자(Campbell et al., 2003; Dobash et al., 2004))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6) 범행 발생 장소

범죄 발생 장소와 범죄 현상의 공간적 특성을 연구한 환경범죄학자들은 범죄자가 아닌 환경과의 관계에서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김창윤, 2009). 통상적인 살인사건의 발생 장소는 집안, 사무실, 숙박업소와 같은 내부와 골목이나 야산과 같은 외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다(Wolfgang, 1958). 이와 달리 IPH범죄의 경우 본질적으로 가정과 개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Lacanaria & David, 2018; Marcuello-Servos, Corradi, Weil, & Boira, 2016) 양상에 따라 범행 장소가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내부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Messner & Tardiff, 1985). 또한, 연인관계는 주로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에서, 배우자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모두 관련된 장소에서 살해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홍영오 등, 2015). 종합하자면 IPH범죄 발생 장소의 경우 통상적인 살인 범죄와 달리 발생 장소가 실내로 국한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7) 흉기 종류 및 살해 방법

선행연구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살인에 있어 무기의 선택과 사용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밀함 정도가 무기의 선택과 사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omas, Dichter, & Matejkowski, 2011; Trojan & Krull, 2012). 국외의 IPH범죄의 경우 총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Garcia, Soria, & Hurwitz, 2007) 우발적(Reckdenwald, Szalewski, & Yohros, 2019)으로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목 졸라 살해하는 경우가 여타 살인 범죄에 비해 1.5배가량 높았다(Carcach & James, 1996; Silverman & Mukherjee, 1987). 아울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에 있어서도 다른 관계 유형에서 발생한 살인보다 다수의 상처와 더 심각한 상해가 확인되었다(Last & Fritzon, 2005; Salfati, 2003).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피해자의 부상은 더 심각하며(Au & Beh, 2011; Last & Fritzon, 2005) 신체 여러 부위에 다수의 상해

가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Last & Fritzon, 2005; Salfati, 2003). 신체 부위 중에서도 머리, 얼굴, 목 부위를 날카로운 흉기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며(Au& Beh, 2011) 친밀한 관계가 아닌 피해자에 비해 안면 상해의 위험성이 2배 이상(Trojan & Krull, 2012) 높아 친밀함이 컸던 관계였을수록 피해자의 얼굴 상해가 더 심각(Au & Beh, 2011; Trojan & Krull, 2012)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한 친밀한 파트너 관계 살인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시스템(http://www.scourt.go.kr)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자료인 판결문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과 각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명시(김정혜, 2015)되어 있는데 특히 1심 형사판결문은 대법원 판결문과 달리 사실관계를 자세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오세혁, 2006). 연구 자료는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 되기 시작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형사법원에서 살인(살인미수·예비 포함)죄로 유죄 선고된 1심 형사 판결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 방법은 일차적으로 '살인'이라는 검색어로 3년간 전국 1심 법원에서 살인죄로 유죄 선고된 형사 판결문을 검색해 총 2,755건의 형사 판결문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검색된 판결문 중 비공개, 죄명 변경, 강도살인이나 존속살인 등 연구주제와 상관없는 형사판결문을 제외한 결과 총 1,333건의 형사 판결문이 추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1,333건의 판결문에 명시된 범죄사실, 변호인의 주장 및 양형의 이유 등에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확인된 336건을 최종 연구자료로 선정하였다.

2. 자료의 분석

본 연구는 텍스트로 구성된 판결문의 특성상 내용분석을 통한 정량화 및 정성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크게 양적 내용분석과 질적 내용분석으로 구분(Hsieh, & Shannon, 2005)되나 최근 자료의 타당성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두 방법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최성호 외,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 중 가해자의 범죄경력,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알코올 남용 여부, 정신질환, 흉기 종류 및 살해 방법을 0과 1로 계량화하였다. 아울러 스토킹의 경우 IPH범죄 중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를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5가지 스토킹 행위 여부를 0과 1로 이분하여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범행 동기, 범행의 계획성, 살해장소는 범죄사실과 변호인의 주장, 양형의 이유 등을 내용 분석하여 명목화 하였다. 이후 분석 및 시각화에는 SPSS 26.0을 활용하여 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빈도 분석과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IPH범죄의 특성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국의 형사 1심법원에서 판결된 총 1,333건의 사례 중 보통 살인 범죄와 IPH범죄 집단별 빈도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두 집단의 연도별 선고 건수는 일반 살인 범죄는 총 997건으로 2017년 373건(37.4%), 2018년 377건(37.8%), 2019년 247건(24.8%)으로 나타났고, 총 336건의 IPH범죄는 2017년 129건(38.4%), 2018년 127건(37.8%), 2019년 80건(23.8%)으로 확인되었다.

〈표 1〉 2017년~2019년 선고된 일반 살인 범죄 중 IPH 범죄

		살인 범죄 유형				전체	
		보통 살인 범죄		IPH범죄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선고 년도	2017	373	37.4	129	38.4	502	37.7
	2018	377	37.8	127	37.8	504	37.8
	2019	247	24.8	80	23.8	327	24.5
전체		997	100.0	336	100.0	1,333	100.0

1) 스토킹

IPH범죄 위험요인 중 심각한 위험요인(McFarlane et al., 1999)인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전 연인, 전 배우자, 별거, 가출)를 대상으로 살해 전 사후적 스토킹(post-relationship stalking, PRS)이 있었던 집단(PRS-IPH: 이하 PRS-IPH)과 스토킹이 없었던 범죄(NON PRS-IPH: 이하 NPRS-IPH)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빈도 분석과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χ2=16.608, p <.000)가 확인되었다. 먼저 NPRS-IPH범죄 유형(62.5%)과 PRS-IPH범죄 유형(37.5%)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 죄명은 NPRS-IPH범죄 유형은 살인죄(53.8%), 살인미수(46.2%)의 순으로 나타났고, PRS-IPH범죄 유형은 살인미수죄(69.0%), 살인죄(31.0%)로 확인되었다.

〈표 2〉 IPH범죄 유형(NPRS-IPH & PRS-IPH) 및 죄명

구분	빈도(명, %)	죄명	IPH범죄 유형(명, %)			χ^2(df)
			NPRS-IPH	PRS-IPH	합계	
NPRS-IPH	210(62.5)	살인기수	113(53.8)	39(31.0)	152(45.2)	16.608(1)
PRS-IPH	126(37.5)	살인미수 등[3]	97(46.2)	87(69.0)	184(54.8)	
전체	336(100.0)	전체	210(100.0)	126(100.0)	336(100.0)	

3) NPRS-IPH 집단에 있었던 살인예비죄 1건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2)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1) 가해자의 성별 및 범죄경력

가해자의 성별은 <표 3>과 같이 두 집단 모두 남성 비율(88.7%)이 압도적으로 높은 유의미한 차이(χ^2=18.998, p <.000)가 확인되었다. 남성 가해자는 PRS-IPH 집단(98.4%)에서, 여성 가해자는 NPRS-IPH 집단(17.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 범죄 경력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재범 이상(66.4%) 비율이 높은 유의미한 차이(χ2=4.079, p <.05)가 확인되었다. NPRS-IPH 집단 가해자는 재범 이상(61.9%), 초범(38.1%) 순이었고, PRS-IPH 집단은 재범이상(74.4%)의 범죄경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초범(25.6%)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표 3〉 가해자의 성별 및 범죄 경력

N=336

구분		IPH범죄 유형(명, %)			χ^2(df)
		NPRS-IPH	PRS-IPH	합계	
가해자	남성	174(82.9)	124(98.4)	298(88.7)	18.998(1)***
	여성	36(17.1)	2(1.6)	38(11.3)	
전체		210(100.0)	126(100.0)	336(100.0)	
범죄 경력 (n=250)	초범	61(38.1)	23(25.6)	84(33.6)	4.079(1)*
	재범 이상	99(61.9)	67(74.4)	166(66.4)	
전체		160(100.0)	90(100.0)	250(100.0)	

***p <.001 *p <.05

(2) 피해자의 성별 및 가해자와의 관계 유형

피해자의 성별과 가해자와 관계 유형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피해자 성별(χ^2=10.111, p<.001), 가해자와의 관계(χ^2=308.729, p<.001) 모두 <표 4>와 같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피해자의 성별은 두 집단 모두 여성(84.8%)의 비율이 매우 높았지만 그중 PRS-IPH 집단의 여성(92.9%)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가해자와의 관계 유형은 NPRS-IPH 집단의 경우 현재 배우자(51.4%), 현재 연인(19.5%), 사실혼(16.7%), 내연관계(9.0%), 전 연인(1.4%)·전 배우자(1.4%), 가출(0.5%) 순으로, PRS-IPH 집단은 전 연인(63.5%), 전 배우자(15.1%), 별거(13.5%), 가출(7.9%)의 순의 비율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두 집단의 성별에 따른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남성 피해자 집단(χ^2=36.009, p<.001)과 여성 피해자 집단(χ^2=269.857, p<.001)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남성 피해자의 경우 NPRS-IPH 집단에서는 현재 배우자(52.4%), 사실혼(21.4%), 현재 연인(14.3%), 전 연인·내연관계(각 4.8%), 전 배우자(2.4%) 순의 비율을 보였고, PRS-IPH 집단은 전 연인(55.6%), 전 배우자(33.3%), 가출(11.1%)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피해자는 NPRS-IPH 집단에서는 현재 배우자(51.2%)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현재 연인(20.8%), 사실혼 관계(15.5%), 내연관계(10.1%), 전 배우자 (1.2%), 전 연인(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PRS-IPH 집단의 경우 전 연인(64.1%)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별거(14.5%), 전 배우자(13.7%), 가출(7.7%)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4〉 피해자의 성별 및 가해자와의 관계 유형

N=336

구분			IPH범죄 유형(명, %)			χ^2(df)
			NPRS-IPH	PRS-IPH	합계	
피해자	남성		42(20.0)	9(7.1)	51(15.2)	10.111(1)**
	여성		168(80.0)	117(92.9)	285(84.8)	
전체			210(100.0)	126(100.0)	336(100.0)	
관계 유형	전 연인		3(1.4)	80(63.5)	83(24.7)	308.729(7)***
	전 배우자		3(1.4)	19(15.1)	22(6.5)	
	현재 연인		41(19.5)	0(0.0)	41(12.2)	
	현재 배우자		108(51.4)	0(0.0)	108(32.1)	
	내연관계		19(9.0)	0(0.0)	19(5.7)	
	사실혼 관계		35(16.7)	0(0.0)	35(10.4)	
	별거		0(0.0)	17(13.5)	17(5.1)	
	가출		1(0.5)	10(7.9)	11(3.3)	
	전체		210(100.0)	126(100.0)	336(100.0)	
	남성 피해자 (n=51)	전 연인	2(4.8)	5(55.6)	7(13.7)	36.009(6)***
		전 배우자	1(2.4)	3(33.3)	4(7.8)	
		현재 연인	6(14.3)	0(0.0)	6(11.8)	
		현재 배우자	22(52.4)	0(0.0)	22(43.1)	
		내연관계	2(4.8)	0(0.0)	2(3.9)	
		사실혼 관계	9(21.4)	0(0.0)	9(17.6)	
		가출	0(0.0)	1(11.1)	1(2.0)	
	전체		42(100.0)	9(100.0)	51(100.0)	
	여성 피해자 (n=285)	전 연인	1(0.6)	75(64.1)	76(26.7)	269.857(3)***
		전 배우자	2(1.2)	16(13.7)	18(6.3)	
		현재 연인	35(20.8)	0(0.0)	35(12.3)	
		현재 배우자	86(51.2)	0(0.0)	86(30.2)	
		내연관계	17(10.1)	0(0.0)	17(6.0)	
		사실혼 관계	26(15.5)	0(0.0)	26(9.1)	
		기혼 중 별거	0(0.0)	17(14.5)	17(6.0)	
		가출	1(0.6)	9(7.7)	10(3.5)	
	전체		168(100.0)	117(100.0)	285(100.0)	

***p <.001, **p <.01,

3) 범행 동기 및 범행의 계획성

범행 동기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χ2=71.566, p <.000) 가 확인되었다. 먼저 NPRS-IPH 집단 가해자의 경우 자기 열등감·정서불안(24.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성적 질투·시기·집착(22.2%), 기타(16.9%), 현실적 처지 비관·배신감(각 11.6%), 술에 취해서(5.2%) 순의 비율로 집계되었다. 반면, PRS-IPH 집단 가해자는 시기·질투·집착의 비율(58.7%)이 가장 높았고, 배신감(19.0%), 자기 열등감·정서불안(14.3%), 현실적 처지 비관(6.3%), 기타(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판결문의 양형 판단 사유에 명시된 계획적 살인과 우발적 살인에 대해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이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χ2=59.641, p <.000). NPRS-IPH 집단의 경우 우발적인 살인(78.6%)이 계획적 살인(21.4%)의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PRS-IPH 집단은 계획적 살인(63.5%)이 우발적 살인(36.5%)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5〉 범행 동기 및 범행의 계획성

N=336

		IPH범죄 유형(명, %)			χ^2(df)
		NPRS-IPH	PRS-IPH	합계	
범죄 동기 (n=333)	현실 처지 비관	24(11.6)	8(6.3)	32(9.6)	71.556(6)***
	열등감, 정서불안	50(24.2)	18(14.3)	68(20.4)	
	술에 취해서	11(5.3)	0(0.0)	11(3.3)	
	성적 질투, 시기, 집착	46(22.2)	74(58.7)	120(36.0)	
	배신감	24(11.6)	24(19.0)	48(14.4)	
	기타	35(16.9)	2(1.6)	37(11.1)	
	정신질환	17(8.2)	0(0.0)	17(5.1)	
전체		207(100.0)	126(100.0)	333(100.0)	
범행의 계획성	우발적	165(78.6)	46(36.5)	211(62.8)	59.641(1)***
	계획적	45(21.4)	80(63.5)	125(37.2)	
전체		210(100.0)	126(100.0)	336(100.0)	

***p <.001,

4) 가해자의 정신질환

가해자의 범행 당시 정신장애 및 정신병리 진단 여부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χ^2=9.784, p <.001) 가 확인되었다.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두 집단 모두 가해자가 정신질환이 없는 비율(84.7%)이 매우 높았으나, NPRS-IPH 집단 가해자 경우 정신질환이 없는 비율(80.0%)이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20.0%)보다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PRS-IPH 집단에서도 정신질환이 없는 경우(92.7%)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7.3%)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6〉 가해자의 정신질환 진단 여부

N=336

구분		IPH범죄 유형(명. %)			χ^2(df)
		NPRS-IPH	PRS-IPH	합계	
정신질환 진단 여부 (n=334)	없음	168(80.0)	115(92.7)	283(84.7)	9.784(1)**
	있음	42(20.0)	9(7.3)	51(15.3)	
전체		210(100.0)	124(100.0)	334(100.0)	

**p <.01

5) 알코올 남용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알코올 남용 여부에 대해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표 7>과 같이 가해자(χ^2=18.606, p<.000) 와 피해자(χ^2=16.539, p<.000) 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가해자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알코올을 음용한 상태로 범행(36.0%)을 한 경우보다 알코올을 음용하지 않은 상태(64.0%)에서 범행을 한 비율이 높았다. NPRS-IPH 집단 가해자의 경우 알코올 비음용(55.2%)과 알코올 음용(44.8%)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PRS-IPH 집단 가해자는 알코올 비음용(783.6%) 상태에서 범행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알코올 음용 상태에서 범행한 비율(21.4%)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알코올을 음용하지 않은 상태(79.8%)에서 피해를 당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구체적으로 NPRS-IPH 집단 피해자의 경우 알코올 비음용(72.9%), 알코올 음용(44.8%) 순으로 나타나 알코올 음용과 무관한 상태에서의 피해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PRS-IPH 집단 피해자도 알코올 비음용(91.3%)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알코올을 음용(8.7%)한 경우는 NPRS-IPH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7〉 범행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알코올 음용 여부

구분		IPH범죄 유형(명. %)			χ^2(df)
		NPRS-IPH	PRS-IPH	합계	
가해자 알코올 음용 여부	알코올 음용	116(55.2)	99(78.6)	215(64.0)	18.606(1)***
	알코올 비음용	94(44.8)	27(21.4)	121(36.0)	
전체		210(100.0)	126(100.0)	336(100.0)	
피해자 알코올 음용 여부	알코올 음용	153(72.9)	115(91.3)	268(79.8)	16.539(1)***
	알코올 비음용	57(27.1)	11(8.7)	68(20.2)	
전체		210(100.0)	126(100.0)	336(100.0)	

***p <.001

6) 범행 발생 장소 및 장소 관련성

범행 장소(χ^2=34.960, p<.000)와 장소 관련성(χ^2=105.766, p<.000) 모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먼저 범행 장소는 NPRS-IPH 집단의 경우 내부(93.3%), 외부(6.7%) 순으로, PRS-IPH 집단은 내부(69.0%), 외부(31.0%)의 비율로 확인되어 NPRS-IPH 집단의 내부 범생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생 장소가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구와 관련된 장소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본 결과 NPRS-IPH 집단은 가해자·피해자 모두 관련된 장소(66.7%)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23.3%), 쌍방 모두 관련 없는 장소(7.6%), 가해자와 관련 있는 장소(2.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PRS-IPH 집단의 경우 피해자와 관련 있는 장소(74.6%)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관련 있는 장소(11.9%), 가해자와 관련 있는 장소(7.9%), 쌍방 모두 관련 없는 장소(7.9%) 순의 비율로 차이를 보였다.

〈표 8〉 범행 발생 장소 및 장소 관련성

구분		IPH범죄 유형(명, %)			χ^2(df)
		NPRS-IPH	PRS-IPH	합계	
범행 장소	내부	196(93.3)	87(69.0)	283(84.2)	34.960(1)***
	외부	14(6.7)	39(31.0)	53(15.8)	
전체		210(100.0)	126(100.0)	336(100.0)	
장소 관련성	가해자와 관련 있는 장소	5(2.4)	10(7.9)	15(4.5)	105.766(3)***
	피해자와 관련 있는 장소	49(23.3)	94(74.6)	143(42.6)	
	쌍방 모두 관련 있는 장소	140(66.7)	15(11.9)	155(46.1)	
	쌍방 모두 관련 없는 장소	16(7.6)	7(5.6)	23(6.8)	
전체		210(100.0)	126(100.0)	336(100.0)	

***p <.001

7) 살해 방법 및 피해자 상처 유형

흉기 종류 및 살해 방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살해 방법에서 유의미한 차이(χ^2=12.749, p<.05) 가 확인되었고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두 집단 모두 칼과 같은 흉기(60.4%)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NPRS-IPH 집단 가해자는 칼과 같은 흉기(57.6%)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목조름(22.9%), 망치·몽둥이와 같은 둔기(8.1%), 위험한 물건(5.7%), 독극물·약물(3.3%), 과도한 폭행(2.4%) 순으로 집계되었다. PRS-IPH 집단 가해자의 경우 칼과 같은 흉기(65.1%)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목조름(11.9%), 과도한 폭행(7.9%), 위험한 물건(7.1%), 둔기(4.8%), 독극물·약물(3.2%)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흉기 종류 및 살해 방법

구분		IPH범죄 유형(명, %)			χ^2(df)
		NPRS-IPH	PRS-IPH	합계	
살해 방법	목조름(손, 도구 포함)	48(22.9)	15(11.9)	63(18.8)	12.749(5)*
	칼 등 흉기로 찌름	121(57.6)	82(65.1)	203(60.4)	
	둔기 사용	17(8.1)	6(4.8)	23(6.8)	
	독극물/약물 주입	7(3.3)	4(3.2)	11(3.3)	
	과도한 폭행	5(2.4)	10(7.9)	15(4.5)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	12(5.7)	9(7.1)	21(6.3)	
전체		210(100.0)	126(100.0)	336(100.0)	

*p <.05

이어서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살해당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상처 유형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상처 부위(χ^2=12.508, p<.05)와 상처 유형(χ^2=13.521,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피해자 상처 유형은, NPRS-IPH 집단 피해자의 경우 목(36.6%)에 상처를 입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몸통(34.7%), 기타(16.3%), 머리(9.4%), 얼굴·팔다리(각 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PRS-IPH 집단 피해자들은 몸통(44.8%)에 상해를 입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기타(23.3%), 목(19.8%), 머리(10.3%), 팔다리(1.7%)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해자 상해 유형을 살펴보면, NPRS-IPH 집단의 피해자는 신체 한 부위에 상해(47.2%)를 입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러 부위 여러 개 상해(37.2%), 한 부위에 여러 개 상해(15.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PRS-IPH 집단 피해자는 신체 여러 부위에 여러 개의 상해를 입은 비율(56.1%)이 가장 높았고 한 부위에 하나의 상해(27.2%), 한 부위 여러 개 상해(16.7%) 순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표 10〉 피해자 상처 유형 및 상처 부위

N=336

구분		IPH범죄 유형(명, %)			χ^2(df)
		NPRS-IPH	PRS-IPH	합계	
피해자 상처 부위 (n=318)	몸통	70(34.7)	52(44.8)	122(38.4)	12.508(5)*
	목	74(36.6)	23(19.8)	97(30.5)	
	얼굴	3(1.5)	0(0.0)	3(0.9)	
	머리	19(9.4)	12(10.3)	31(9.7)	
	팔다리	3(1.5)	2(1.7)	5(1.6)	
	기타	33(16.3)	27(23.3)	60(18.9)	
전체		202(100.0)	116(100.0)	318(100.0)	
피해자 상처 유형 (n=313)	신체 한 부위 상해	94(47.2)	31(27.2)	125(39.9)	13.251(2)**
	한 부위에 여러 번 상해	31(15.6)	19(16.7)	50(16.0)	
	여러 부위에 여러 번 상해	74(37.2)	64(56.1)	138(44.1)	
전체		199(100.0)	114(100.0)	313(100.0)	

**p <.01, *p <.05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IPH범죄의 특성을 탐색하여 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IPH범죄의 특성과 위험요인에 대한 국내 외 선행연구를 탐색하였고, 2017년~2019년에 선고된 IPH범죄 형사 1심 판결문 336건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의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IPH범죄는 일반 살인 범죄 중 약 33.3%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 세계적인 조사 결과(UNODC, 2019)와 일치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IPH범죄 중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범죄는 37.5%(126건)의 비율로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었으나 그중 PRS가 있었던 IPH범죄 피해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살해당한 여성의 30~40% 사건에서 스토킹이 있었다는 선행연구(김정혜, 2015; 김정혜 등, 2021)와 일치하는 결과로 여러 스토킹 중에서도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의 위험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중에서도 관계가 끝난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스토킹이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사법기관의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IPH범죄 가해자의 대부분은 재범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남성으로 가해자의 성별(Campbell et al., 2007; Dawson et al., 2018)과 범죄 경력이 IPH범죄의 위험요인(Matias et al., 2020)이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NPRS-IPH범죄에서의 여성 가해자의 비율(17.1%)이 전체 살인사건 중 여성의 비율(16.3%)보다 높아(검찰청, 2022) 여타 살인 범죄에 반해 여성 살인범의 비율이 높은(Jordan, Clark, Pritchard & Charnigo, 2012) 특징과 일치하고 있다. 이는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하는 여성의 대부분이 지속적인 학대로 인한 자기방어적 차원의 살인을 저지른다는 선행연구(Felson & Messner, 1998)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정기관의 남성과 여성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나 심리치료의 영역의 세분화가 요구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84.8%)으로 가해자와의 관계는 NPRS-IPH 집단에서는 현재 배우자(51.2%)가, PRS-IPH 집단에서는 전 연인(64.1%)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 유형 중 부부(Sebire, 2017; Sutton & Dawson, 2018)나 전 연인(Creamer, et al., 2021)이 살해될 위험이 높다는 일부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처럼 개인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초동 대응 시 피해자 보호요원과 같은 전문인력에 의한 정확한 현장 판단과 보호조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 연인 관계의 피해자의 1/3가량이 살해 전 스토킹 당하다 살해당하였다는 점은 경찰의 스토킹 범죄의 대응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적인 부분이 고려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범행 동기는 성적 질투, 시기, 집착(36.0%)을 가진 가해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Reckdenwald, Szalewski & Yohros, 2019)의 범행 동기 특성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 질투(sexual jealousy)와 같은 정서적 동기가

국적과 인종을 떠나 IPH범죄의 주요 위험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이는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과 정서적 동기가 원인이 된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 시 이러한 정서적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위험성 판단 도구의 도입과 활용을 통해 재범방지에 대한 보다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IPH범죄 가해자의 일부(15.3%)에서만 정신질환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선행연구(Eke, Hilton, Harris, Rice, & Houghton, 201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알코올 남용과 관련하여 현재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친밀한 파트너 가해자의 44.8%, 피해자의 27.1%가 알코올을 음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Campbell et al., 2007; Banks, et al, 2008). 이러한 결과는 가해자와 피해자 중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특성에서 비롯되는 결과라 추정할 수 있다.

여섯째, 범행 장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장소 내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여 선행연구(Lacanaria & David, 2018; Marcuello Servos, Corradi, Weil, & Boira, 2016)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PRS-IPH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과 같은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에서 발생 비율이 높았다. 이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학대나 스토킹 행위가 인지될 경우 가해자 접근금지와 같은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가해자가 법원의 결정 전 접근금지와 같은 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제재와 같은 특별법의 규정 또한 좀 더 엄격한 방향으로 개선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PH범죄 가해자들은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살해당한 피해자 중 NPRS-IPH범죄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칼과 같은 흉기로 단번에 찔러 살해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PRS-IPH범죄 가해자는 신체 여러 부위를 여러 번 찔러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IPH범죄의 경우 칼과 같은 흉기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비율이 여타 살인 범죄에 비해 높고(Carcach & James, 1996; Silverman & Mukherjee, 1987) 몸통이나 목 부위(Au& Beh, 2011)에 심각한 상해를 입힌다는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특히 PRS-IPH범죄 가해자가 더 심각한 상해를 가한다는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스토커의 행동 특성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과 파트너 관계가 종료된 후 스토킹이 수반되는 경우 살인의 위험이 배가되는 특성을 탐색한 것에 의미가 있다.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데, 먼저 국내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1/3 상당이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이러한 살인사건 중 파트너와 헤어진 후 스토킹이 이어질 경우 살해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공동 주거지나 피해자와 관련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인만큼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와 같은 사건의 초기 대응 시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의 병행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가해자의 대부분이 재범 이상의 범죄 경력을 가진 남성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제도의 확대와 같은 사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 이후 입법 이전과 입법 이후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 등 다양한 연구영역의 확장 가능성도 본 연구가 시사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국내에서 발생한 친밀한 파트너 살인사건 중 공개된 1심 형사 판결문만을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내용분석을 통한 다양한 특성 요인에 대한 정성·정량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특성들은 파악하지 못한 기록조사의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이 연구의 주제는 국내 선행연구가 미진한 관계로 국외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평균 비교나 집단 비교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통계 방법을 활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때문에,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위험요인이 살인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언론 보도, 판결 전 조사서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험요인과 IPH범행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IPH범죄의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인 PRS를 변인으로 집단 구분 후 전체적인 살인의 특성과 집단별 특성을 고찰하였으나 스토킹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헤어진 파트너를 대상으로 나타난 스토킹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의 특성과 스토킹범죄의 위험성을 탐색한 실증연구로 IPH범죄의 위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성희. (2021).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스토킹 행위 유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잔디. (2019). '스토킹죄의 실행행위 구조에 관하여'.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83-109.

김정연, (2021). '제정 스토킹범죄처벌법의 스토킹행위의 유형 분석 및 향후 과제'. 젠더리뷰, 21(여름호): 39-46

김정혜. (2015).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혜·박보람. (2021) '[이슈브리프1] 스토킹 입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젠더리뷰. 38-46.

검찰청. 2022). 2021범죄분석. 576-578

백수진. (2011). '친밀한 파트너 살해의 성별 특성(1990년부터 2010년 내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아시아 여성연구, 50(1), 93-130.
이재영. (2018) '신문보도를 통해 살펴본 국내 femicide 사건의 특성'. 한국경찰학회보. 제 20권 제1호.: 293-320
조무용·김정인. (2016). '성평등인식과 성차별주의가 스토킹통념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1): 109-134.
한민경. (2021). '법정에 선 스토킹: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37(1). 65-92.
한국여성의전화. (2022). '2022 분노의 게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5-AA-13.

■ 외국문헌

Aldridge, M. L., & Browne, K. D. (2003). 'Perpetrators of spousal homicide: A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4, 265-276.
Allen, T., Salari, S., & Buckner, G. (2020). 'Homicide illustrated across the ages: Graphic depictions of victim and offender age, sex, and relationship'. Journal of Aging and Health, 32(3-4), 162-174.
Amy Reckdenwald, Alec Szalewski, & Alexis Yohros. (2019). 'Place, Injury Patterns, and Female-Victim Intimate Partner Homicide': Violence Against Women, 25(6). 654-676. . 2019.
Au, K. I., & Beh, S. L. (2011). 'Injury patterns of sharp instrument homicides in Hong Kong'. 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204, 201-204.
Banks, L., Crandall, C., Sklar, D., & Bauer, M. (2008). 'A Comparison of Intimate Partner Homicide to Intimate Partner Homicide-Suicide'. Violence Against Women, 14(9), 1065-1078.
Belfrage, H., & Rying, M. (2004). 'Characteristics of spousal homicide perpetrators: Study of all cases of spousal homicide in Sweden 1990-1999'. Criminal Behavior & Mental Health, 14, 121-133.
Bell, K. M., & Naugle, A. E. (2008).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oretical considerations: Moving towards a contextual framework'.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7), 1096-1107.
Breiding, M. J., Basile, K.C., Smith, S.G., Black, M. C. & Mahendra, R.M. (2015). 'Intimate Partner Violence Surveillance: Uniform Definitions and Recommended Data Elements. Georgi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Browne, A. (1987). 'When battered women kill'. New York, NY: Free Press.
Blount, W. R., Silverman, I. J., Sellers, C. S., & Seese, R. A. (1994). 'Alcohol and drug use among abused women who kill, abused women who don't, and their abusers'. Journal of Drug Issues, 24(2), 165-177.
Brewster, M. P. (2000). 'Stalking by former intimates: Verbal threats and other predictors of physical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15(1), 41-54.
Campbell, J. C. (1992). 'If I can't have you, no one can. In J. Radford & D. E. Russell (Eds.),Femicide': The politics of woman killing (pp. 99-113). New York, NY: Twayne.
Campbell, J. C. (2002). 'Health consequenc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Lancet, 359(9314), 1331-1336.
Campbell, J.C., Webster, D., Koziol-McLain, J., Block, C., Campbell, D., Curry, M.A., Gary, F., Glass, N., McFarlane, J., Sachs, C., Sharps, P., Ulrich, Y., Wilt, S.A., Manganello, J., Xu, X., Schollenberger, J., Frye, V. & Laughon, K. (2003). 'Risk Factors for Femicide in Abusive Relationships: Results From a Multisite Case Control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3(7), 1089-1097.
Campbell, J. C., Glass, N., Sharps, P. W., Laughon, K., & Bloom, T. (2007). 'Intimate partner homicide: Review and implications of research and policy'. Trauma, Violence, & Abuse, 8(3), 246-269.
Campbell, J. C. (2004). 'Helping women understand their risk in situation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 1464-1477.
Carcach, Carlos., James, Marianne & Graycar, Adam. (1996). 'Homicide between Intimate Partners in Australia'. Trends and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90(6)
Catalano, S. M. (2006).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Catalano, S. (2007).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Washton, DC: Bureau o Statistics. Retried on July 19, 2010,
Chimbros, P. D. (1998). 'Spousal homicides in contemporary Greec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39, 213-223.
Company, A., & Soria, M. (2016). 'La violencia en la escena del crimale en homicidios en la pareja'. Anuario de Psicología Jurídica, 26,13-18.
Creamer, Catherine J & Hand, Christopher J.(2022). 'Intimate Partner Stalking/Pursuit'. A Pathophysiology of Attachment Style.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6(5).
Desta, M. K., & Venema, R. M. (2020). 'Women convicted of intimate partner homi- cide in Oromiya Regional State of Ethiopia: Profile and associated factors'. Violence Against Women.
Dobash, R. E., Dobash, R. P., Cavanagh, K., & Lewis, R. (2004). 'Not an Ordinary Killer Just an Ordinary Guy'. Violence Against Women, 10(6), 577-605.
Edwards, K. M., Dardis, C. M., Sylaska, K. M., & Gidycz, C. A. (2014). 'Informal social reactions to college women's disclosur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ssociations with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variab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0, 25-44.
Eke, A. W., Hilton, N. Z., Harris, G. T., Rice, M. E., & Houghton, R. E.(2011). 'Intimate partner homicide: Risk assessment and prospects for predict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26, 211-216.
Elisha, E., Idisis, Y., Timor, U., & Addad, M. (2010). 'Typology of intimate partner homicide:Personal, interperson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men who murdered their female intimate partner'.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4, 494-516.
Ellis, D., Stuckless, N., & Smith, C. (2015). 'Marital separation and lethal domestic violence'. Routledge.
Felson, R. B., & Messner, S. F. (1998). 'Disentangling the effects of gender and intimacy on victim precipitation in homicide'. Criminology, 36, 405-424.
Fraga Rizo, C., Mennicke, A., & Van Deinse, T. (2019). 'Characteristics and factors associated with intimate partner violence related homicide postrelease from jail or pris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Fridel, E. E., & Fox, J. A. (2019). 'Gender differences in patterns and trends in US homicide, 1976-2017'. Violence and Gender, 6(1), 27-36.
Garcia, L., Soria, C., & Hurwitz, E. (2007). 'Homicide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 literature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8, 370-383.
Gauthier, D. K. & Bankston, W. B. (1997). 'Gender equality and the sex ratio of intimate killing'. Criminology, 35, 577-600.
Graham, L. M., Sahay, K. M., Rizo, C. F., Messing, J. T., & Macy, R. J. (2019).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vailable intimate partner homicide and reassault risk assessment tools: A systematic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Hart, B. (1988). 'Beyond the "duty to warn": A therapist's "duty to protect" battered women and children'. In K. Yllo & M. Bogard (Eds.),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Newbury Park, CA: Sage.
Ioannou, M., & Hammond, L. (2015). 'The changing face of homicide research: The shift in empirical focus and emerging research trends'. Journal of Criminal Psychology, 5, 157-162.
Jack, S. P. D., Petrosky, E., Lyons, B. H., Blair, J. M., Ertl, A. M., Sheats, K. J., & Betz, C. J. (2018). 'Surveillance for violent deaths: National violent death reporting system, 27 states, 2015'. MMWR Surveillance Summaries, 67, 1-32.
James, D. & Farnham, F. (2003). 'Stalking and serious viol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31, 432-439.
Jayasuriya, V., Wijewardena, K., & Axemo, P. (2011).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Female, 17(8).
Johnson, H., & Hotton, T. (2003). 'Losing control: Homicide risk in estranged and intact intimate relationships'. Homicide Studies, 7, 58-84.

Johnson, M. & Kercher, G. (2009). 'Identifying predictors of negative psychological reactions to stalking victim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4, 5, 886-882.

Johnson, H., Eriksson, L., Mazerolle, P. & Wortley, R., (2019). 'Intimate Femicide: The Role of Coercive Control'. Feminist Criminology.

Jordan, C. E., Clark, J., Pritchard, A. & Charnigo, R. (2012). 'Lethal and Other Serious Assaults: Disentangling Gender and Context'. Crime & Delinquency, 58(3), 425-455.

Kivisto, A. J. (2015). 'Male perpetrators of intimate partner homicide: A review and proposed typolog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online, 43(3), 300-312.

Kivivuori, J., & Lehti, M. (2012). 'Social correlates of intimate partner homicide in Finland: Distinct or shared with other homicide types?'. Homicide Studies, 16, 60-77.

Langhinrichsen-Rohling, J., McCullars, A., & Misra, T. A. (2012). 'Motivations for men and women's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 comprehensive review'. Partner Abuse, 3(4), 429-468.

Lacanaria, M., & David, J. (2018). 'A reason to kill: Case study on mariticide'. Journal on Nursing, 8(1), 42-56 Retrieved from

Last, S. K., & Fritzon, K. (2005). 'Investigating the nature of expressiveness in stranger, acquaintance and intrafamilial homicides'.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2, 179-193.

LeSuer, W. (2020). 'An international study of the contextual effects of gender inequality on intimate partner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students'. Feminist Criminology, 15(1), 97-118.

Leth, P. (2009). 'Intimate Partner Homicide'. Forensic Science, Medicine, and Pathology, 5, 199-203.

Lynch, K. R., Jackson, D. B., & Logan, T. (2019). 'Coercive control, stalking, and guns: Modeling service professionals' perceived risk of potentially fatal inti- mate partner gun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Marcuello-Servós, C., Corradi, C., Weil, S., & Boira, S. (2016). 'Femicide- A social challenge.pdf.' Current Sociology, 64(7), 967-974.

McFarlane, J., Campbell, J., Wilt, S., Sachs, C., Ulrich, Y., & Xu, X.(1999). 'Stalking and intimate partner femicide'. Homicide Studies,3, 300-316.

Matias, A., Gonçalves, M., Soeiro, C., & Matos, M. (2020). 'Intimate partner homicide:A meta-analysis of risk factor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50, 101358.

McEwan, T. E., Shea, D. E., Nazarewicz, J., & Senkans, S. (2017). 'Re-assessing the link between stalking and intimate partner abuse'. Partner Abuse, 8, 223-250.

Meloy, J. R., Davis, B. & Lovette, J. (2001). 'Risk factors for violence among stalkers'. Journal of Threat Assessment, 1(1), 3-16.

Messner, S.F. & Tardiff, K. 1985, 'The social ecology of urban homicide:An application of the 'routine activities' approach', Criminology, vol. 23, pp. 241-67.

Mize, K. D. & Shackelford, T. K. 2008. 'Intimate partner homicide methods in heterosexual, gay, and lesbian relationships'. Violence and Victims, 23(1), 98-114.

Mohandie, K., Meloy, J., McGowan, M. G. & Williams, J. (2006). 'The RECON typology of stalking: Reliability and validity based upon a large sample of north american stalkers'.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51(1), 147-155.

Moracco, K. E., Runyan, C. W., & Butts, J. D. (1998). 'Femicide in North Carolina, 1991-1993: A statewide study of patterns and precursors'. Homicide Studies, 2, 422-446.

Mullen, P. E., Pathé, M. & Purcell, R. (2009). 'Stalkers and their victim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am, S., Flynn, S. M., Shaw, J., Appleb, L., & Howar, L. M. (2013). 'Mental illness and domestic homicide'. a population-based descriptive study. Psychiatry Services, 64, 1006-1011

Petrosky, E., Blair, J. M., Betz, C. J., Fowler, K. A., Jack, S. P., & Lyons, B. H. (2017). 'Racial and ethnic differences in homicides of adult women and the role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United States, 2003-2014'. MMWR.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66(28), 741.

Sabri, B., Campbell J.C. & Dabby, F.C. (2016). 'Gender Differences in Intimate Partner Homicides Among Ethnic Sub-Groups of Asians'. Violence Against Women, 22(4) 432-453.

Sabri, B., Campbell, J. C., & Messing, J. T. (2018). 'Intimate partner homicides in the United States, 2003-2013: A comparison of immigrants and nonimmigrant victim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Salfati, C. G. (2003). 'Offender interaction with victims in homicid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frequencies in crime scene behavio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 490- 512.

Sebire, J. (2017). 'The value of incorporating measures of relationship concordance when constructing profiles of intimate partner homicides: A descriptive study of IPH committed within London, 1998-2009'.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2(10), 1476-1500.

Shackelford, T. K. (2001). 'Partner-killing by women in cohabiting relationships and marital relationships'. Homicide Studies, 5(3), 253-266.

Silverman, R., & Mukherjee, S. (1987). 'Intimate homicide: An analysis of violent social relationships'.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5, 37-47.

Sonkin, D. J., Martin, D., & Walker, L. (1985). 'The male batterer: A treatment approach'. New York: Springer.

Spitzberg, B. & Cupach, W. (2007). 'What mad pursuit? Obsessive relational intrusion and stalking related phenomena'.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8, 345-375.

Spencer, C. M., & Stith, S. M. (2020). 'Risk factors for male perpetration and female victimization of intimate partner homicide: A meta-analysis'. Trauma, Violence, & Abuse, 21(3), 527-540.

Stout, K. (1993). 'Intimate femicide: A study of men who have killed their mate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19, 81-94.

Sutton, D., & Dawson, M. (2018). 'Differentiating characteristic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Do relationship status, state, and duration matt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Thomas, K. A., Dichter, M. E., & Matejkowski, J. (2011). 'Intimate versus non-intimate partner murder: A comparison of offender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Homicide Studies, 15, 291-311.

Tjaden, P. G. (2000). 'Extent, nature, and consequenc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Trojan, C., & Krull, A. C. (2012). 'Variations in wounding by relationship intimacy in homicide cas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

Ulibarri, M. D., Roesch, S., Rangel, M. G., Staines, H., Amaro, H., & Strathdee, S. A. (2015). '"Amar te Duele"("love hurts"): sexual relationship power, intimate partner violence, depression symptoms and HIV risk among female sex workers who use drugs and their non-commercial, steady partners in Mexico'. AIDS and Behavior, 19(1), 9-18.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3). 'Global study on homicide 2013(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14.IV.1)'.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9). 'Global study on homicide 2019 Vienna, Austria'.

Vatnar, S., Friestad, C., & Bjerkly, S. (2017). 'Intimate partner homicide in Norway 1990-2012'. Psychology of Violence, 7(3), 395-405.

Websdale, N. (1999). 'Understanding domestic homicide'.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Wilson, M., & Daly, M. (1993a). 'Spousal homicide risk and estrangement'. Violence and Victims, 8, 3-16.

Wolfgang, M. E. (1958). 'Patterns of criminal homicide'.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Zhao, S. H. (2020). 'Characteristics of intimate partner homicide in China: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in other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4(2-3).

아니 이런 변이 있나

강민정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교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미안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그날도 그랬다. 나는 어려운 잘못을 고백해야 하는 사람처럼 사동 출입문 앞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수백 번, 수천 번 드나든 곳이건만, 그 순간은 차마 그 문턱을 넘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우왕좌왕, 좌왕우왕, 갈팡질팡하기를 몇 차례, 결국 온수배식을 마치고 돌아온 사소가 출입문 밖의 나를 발견했다. 눈과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사소의 눈동자가 잘게 떨리는 것을 보고야 말았다.
"주임님, 설마…?"
그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에 나는 목이 콱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서두에 언급했던 그런 순간이다. 내 잘못도 아닌데 민망하고, 난처하고, 미안한 순간. 그러나 그렇다 해도 어찌하리. 이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나의 일인 걸. 나는 결국 그녀에게 내가 해야 할 말을 전했다.
"네. 또 그렇게 됐네요. 이거 미안해서 어쩌죠?" "아닙니다. 바로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분명 듣기 싫은 말이었을 텐데. 고맙게도 사소는 싫은 내색 하나 없이 고개를 살짝 숙이고 서둘러 사소실로 들어갔다. 청소용구를 챙겨오기 위해서다.
오늘 하루만 세 번째,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힘들 일은 우리는 매번 생길 때마다 해야만 한다. 피할 수 없고, 게으름 부릴 수도 없다. 무슨 일이냐고? 그건 바로 치매 노인의 변치우기다.
"으아아아아!"
냄새가 빠지라고 열어둔 보호실 문밖으로 노인 수용자의 광기어린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와 함께, 노인의 변 냄새도 같이 실려 오는 기분이었다. 벽이며 바닥이며 방충망이며, 온통 똥 칠갑을 해놓은 그곳을, 이제 사소와 내가 같이 치워야 한다.
가끔은 내가 교정기관에서 일하는 건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다.

현재 한국은 고령화 사회다. 그러나 작금의 저출산 문제를 보면, 아직 고령화 사회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단 느낌이 든다.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이제 한국은 초고령화, 초초고령화, 초초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교정기관 또한, 예외 없이 초초초고령화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 교정계는 그 초유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 현장에서 치매 노인 몇 명 관리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 따른다.
치매 노인하면 많이들 힘없이 누워 거동을 못 하는 무해한 노인을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치매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폭력적인 치매 환자들도 많다. 그리고 교정기관에는 유달리 폭력적인 치매 노인들이 수용자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치매 노인이 무슨 범죄? 라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죄목은 정말 다양하다. 많이들 공

무집행방해가 있다. 공공기물을 훼손하다가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해서 들어오는 노인이 꽤 있고, 그 외에도 주거침입, 폭행, 절도, 심지어 사기까지 있다. 참 요상하기도 하지. 자기 몸도 잘 못 가누는 노인이 사기는 또 어떻게 치는 건지. 아무튼 그들의 죄목보다 당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돌봄이 필요한 약자라는 것이다.

그들은 옆에서 누가 밥을 잘 먹는지 봐줘야 하고, 대소변 실수를 하면 처리를 도와줘야하고, 때맞춰 약을 먹여줘야 하고, 소란을 피우면 달래주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노인 거실에서 다른 노인 수용자들과 잘 지내는 것이다. 폭력성이 없는 치매 수용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같은 거실의 수용자들이 잘 돌봐준다. 폭발적 업무량에 시달리는 수용동 담당 근무자가 현실적으로 치매 수용자를 24시간 지켜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그들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어디가 아픈지, 무슨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고 근무자에게 알려주는 일이 교정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폭력성이 있는 치매 수용자다. 같은 거실 사람들도 처음엔 참고 잘 지내보려고 해도, 치매 수용자는 끝도 없이 같은 거실 수용자를 괴롭게 한다. 계속해서 다른 수용자가 자기 물건을 훔쳐 갔다고 의심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루 종일 하거나, 쉽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거나,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거나, 늘 주변인을 위협하는 치매 수용자는 결국 혼거실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같은 거실 사람들과 마찰을, 싸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독거를 시키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담당 근무자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들은 간식을 달라며, 혹은 내보내달라며, 아니면 망상적 발언을 하겠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 비상벨을 누르거나, 대소변 실수를 하거나,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거실 내 물건을 파손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그러면 수용인원을 아득히 초과한 지 오래인 교정시설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근무자는 안 그래도 부족한 업무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치매 수용자를 보살펴야 한다. 밥을 먹지 않으면 가서 먹는 것을 도와주고,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혹여나 욕창이 생길까 자세도 바꿔주고, 대소변 실수를 하면 치워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혈압약, 당뇨약 같이 꼭 먹어야 하는 약도 시간 맞춰 먹이고, 소란을 피우면 또 가서 진정시켜야 한다. 언제까지? 그들이 출소하거나, 이송 갈 때까지…….

"막막하네요……."

사소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막막했다. 보호실 치매 수용자가 방충망에 대변을 아주 진득하게 발라 놨다. 사소는 수세미로 방충망을 닦아보려고 했지만, 방충망 사이사이 낀 대변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이대로 다시 이 방충망을 창문에 끼워두면, 바람이 불 때마다 보호실은 변 냄새로 가득 찰 게 분명했다. 이걸 어쩐다, 고민하던 중에 사소가 다른 층에 세척용 호스가 있는 것을 기억해 냈다. 세척용 호스의 수압으로 방충망을 청소해보자는 것이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다른 층에서 세척용 호스를 가져와 보호실 옆 화장실 개수대에 연결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 나는 주먹을 꽉 쥔 채 화장실에 있는 사소에게 신호를 주었다.

"살살, 살살 틀어봐요!"

끼릭, 쏴아아. 내 신호에 맞춰 사소가 수도꼭지를 돌렸고, 곧 호스가 꿀렁댔다. 그리고……. 촤아악!

"끄아아악!"

호스를 든 사소와 그 옆에 있던 나는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아니나 다를까, 세척호스의 강한 수압이 방충망을 시원하게 청소해줌과 동시에 사방으로 물을 튀겼다. 나는 그 물을 맞으며 비명을 질렀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힘들었다. 정말 힘든 하루였다.

교정시설이란 무엇인가?

교정시설은 수용자가 교정을 위해 들어오는 곳이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십수 년 후에 이곳은 더는 교정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수용자의 요양을 위한 시설이 되어버릴 것이 자명하다. 고령화 사회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실질적인 법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후문정책으로 가석방 후에 요양기관에 연계하는 것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치매로 인한 범죄엔 수감보단 병원 치료 먼저 선행되게 하는 것은 어떨까? 치매는 물론 아직 정복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찍부터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진다지 않는가. 그것도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치매 거실을 만들고 요양보호사를 특채로 뽑아 치매거실마다 상주하게 하는 건 어떨까 싶다.

물론 내가 앞서 제시한 모든 대안들은 다 단점이 있지만, 그런 완벽하지 않은 대안이라도 우리들이 머리를 모아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생각해 본다면, 언젠간 좋은 대안이 나오겠지. 머뭇거릴 때가 없다. 시간은 쏜살같이 흐른다. 이대로 넋 놓고 있다간 아무런 준비 없이 초초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그럼 그때, 아니 이런 변이 있나!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하루 종일 변만 치우다 퇴근하는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 글이 독자들로 하여금 막막한 교정 현실에 대해 한 번씩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모두 잘 먹고, 잘 싸시길. 일견 천해 보이는 말이어도, 알 사람은 알 것이다. 이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의 말이라는 걸.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두 잘 먹고, 잘 싸시오!

필리핀 교정기관 방문

정원균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 교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필리핀 교정행정
Ⅲ. 필리핀의 탐지견 운영
Ⅳ. 맺음말

Ⅰ. 들어가는 말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정시설 마약류 수용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마약 단속, 치료·재활, 예방 인프라 확충 등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범정부 역량을 총집결하여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교정시설에서는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써 마약 관련 재범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재활 정책을 수립 및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하여 해외 여러 국가의 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비교적 최근부터 마약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 중인 필리핀을 방문하였다.
필리핀은 2016년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매우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있어 국내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소탕작전 중 인권침해 논란으로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대대적인 소탕작전에 따라 체포된 다수의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관리 및 마약 반입 차단 정책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정시설 및 마약 탐지견 훈련센터 등을 방문하게 되었다.

Ⅱ. 필리핀 교정행정

■ 필리핀 교정행정 개요

필리핀 교정행정은 장기 자유형 집행과 미결구금 및 단기 자유형 집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결구금 및 3년 미만의 자유형 집행은 국가경찰 소속인 교정관리국(Bureau Of Jail Management & Penology)에서 담당하며, 3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형의 집행과 교화는 법무부 소속인 필리핀 교정국(Bureau Of Corrections)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번 필리핀 교정기관 방문은 재활 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장기간 형을 집행할 수형자에 대한 재활 정책을 추진 중인 법무부 소속 필리핀 교정국 및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필리핀 교정국의 교도관 계급은 군 조직과 유사하게 지휘관과 일반계급으로 구분되며, 간부 8계급(차관, 차관보, 수석 이사, 선임 이사, 이사, 수석 감독관, 선임 감독관, 감독관)과 비간부 7계급(선임 교도관4·3·2·1, 교도관3·2·1)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정국은 본부와 7개의 교정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는 차관급인 교정국장과 차관보급의 부국장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행정, 운영, 교화를 담당하고 있다. 국장 직속 기구로 내부 행정업무, 정보공개, 교도관 훈련, 법률서비스, 교정사업 담당이 있다. 부서는 총

8개로 각 행정, 보안·운영, 보건복지, 진단(분류), 재무·물품, 교화, 기획·관리, 대외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정시설은 총 뉴빌리비드 교도소, 여성교정 시설, 리이테 지역 교도소, 이와힉 교도소 및 형벌농장, 다바오 교도소 및 형벌농장, 사브라얀 교도소 및 형벌농장, 산 라몬 교도소 및 형벌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장은 이사 및 수석 감독관 계급이며 시설의 규모에 따라 계급이 다르다.

〈필리핀 교정국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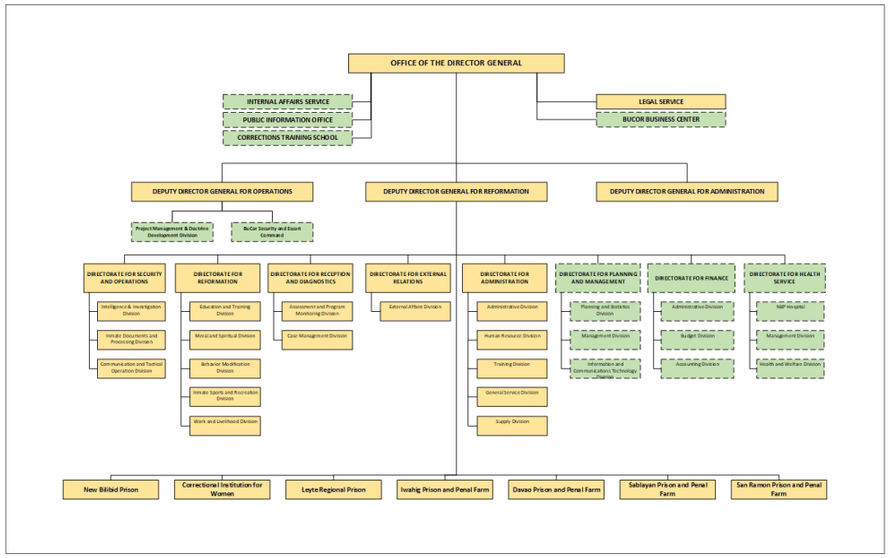

교정국의 상징 문양은 다음과 같다.
테두리 아래쪽의 숫자는 1905년에 교정국이 창설되었음을 나타낸다. 1905년 숫자 좌우의 월계수 잎 하나는 10년을 상징하며, 교정국 설립 이후의 성과와 발전을 나타냄과 동시에 현대화된 교정국 관련 법률 제정 112주년을 나타낸다.(2017년 로고 제정 당시 기준)
원 안의 왼쪽 쇠창살은 교정시설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햇살이 비치는 출소 후의 사회를 표현하는데, 7개의 햇살은 7개의 교정시설을 의미한다. 왼쪽 편의 검은색 사람은 수용자[필리핀 교정행정 용어로는 PDL(Person Deprived If liberty)]를 나타내며, 중앙에 있는 저울 모양으로 된 정의의 상징(엄격한 경비와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의미)을 거치면서 태양이 떠오르는 자유로운 사회로 나가는 희망을 나타낸다.

근무복 왼쪽 가슴에는 우리나라 근무복과 유사하게 금속재질 배지를 부착한다.
상단의 독수리는 교도관의 권한을 나타내며, 독수리 아래 3개의 별은 필리핀의 대표적인 3개의 섬(루손, 비사야 제도, 민다나오)을 상징한다. 또, 교정국을 영문으로 표기하고 아래에는 교정국 상징 문양을 삽입하고 있다. 교정국 상징 문양 아래에는 'OFFICER' 글자로 직원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장 하단 부분은 임용 연도 및 개인 식별 번호를 기재한다. 사진의 배지는 변경 전의 것으로 하단에 식별 번호 대신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필리핀 교정국 산하 7개 교정시설 전체 수용자의 수는 약 52,000명이고 국가경찰 산하 구치소 및 단기 구금시설의 수용자 약 130,000명을 합하면 약 182,000명으로 우리나라 수용인원의 3배에 해당한다. 한편, 7개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은 약 12,000명으로 수용률 430%의 초과밀 상태이다. 원래 과밀수용 상태였으나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급증한 수용자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과밀수용 상태에 놓여있다고 한다.
교정국 소속의 교도관은 약 7,500명으로 교도관 대비 수용자 비율은 1:7, 보안 근무 교도관 기준 1:25이라고 한다.
심각한 과밀수용과 교도관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다른 업무보다는 엄정한 수용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교정·교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다만, NGO 단체 등의 봉사활동에 의하여 기본적인 교정교화를 위한 기초 학력 과정 및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현황 설명 및 환영오찬〉

〈교정국 방문 기념 촬영〉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물품은 음식물, 의류, 생활용품, 침구류로 구분되며, 수용자복은 티셔츠와 반바지, 슬리퍼와 운동화를 지급하고 생활용품은 세면비누와 빨래비누, 치약·칫솔과 수건을 지급하고 있다.

■ 뉴빌리비드 교도소

교정시설로 들어가는 길 외부 정문에는 군사시설 위병소와 같이 소총을 든 교도관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민간인도 총기 소지가 가능하고 이 외에도 불법 총기류가 많이 유통되고 있어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정 이상 규모의 쇼핑몰이나 식당, 특히 번화가에는 대부분의 상가에 총기로 무장한 경비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교정시설 근무자가 총기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조치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삼엄한 경계와는 반대로 무장 근무중인 교도관의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유치원 취학 연령대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장난을 치며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외부 정문을 지나 정문까지 꽤 거리가 있었는데, 일반 주택과 학교, 상가 등 마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후 교정시설에서 설명을 들은 바, 필리핀의 교정시설은 원하는 모든 직원에게 관사를 제공하는데 그 관사는 교정시설 정문과 외부정문 사이에 있다고 한다. 오는 길에 보았던 사람들과 마을은 모두 교도관 및 그 가족으로 이루어진 마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총을 든 교도관 옆에서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도관과 그 가족이 교정시설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비상상황 시 신속하게 전 직원이 출근하여 대응이 가능하며, 수용자 도주·화재 등 대형 교정사고 상황에서도 마을 주민 전체가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수용자 교육을 위한 교육 기관과의 연계도 마찰없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물론 수용자 가족은 교정기관 주변에 절대 거주할 수 없게 통제하고 있다고 하였다.

뉴빌리비드 교도소는 7개의 교정시설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표 교정시설로 수용정원 약 6,500명에 약 3만 명을 수용하고 있어 수용률 460%의 초과밀 상태라고 한다.

수용자는 최고·중간·최소 경비등급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각 구획에 나누어 수용하고 있었다. 경비등급 별 수용자 수는 최고 경비 등급이 약 18,000명, 중간 경비가 약 7,400명, 최소 경비가 약 1,800명으로 대부분의 수용자가 최고 경비 등급에 해당한다. 또, 우리나라의 분류센터에 해당하는 분류 수용동에도 약 1,900명의 수용자가 수용되어 대기하고 있다고 하였다.

교화 프로그램은 종교 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의 봉사활동에 의한 교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된다고 한다. 종류로는 종교단체 의한 가치 형성 및 종교활동 교육, 자원봉사 교육자 및 지도자에 의한 교육 및 기술 습득, 교도소 내 수용자 자급제 및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체 운영, 스포츠를 통한 신체·정신 건강도모 등이 있다.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수용자를 위하여 교정시설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교육내용을 수용자에게 영상 중계하여 학습하게 하기도 한다.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차단 등 관리를 위해 해안경비대(군사조직)가 운영하는 마약 탐지견을 이용한 탐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는 정기적으로 시설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해안경비대의 협조가 없으면 탐지견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마약 탐지견을 운영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한다. 마약 소지가 적발되는 경우 징벌실에 수용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교도소 내에서는 자신의 경비등급에 맞는 구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각 출입문에는 일반 수용자와 다른 색상의 옷을 입고 있는 반장 역할을 부여받은 수용자들이 한명씩 서서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었다. 직원들이 보안청사에서 수용동으로 지나가면 봉사원 역할로 보이는 수용자가 양산을 들고 옆에서 보조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남성 수용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 여성 교도관 혼자 출입하는 것이 자주 보였는데 이동 시 항상 봉사원 역할로 보이는 수용자가 그 옆을 지키고 있었으며 교도관에게 손을 대는 경우 매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여성 교도관이 혼자 남성 수용자 사이에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총기 소지가 가능한 국가이며, 수용자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폭동 등의 가능성이 다소 높은 편이므로 SWAT 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전력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교정 SWAT이라는 이름에 맞게 대테러 초동 조치가 가능한 수준의 무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모든 팀원은 방탄조끼, 무선통신 기기 등 추가 장비를 부착할 수 있는 방탄헬멧, 레일이 장착된 M4 돌격소총과 여분의 탄알집 수개를 가지고 있었다. 보조화기로 9mm 구경의 반자동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교도관 학교 및 군부대 등에서 근접 전투훈련과 차단훈련 등 별도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한다. 다만, 도트사이트나 야투경 등의 장비를 총기에 부착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임무에 따라 일부 대원은 방풍경, 수직 손잡이 등을 장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처우로 입소 후 3~4일간 관찰하면서 비타민 등 영양제를 주어 금단증상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뉴빌리비드 교도소 청사 앞 기념 촬영〉

〈현황 등 설명〉

〈시설 참관〉

〈교정 SWAT〉

■ 여성 교정시설

뉴빌리비드 교도소는 3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 대형 교정시설이며 중경비 수용자의 숫자가 많아 시설 내부를 참관하기 어려웠으나, 여성 교정시설에서는 시설 곳곳을 둘러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7개 교정시설 중 유일한 여성전담 교정시설로 약 3,000명을 수용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 이 곳 외에도 이와흐 교도소 및 형벌농장과 다바오 교도소 및 형벌농장에도 여성수용동을 운영중이나 규모가 매우 작다고 하며, 형벌농장이 아닌 교정시설로서는 유일한 여성처우를 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

다른 교정시설과 다르게 'prison'이 아닌 'correctional institution'을 사용하는 이유는 교정처우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여성교정시설 역시 과밀수용 상태였는데 수용정원 약 1,000명에 현재 수용인원 약 3,200명으로 수용률은 320%에 이르는 심각한 과밀상태이나 필리핀 교정시설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은 수용률이라고 한다.

뉴빌리비드 교도소와 같이 3개의 경비등급으로 구분하여 구획별로 수용 중이었으며, 수용자의 약 50%가 마약류 사범이라고 한다. 최고경비 등급 수용자는 약 2,900명으로 오렌지색 셔츠를 입고 있으며, 주로 살인 등 중범죄자로 구치소를 거치지 않고 여성교정시설에서 계속하여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중간경비 등급 수용자는 약 250명으로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으며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대상으로 이들은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한다. 최소경비 등급 수용자는 약 50명으로 갈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여기서는 좀 특별한 교화 프로그램 볼 수 있었다. 약 10년 전 필리핀 교도소에서 수용자 약 1,000명이 강남스타일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져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관광으로 많이 가는 세부섬에 있는 세부교도소에 시행했던 교화프로그램의 일종이었다. 필리핀 교정행정에 대한 자료 수집 시 세부교도소에도 방문할 것을 고민하였으나 거리와 경비 등의 문제로 제외하여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여성교도소에서 보다 더 다양한 댄스를 통한 교화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필리피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하며, 400명 이상의 수용자가 공연을 위해 33도의 더위 속에 댄스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상을 입고 대기하고 있었다. 현황 보고 및 소개를 하는 중간에 공연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총 7개 팀의 댄스 공연이 이어졌다. 교도관들도 춤을 좋아하는지 브리핑을 담당하는 직원도 중간중간 짧게 춤을 추면서 K-POP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특히 마지막 수용자 댄스팀 공연 후에는 수용자들이 열심히 연습한 우리말로 "같이 춰요"라고 하면서 같이 춤을 출 것을 요청하기도 하여 특별한 경험을 하였다. 춤과 노래 및 연극은 주요 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수용자들의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며 평소 교도관도 함께 참여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교화프로그램은 모든 수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태도 및 참여도에 따라 가족 만남의 날과 같은 행사 또는 가족면회, 접견·편지·전화 횟수 추가, PC를 이용한 메신저 및 SNS 사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시설 내부를 둘러보면서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먼저 수용자의 직업훈련 공간에서 미용실과 제빵실이 있었으며, 비즈공예로 가방 및 열쇠고리 등 작은 장식품 등을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주변 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수용자가 출산하는 경우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수용동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18개월 이후에는 가족 또는 양육시설로 보내도록 하고 있었다.

마약류 수용자는 입소 초기 6개월 간 마약수용동에서 생활하면서 약물에 의하여 망가진 심신을 회복한다고 하며 이후 행동치료(댄스, 춤, 연극)를 통한 교정교화를 강력히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마약류 수용자가 많아서 마약수용동은 과밀 상태가 극심하였음에도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설 참관〉

〈환영 공연〉

〈마약수용동 앞〉

〈양육수용동〉

내부 시설을 둘러보고 소장실이 있는 사무시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후문으로 나오자마자 식사중인 교도관 가족들을 볼 수 있었다. 소장실 및 사무 청사 바로 옆에도 직원 관사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긴급상황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준비해 두었으며, 자체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에는 소화기와 소화전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어느 정도 화재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고는 있으나 대형화재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도 소방차를 갖추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Ⅲ. 필리핀의 탐지견 운영

■ 해안경비대 탐지견 센터

필리핀 정부에서 운영하는 탐지견은 모두 해안경비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각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군에서만 운영하며 필요시 탐지견 훈련센터 및 15개 지부에서 인력과 탐지견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최고의 탐지 능력을 갖추기 위해 탐지견에게 하나의 임무만을 부여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탐지견은 1마리가 마약·폭발물·수색·경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탐지 견종으로는 탐지 능력과 체력이 좋고 노후 근골격계 질환이 비교적 적은 말리노이즈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전국에 60여 마리가 활동 중이며, 탐지견 훈련센터에는 약 30마리의 탐지견이 임무 수행중이라고 한다.

견사 등 시설물이 노후화 되었으나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4계절의 최고·최저 기온 차가 50도에 이르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필리핀은 겨울 최저 기온이 25도로 탐지견이 기온에 적응하는 문제가 없어 냉·난방시설은 갖추지 않고 있었다.

탐지요원(핸들러)은 해안경비대 장병 중 신청을 받아서 동물에 대한 애정 등 자질에 대한 인터뷰, 체력검사, 신체검사를 통과한 사람이 후보로 편성되며, 이후 훈련과정을 통과하여야 정식으로 탐지요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탐지요원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므로 강도 높은 체력훈련과 유격훈련, 근접 전투훈련, 전투수영 등의 과정을 통과해야 탐지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탐지요원은 해안경비대 내 특수병과이므로 요원선발로 전과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탐지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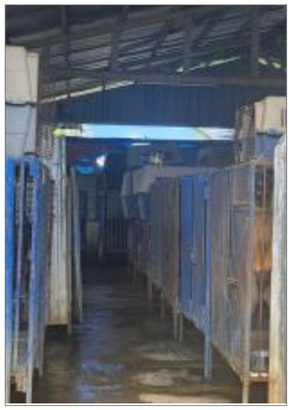

〈견사1〉

〈견사2〉

〈마약탐지 시연〉

■ 해안경비대 탐지견 아카데미

탐지견 훈련센터는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되어 현대화된 탐지견 아카데미를 건설 중이었는데, 부지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현대화된 견사 및 숙소, 사무공간을 갖추었으며, 실내외 훈련장도 건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완공되면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탐지견센터와 규모가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현대화된 견사와 실내외 훈련장을 모두 갖출 경우 탐지견의 탐지 능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도심에서 멀다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닐라 도심에서 연결되는 기차레일과 도로공사가 할 것이라고 한다.

〈견사 전경〉

〈숙소 및 사무공간 등 〉

Ⅳ. 맺음말

필리핀은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대대적인 단속을 하였다. 하지만 강력한 단속이 있었을 뿐 그 이후 재활에는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필리핀 교정시설은 심각한 과밀수용과 전체 수용자 대비 마약류 수용자의 비율이 약 50%로 기본적 수용관리에 집중할 수 밖에 없어 마약 재활을 비롯한 교정·교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도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응을 하고 있다.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강력한 수사·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수용자는 최근 3년간 55%나 급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교정시설 마약류 사범은 전체 수용자 대비 약 10% 수준으로 마약류 범죄가 더욱 확산되어 과밀수용 및 높은 비율의 마약류 수용자의 수로 인해 재활 대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전에 강력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마약류 수용자가 출소·입소를 반복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또, 마약류 수용자가 성공적으로 재활을 하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내에서 엄격하게 단약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뉴빌리비드 교도소는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였지만, 심각한 과밀 환경에서도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엄격히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도 마약 탐지견 또는 첨단 탐지장비 등을 도입하여 교정시설 내 마약을 비롯한 부정물품을 차단하는 등 엄정한 질서유지를 통해 교정·교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교정시설 전체의 안전을 위한 교정 SWAT 운영도 인상 깊었다. 대테러 초동조치, 수용자 폭동, 무장단체에 의한 교정시설 공격 등의 상황에 인접 부대의 지원 전까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우리나라는 휴전 중인 분단국가로 교정시설은 전시 후방 교란을 위한 특작부대의 주요 타깃이므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 교정시설은 인근 부대에서 테러 상황 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부대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지원 전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교정시설 자체 대테러 조직·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직원 대상 테러 대응 교육이 부재하여 테러 대응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전투이므로 개인의 근접전투훈련(CQB) 등 역량 보유는 물론, 돌격형 소총 및 주벽 밖의 적을 공격하기 위한 곡사화기 및 강력한 방어를 위한 공용화기 등이 필요하며, 테러 및 국지도발 등의 경우에는 초기 제압과 확산 차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도 자체적인 대테러 초동조치가 가능한 수준의 역량과 장비를 갖춘 조직을 양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교정시설은 다수의 인원이 잠금장치로 이동이 제한된 곳에 거주하고 있어 화재에 대한 대비가 필수인데, 필리핀 교정시설은 우리나라와 같이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화전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으나 자체 소방차를 운영하여 화재에 대비하고 있었다. 작은 화재 및 초기 화재에 대해서는 소화기와 소화전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대형 화재 및 인근 산불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었던 경우 등에 대비하여 자체 소방차 운영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직원이 원하는 경우 관사를 제공함으로써 근무여건을 보장하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인상 깊었다. 관사 부족으로 인해 인근 원룸에 월세를 지불하는 등의 지출과 교통비 지출이 줄어들어 직원 복지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또한, 교정시설 주변에 교도관과 그 가족들로 이루어진 마을이 조성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갈등해결 및 협조체계 구축이 용이하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 직원이 교정시설에 바로 인접한 곳에 거주하고 있어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비상소집 및 다수 직원에 의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번 필리핀 교정시설 방문을 위한 일정 중 사고방지와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해안경비대에서 차량을 지원해주고 이동 중 경호를 제공해 주었으며, 방문하는 시설마다 직접 식사를 준비하여 제공해주고 성대한 환영행사를 준비해 주어서 다시 한번 필리핀 교정국 및 해안경비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

일시·장소 5. 2.(목), 14:00, 대구교도소 종합운동장
참 석 자 장관, 본부장, 대구광역시장, 달성군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250여 명
주요 내용 - 환담, 이전 개청식 행사(경과 보고, 표창 수여, 축사)
- 부대행사(테이프커팅, 현판, 제막, 기념 촬영 등)

4월 우수 수사관 및 정보관 증서 수여식

일시·장소 5. 27.(월), 교정본부장실
주요 내용 - 우수 수사관 안양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 교위 송치호
- 우수 정보관 청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 교위 윤동호

법무부장관, 서울남부교정시설 정책현장 방문

일시·장소 5. 14.(화), 14:00, 서울남부교도소·구치소
참 석 자 장관, 교정정책단장, 대변인, 서울지방교정청장 등
주요 내용 교정시설 화재·풍수해 등 재난 안전 대응 상황 현장점검 등

제42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일시·장소 5. 30.(목), 11: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참 석 자 - 장관, 본부장, 대변인 등
- 서울신문사 사장,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 심사위원 등 관계자
- 수상자 및 가족,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
시상 내용 18명 수상(공무원 9, 교정위원 8, 기관 표창 1)

교정기관 N / E / W / S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전광호

직원 청렴 교육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5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및 갑질 예방 교육 등 반부패·청렴 교육으로 진행했다. 최제영 청장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어린이날 행사

서울구치소는 5월 1일 서울 강남초등학교 야구부 학생 선수 및 지도자, 학부모 25명을 초청하여 참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교도관 직업 체험의 기회 및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김문태 소장은 초청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교정공무원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교도소 / 교사 이승연

테니스대회 개치

안양교도소는 5월 11일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 직원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장배 교정기관 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16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는 안양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등 5개 기관이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테니스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안태진

어린이날 행사

수원구치소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직장 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재원하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선물을 받은 아이들은 "매년 어린이날이 이렇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라고 행복해했다. 김현우 소장은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가족 초청 시설 견학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5월 23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직원 가족을 초청하여 시설 견학을 실시했다. 박경선 소장은 "이번 참관이 가족들에게 교정시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새로운 인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표어 공모전 실시

인천구치소는 반부패·청렴, 갑질 근절을 주제로 표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주제별 최우수 1작, 우수 2작을 선정하고 시상하였으며, 선정된 최우수작들을 배너로 제작하여 청사 출입에 게재해 청렴과 갑질 근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이준구

교정동우회 초청 행사

서울남부구치소는 5월 2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소속 전직 교정 공무원 12명을 초청해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는 간담회를 진행한 후 순직교도관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충혼탑 참배 및 구내 시설 참관으로 진행됐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사 심우현

체육대회 개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4월 29일부터 5월 16일까지 직원 체육대회로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각 부서별 팀을 조직해 출전했으며, 체육행사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김조영

어울림 하나데이 행사 개최

의정부교도소는 5월 21일 어울림 하나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직원 및 가족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의정부교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 문화 공연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여주교도소 / 교사 신재훈

결의대회 실시

여주교도소는 5월 7일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직원들은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박진홍 소장은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교정교화를 주된 직무로 하는 교도관으로서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김재현

가족 참관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5월 1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 가족 참관을 실시했다. 37명의 직원과 가족 102명이 동참한 이번 참관은 교정장비 시연 및 체험, 퀴즈쇼 등 여러 이벤트를 진행한 후 단체 사진을 찍으며 마무리됐다.

춘천교도소 / 교도 박상혁

체육대회 실시

춘천교도소는 5월 14일 대체복무 춘계 체육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족구, 피구, 단체 줄넘기, 제기차기 종목의 우승을 가리는 행사로,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승패를 떠나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축제가 됐다.

교정기관 N / E / W / S

원주교도소 / 교위 천병훈

시찰 및 참관 실시

원주교도소는 5월 2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15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시찰 및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정홍보영상 시청 등을 통해 교정행정을 소개하고 유관업무 담당 직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함으로써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채동용

교정시설 참관 실시

강릉교도소는 5월 21일 강릉교도소 취업지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참관은 수용동, 작업장 등의 참관을 통해 수용 생활과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부품 기부를 통해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영월교도소 / 교사 김준일

특강 실시

영월교도소는 매월 신입수형자를 대상으로 "삶이란 자신만이 가꿀 수 있는 정원"이라는 주제의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희도 소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들이 교정시설을 성숙한 삶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바르게 걷기' 교육 실시

강원북부교도소는 5월 27일 한국치유워킹협회 회장을 초청하여 '바르게 걷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직원들과 지역 인근 유관기관 및 속초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교육은 올바르게 걷기를 위한 이론 특강, 걷기 실습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박세영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진행

평택지소는 5월 8일부터 5월 9일 2일간 교정본부에서 주관하는 2024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커피차 부스를 비롯하여 외부 전문가를 통한 정신건강 특강, 피지컬 상담, 심리검사 등이 실시됐다. 김성열 소장은 "이번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진행으로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망교도소 / 선임교도관 김인수

업무협약 체결

소망교도소는 5월 22일 여주시 평생교육과 여주도서관과 「수용자 독서활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서기증과 도서 단체대출 시행, 수용자 교육교화를 위한 독서프로그램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영식 소장은 "도서기증 등 다양한 독서 활동 지원이 독서문화 활성화로 이어져 수용자들의 교육교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태도

업무협약 체결 및 특강

대구지방교정청은 5월 7일 대구대학교에서 관·학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현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수용자들의 교정교화 등 교정행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개청식 개최

대구교도소는 5월 2일 법무부장관, 대구광역시장, 지역주민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이전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을 개최했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직원 교육 실시

부산구치소는 5월 3일 음주운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이연호 교수를 초청하여 음주운전 근절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음주운전에 대한 각종 규정 학습, 사례를 통해 배우는 음주운전 경각심 높이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문현배

교정시설 참관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5월 8일 경상북도 경찰청 등 12명에 대해 교정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최진규 소장은 "경찰청장님의 교정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상호협력을 한다면 국가안보는 물론 수용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교정시설 참관 실시

창원교도소는 5월 22일 경남대 경찰학부 교수와 학생 47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참관한 학생들은 교정홍보 동영상 시청, 교정장비 체험, 수용동, 직업훈련 작업장 등 시설견학을 통해 교정행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순풍 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해소되기를

교정기관 N / E / W / S

바라며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교정공무원에게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교도소 / 교위 이재윤

청렴 콘서트 실시

부산교도소는 5월 10일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과 함께하는 청렴 콘서트를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했다. 행사는 오랜 공직생활의 경험과 직장 선후배 간 소통하고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강조하며 진행됐다.

포항교도소 / 교사 박승현

반부패·청렴 정책 실행위원회 개최

포항교도소는 5월 13일 상반기 반부패·청렴 정책 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규성 소장은 "실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요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청렴 관련 평가지표에 직원의 참여를 늘려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구성원들의 관심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연근

민방위 훈련 실시

진주교도소는 5월 14일 공습상황을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통해 국민행동 요령을 숙달하고 안보의식을 고취시켰다. 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합동 대응을 실시하여 공습 상황 시 초기대응반 운영과 수용자 대피 및 이동계획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곽재원

교정시설 참관 실시

대구구치소는 5월 14일 범죄피해자 보호단체 회원 28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실시하고, 수용자의 안정된 수용 생활 유도를 위한 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영광 소장은 "교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있어 더불어 함께하는 교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한준호

민방위 훈련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5월 14일 민방위 훈련과 함께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 참가한 직원들은 개인별 업무를 숙지하고 소내화재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익히는 등 자위 소방대 능력을 향상시켰다.

안동교도소 / 교도 이성규

체포·제압술 훈련 실시

안동교도소 직원들은 5월 2일 가족 만남의 날 행사장에서 난동 중인 수용자를 향해 가스 분사기 사용 후 체포·제압하는 실습을 했다. 이날 훈련에는 보안 과정 등 100명 정도의 직원이 참여해, 새로 지급된 교정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숙지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됐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박승수

임용식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5월 7일 신규 교정직 공무원 4명의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영성 소장은 "공직을 경북2교에서 시작한 것을 축하하며 중경비시설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교정직 공무원이 되어 달라"며 환영 인사와 맞춤 웰컴 키트를 수여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사 진용혁

교정기관 참관 실시

김천소년교도소는 5월 2일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및 학생 47명을 대상을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학생들에게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정 홍보 영상 시청, 교도소와 교정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및 국내 참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채원기

정기총회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5월 10일 '2024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교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교정 교화사업의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유공 교정위원 표창장을 전수하고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등을 진행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기념행사 개최

울산구치소는 5월 20일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 성인이 되는 수용자 2명을 위한 교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성년을 맞이한 수용자들이 사회 복귀 후 준법정신을 지키는 건전한 성년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주교도소 / 교위 김성우

테니스대회 개최

경주교도소는 5월 11일 제22회 법무부장관기 테니스대회 대구청 지역 예선전을 실시했다. 이날 예선전은 대구청 산하 11개 기관 약 100명이 선수로 참여한 가운데 토너먼트 방식으로 본선 진출 4개팀(안동, 경주, 김천, 상주교)을 선발했다.

교정기관 N / E / W / S

통영구치소 / 교위 이성민

봉축법회 및 교화공연 개최

통영구치소는 5월 7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봉축법회 및 교화공연을 개최했다. 이성하 소장은 “앞으로도 종교 문화행사와 교화공연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밀양구치소 / 교위 김영근

교정시설 참관 실시

밀양구치소는 5월 20일 밀양시 유관기관인 밀양교육지원청, 밀양소방서 직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 및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참관은 교정시설 현황소개, 홍보 영상 시청, 시설 참관과 수용자의 심성순화를 위해 소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교정위원 참관 실시

상주교도소는 5월 17일 교정협의회 신규 교정위원 등 13명을 대상으로 교정위원 활동과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참관은 가족 만남의 집과 구내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창구치소 / 청년 인턴 신보라

교정 가족 초청 참관 실시

거창구치소는 5월 17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정 가족 75명을 초청해 시설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이도곤 소장은 교정 가족들에게 “구치소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가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헌도

사랑나눔 봉사활동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7일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과 공동생활가정에 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직원 모임인 ‘한우물봉사단’은 무의탁 양로시설인 사랑의 집을 찾아가 성금 전달 및 시설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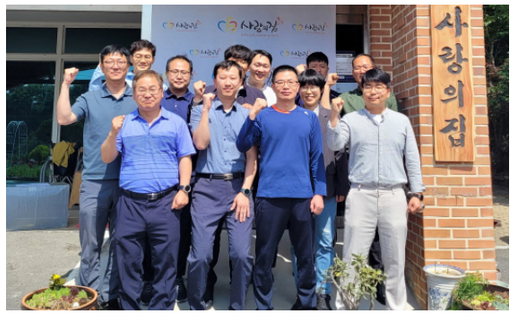

대전교도소 / 교위 이호현

어린이날 행사

대전교도소는 5월 3일 직장 어린이집에서 5월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소장과 부소장 등이 직접 참석하여 원생과 선생님들에게 기념 선물을 증정하고 어린이집 시설을 둘러보며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청주교도소 / 교위 오요한

가정의 달 행사

청주교도소는 5월 3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하는 수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수용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카드와 다육이 꽃 바구니 전달식을 가졌다. 박원규 소장은 “이번 계기로 수용생활의 안정과 출소 후 사회적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천안교도소 / 교도 이철희

직원 가족 참관 행사 실시

천안교도소는 5월 10일 직원 가족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교정장비, 호송버스 등을 체험하고 함께 식사시간을 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다. 서민 소장은 “여러분들의 가족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니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이지은

성년의 날 행사

청주여자교도소는 5월 20일 2005년생인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성년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성년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끝으로 교정위원 함께하는 다과회 자리를 가져 다시 한번 성년이 됨을 축하하면서 마무리했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합동소방 훈련 실시

공주교도소는 5월 14일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모의 상황을 설정 후 수용자 대피, 환자 이송, 화재진압 등의 훈련을 실시하여 수용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자위 소방대의 신속하고 적절한 화재진압 능력을 강화했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인권 교육 실시

충주구치소는 5월 27일 법무부 위촉 인권강사 이현주(한국청렴인권교육원 대표)를 초빙하여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집행 과정에서 빈발하는 인권침해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정기관 N / E / W / S

홍성교도소 / 교도 이병훈

계호 교육 실시

홍성교도소는 5월 22일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계호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 감독하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요청으로 포승술, 계호술 등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교정시설 참관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5월 22일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김안식 교수와 학생 등 59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허만혁 소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교도소 참관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위 박효진

교정위원 만남의 날 행사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5월 23일 무연고 수용자들과 교정위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서산지소 교정협의회 이태무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교정교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전웅배

대전지방검찰청 호송·인치교육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5월 8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호송·인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논산지청의 요청에 의해 신병 호송 시 유의사항, 도주 사고 발생 시 대처법, 제압술 등을 중심으로 되었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장우영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 대회’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5월 24일 전 직원이 모여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 대회를 통해 청렴 가치를 공유하며 청렴 의식을 다짐했다. 하영훈 청장은 “공직자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더 큰 도덕성과 청렴함이 요구된다”라며, “스스로 부패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줄 것”을 강조했다.

광주교도소 / 교도 김거현

기부 행사 진행

광주교도소는 5월 1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으로부터 도서 1,000여 권을 기부받았다. 김도형 소장은 “교정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주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화합의 장 마련

전주교도소는 5월 17일 교정동우회 전주지회 회원들과 교류를 위한 화합의 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영삼 소장이 직접 교정동우회 전주지회를 찾아 선배 교정공무원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간담회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직원교육 실시

순천교도소는 5월 16일 전남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유영찬 경위를 초빙하여 마약류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조병주 소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교도소에 마약 반입 경로를 사전 차단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교정시설 참관 실시

목포교도소는 5월 22일 지역 대학생들의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정행정을 홍보하기 위해 목표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27명의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대학생들은 심리치료팀, 농기계정비 직업훈련장, 자치수용동, 민원실 등을 참관했다.

군산교도소 / 교사 윤나리

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

군산교도소는 5월 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한재훈 강사를 초빙하여 폭력 예방 및 성인지 통합 교육을 실시했다. 오우정 소장은 “직원들의 성인지적 역량을 높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정기관 N / E / W / S

제주교도소 / 교위 고동성

소방훈련 실시

제주교도소는 5월 14일 '민방위훈련'과 연계한 '오라119센터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배경석 소장은 "각종 재난재해 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설물 및 소방시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장흥교도소 / 교위 윤창열

신규 교정공무원 임용식 개최

장흥교도소는 5월 7일 신규 9급 교정공무원 4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 최국진 소장은 "교정공무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은 직원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교도관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수민

미사 봉헌

해남교도소는 4월 24일 광주대교구 옥현진 대주교가 신부님 및 봉사자와 함께 방문하여 미사를 봉헌했다. 옥현진 대주교는 강론에서 "나와 이웃,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사랑하자"라며,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가진 것을 내어주며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준현

교정시설 방문

정읍교도소에 5월 16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로뎀나무선교회가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교정참여인사 문귀례는 빵 700개를 기부하며 "수용자들의 심신 안정을 돕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모범 공무원

영월교도소 교위 정해완

정해완 교위는 2011년 임용되어 현재까지 12년 10개월간 보안현장에 근무하면서 수용자 관련 각종 소송서류, 소송 진행 등에 대한 조력을 했다. 미결수용자, 노역수 등에게 법률 상담을 통하여 각종 소송업무를 도와주고 경제적 어려운 수용자들에게는 국선 변호인 제도를 소개해 주는 등 법률 지식이 부족한 수용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포항교도소 교위 서칠교

서칠교 교위는 현재 보안과 기결1팀 부팀장이며 평소 어떠한 일이든 솔선수범하여 처리하며, 근무해왔다. 특히, 2024년 4월 14일 태국 방콕을 여행하고 오던 비행기 안에서 60대 승객이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모두가 당황하고 있을 때,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여 교정공무원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

홍성교도소 운전주사보 김호석

김호석 운전주사보는 관용차량 운행과 차량관리를 책임지며 수용자 계호업무에 조력을 했다. 특히, 수용자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외부인의 접촉을 제한하여 교정사고 발생을 예방했다. 또한,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을 통해 직원 간 화합을 다지는 등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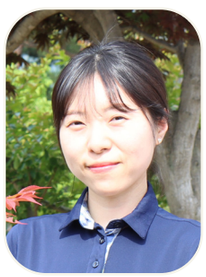

순천교도소 교위 이화민

이화민 교위는 의료과 서무로서, 항상 밝은 미소와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 직원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의료과 연중행사의 계획 및 진행을 맡아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 이행했다. 또한,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숨은 그림 찾기

최대한 집중해야 찾을 수 있는 숨은 그림 찾기!

익숙한 시선으로 그림을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물건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두뇌 발달과 함께 창의력을 키우기에 좋은 숨은 그림 찾기에 도전해 보세요.

아래 그림을 찾아보세요!

우산

물조리개

다람쥐

버섯

늙은호박

커피잔

비구름

바구니

과일열매

사과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correct2023@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퀴즈 당첨자 선물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 원권 발송

법무부 교정본부

담장 밖으로의 온전한 휴식, 스트레스 비움 힐링 여행을 떠나요!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1박2일 프로그램

비대면 소진 예방

떠나기는 싫지만 쉬고는 싶어,
내 방에서 즐기는 힐링 타임

직무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스트레스는 줄이고,
회복력은 높이고~

가족 응원과 지지

교도관의 버팀목,
우리가족 더 행복해지기

2박3일 프로그램

신규교도관 스트레스 대처

신규지만 괜찮아,
밝은 미래를 위한 당당한 첫걸음

장기근속자 자긍심 강화

수고하신 선배님에게 드리는
선물같은 프로그램, Bravo my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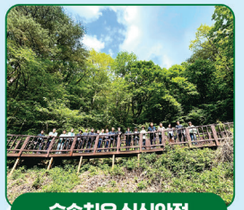

숲속치유 심신안정

숲으로의 초대,
자연에서 채우는 휴식과 힐링

참여대상 최근 3년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직원
문 의 소속기관 심리치료팀(과) 담당자 또는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담당자(02-2110-3901)
상세내용 QR코드를 찍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